제 67 호

#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6. 3



「세계농업뉴스』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 목 차

# 농업·농정 동향

미국, 2007년도 농업예산	3
미국, 2006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18
중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32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농업정책 개요	44
인도, 통상정책 및 농산물무역 동향	56
EU,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 해제	73
EU, 유전자변형 작물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76
덴마크, 육류산업 관련단체 통합 추진	78
주요 국가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	80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2006년 3월 농업협상 동향	· 115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3)	· 121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3)	· 134
통계자료	
대륙별 닭고기 통계	· 141

# 농업 농청 동향

미국, 2007년도 농업예산 미국, 2006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중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농업정책 개요 인도, 통상정책 및 농산물무역 동향 EU,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 해제 EU, 유전자변형 작물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덴마크, 육류산업 관련단체 통합 추진 주요 국가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

# 미국, 2007년도 농업예산

김 상 현\*

미 농업부(USDA) 마이크 조한스 장관은 정부의 예산감축 목표에 부응하는 동시에 최우선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둔 2007년도(이하 회계연도 기준) USDA의 예산을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농업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 농업농촌 경제향상, 농촌 삶의 질 개선, 국내농업 및 식료공급 보호, 영양 및 건강 증진, 자연자원 및 환경 보전 등 전략계획 기본원칙(Strategic Plan Framework) 아래 6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정된다.

## 1. 2007년도 예산 개요

미 USDA는 전략계획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2007년도 농업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6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1:미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목표 2: 농업·농촌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전략목표 3: 농촌의 경제기회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전략목표 4: 농업 및 식량공급 보호 및 안전성 강화

전략목표 5: 영양 및 건강 증진

전략목표 6: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호 및 향상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 4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2007년 미 USDA의 예산은 국내 식량공급과 농업의 안전성 보장, 건전한 토지관리기법과 자연자원 보전 지원, 농업·농촌 경제 증진, 식량지원계회 제공 등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부표 참조>.

2007년 USDA의 총 현금지출액(outlay)은 전년과 비교하여 29억 증액된 92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따라 USDA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현금지출액은 전년과 비교하여 17억 달러 감소한 713억에 달하며, 총 현금지출액의 77%를 차지한다. 이 예산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공공사업에 소요되며, 주로 영양지원사업, 농가품목대책사업, 수출진홍사업, 환경보전사업 등에 배정된다.

USDA가 자유재량으로 지출하는 현금지출액은 전년대비 12억 달러 감소한 215억 달러에 달한다. 이 예산은 총 현금지출액의 23%를 차지하며, 허리케인과 조류독감 등 재해와 질병대책, 여성·유아·아동 대상 특별영양지원대책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농촌개발을 위한 유·무상 융자, 연구 및 교도사업, 토양 및 수질관리 기술지원, 산림청 관리활동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에 배정된다.

2007년도 USDA 예산은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과 무역 촉진, 동식물의 후생보호, 식품의 안전성 강화, 자연자원 보호, 농촌지역 경제의 활성화, 국내외 빈곤을 퇴치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USD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과 관장 업무를 총괄하여 17개의 기본방침(objective)을 수립하고 있다.

## 2. 전략목표 1:미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산물의 세계시장 확대는 식료 및 경제 번영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USDA는 이런 전략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3대 주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3대 주요 기본방침은 첫째, 국제 수출기회 확대 및 유지 둘째, 국제 경제개발 및 무역능력 함양 지원, 셋째, 농산물 무역을 활 성화시키는 위생 및 동식물 검역체계(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체계 개 선 등이다. 전략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표 1>과 같다.

표 1 전략목표 1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증감률(%)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국	5,375	5,361	5,269	-1.7
자연자원 및 환경국	14	12	12	-
유통 및 규제대책국	26	26	32	23.1
연구・교육・경제국	60	62	52	-16.1
합계	5,475	5,461	5,365	-1.8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전략목표 1 달성을 위한 2007년 예산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협정의 강화 및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세계 수출기회를 확 대하고 유지한다. USDA는 기존 무역협정의 강화와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 링은 세계 수출기회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매년 해외농업지원부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는 불공정 무역장벽으로 인해 시장접근이 어려운 국내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 갈 것이다. 이러한 무역장벽은 인간, 동식물을 보호하다는 차원에서 비과학적 인 방법이 적용된 SPS를 포함하며, 이런 SPS의 적용 추이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를 이해서 FAS는 동식물보건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FAS는 지속적 인 사업추진과, 대표성을 갖추도록 추가기금을 배정받을 것이다. APHIS 또한 SPS 관련 통상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토론 추가기금을 배정받게 될 것 이다.

<sup>(2) 2005</sup>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 6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둘째, 교육 및 아동영양 지원을 위한 국제식량지원계획(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을 통해 개도국에서 수행된 취학 전후 급식지원대책을 통해서 250만 명에 달하는 여성과 아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 2006년의 9천 900만 달러의 예산이 유지된다. 반면,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여성과 아동의 수는 2006년 240만 명에서 2007년 2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경제를지탱하고,장기 식량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노동력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제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3. 전략목표 2: 농업·농촌의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강화

농업부문의 경제력 유지는 국가의 경제 활력과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런 농업부문의 성공여부는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며, 적절한 자본을 획득하며, 금융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대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또한 농민들의 경제 후생과 농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 잠재력을 높이고, 농장과 장비를 유지하며, 생산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USDA는 경제안전망 대책을 통해서 농민들의 경제력을 유지하도록 소득안 정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는 작물보험, 농가소유권, 농장운 영자금대출, 직접지불, 유통지원융자, 품목별지원대책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정한 무역관행을 확립하는 한편, 농산물의 효유적인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력한다. USDA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농민들이 토지 등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처하며,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 연구와 경제 분석을 위해 지원하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가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첫째, 국내 판매기회를 확대하며, 둘째, 국내 농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농민과 축산업자들을 대상으로 위험관리 및 금융수단을 제공한다.

표 2 전략목표 2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증감률(%)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국 유통 및 규제대책국 연구·교육·경제국	37,564 616 977	38,691 1148 979	35,653 609 791	-7.9 -47.0 -19.2
합 계	39,157	40,818	37,053	-9.2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2) 2005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전략목표 2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품목별 지원계획에 따라 16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농업지원 목표 아래 비용절감조치를 장려하고, 보다 효율적인 생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비용절감 목표에 부응하는 한편 지불한도를 강화하고, 작물 및 낙농지불을 축소하고, 낙농가격지지 지불 액을 최소화하고, 우유 유통부과금뿐만 아니라 설탕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설 탕 유통부과금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50억 달러, 향후 10년 동안 77억 달러가 절감될 전망이다. 이러한 계획들은 작물보험과 함께 부서 간의 적자감축 계획안의 일환이다.

둘째, 농민들이 적절한 생산단수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작물보험의 이행을 강화한다. 2007년도 작물보험에 소요된 예산은 약 480억 달러에 달하며, 이 보험대상인 주요작물이 전국 식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에 달한다.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총 손실액의 27.5%만을 보상하는 재해보상(catastrophic coverage)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특별재해지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방정부의 직접지불을 받는 수혜 농민에게 보상범위가 50%인 작물보험을 취득하도록 요청하고, 재해보험률을 변경하고, 과거 손실을 효율적으로 반영하도록 보험요율을 재조정하며,

#### 8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이행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2008년부터 13억 달러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셋째, 농업·농촌개발 정보화 구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서 농업연구소 (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농촌지역의 농가 및 비농가의 경제후생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자료수집과 연구사업을 수행하는데 약 500만 달러의 예산안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경쟁체계 아래 지원금을 적극 확대함으로써 농업연구를 활성화시킨다. 이에 따라 국립연구사업단(National Research Initiative, NRI)는 2006년에 비해 6,600만 달러 증액된 2억 4,8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다섯째, 농업 게놈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유전자원의 잠재력에 대한 연구사업은 농업이 직면하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협동연구·교육·지도소(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는 국내 동물의 게놈연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500만 달러, 미생물의 게놈연구를 위해서 약 100만 달러를 추가 배정받게 될 것이다. ARS는 식물 게놈연구에 470만 달러, 소 관련 응용게놈연구에 180만 달러를 증액 받게 될 것이다.

## 4. 전략목표 3 : 농촌의 경제기회 증진 및 삶의 질 개선

미국 농업·농촌의 경제와 생활의 질은 다양하다. 즉 대다수 지역의 빈곤수준이 높고, 고용과 영농사업의 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기본적인 농촌활력과 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이다.

USDA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개발대책은 전력, 통신, 농업용수, 폐기물 처리시설, 편의시설, 임대주책, 신규 사업 등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대책들은 민간 금융업자의 부적절한 서비스 를 보완하며, 정책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적절한 비용수준으로 자금을 융자 하고 있다. USDA는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 침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USDA의 금융지원을 활용한 경제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고급 주택 보급, 현대설비, 지역공동 시설 구축하는데 USDA의 금융지 원을 활용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다.

표 3 전략목표 3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중감률(%)
농촌개발국	14,278	18,102	14,406	-20.4
연구・교육・경제국	222	232	220	-5.2
합 계	14,499	18,334	14,626	-20.2

-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 (2) 2005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전략목표 3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가구 주택단지 조성을 활성화한다. USDA는 임차인의 농촌주택 보 급을 위해서 다가구 주택 보급사업에 약 7,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

둘째, 농촌지역의 주택소유 기회를 확대한다. 약 40,760호의 주택 소유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규 융자보증 35억 달러와 직접융자 12억 달러를 제공 한다. USDA 정부의 주택소유대책의 일환으로 단독가구 주택보급 대책을 수 립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56,400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는 사업별 보증융자 및 재금융 융자(relending loan) 등 농촌개발부(Rural Development, RD)의 사업 계획을 통해서 이뤄질 것이다. USDA는 2사업별 보증융자에 006년보다 7,600 만 달러 증액된 9억 9,000만 달러를 배정하게 된다.

넷째, 농촌지역의 56만 호를 대상으로 신규 혹은 개량된 용수와 폐기물 처리시설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배정된 14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11억 달러는 유상융자 지원, 나머지 3억 4,900억 달러는 무상융자에 배정된다. 반면, USDA는 상환비용을 낮추도록 융자금의 금리를 줄이도록 제안하고 있다.

## 5. 전략목표 4: 농업 및 식량공급 보호 및 안전성 강화

USDA는 식료 및 섬유 공급 경로의 안정성과 농산물 생산체계의 안전을 보장하는 주요 기관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육류, 가금육, 계란 관련 식품질병의 발생빈도를 줄이며, 농산물의 병해충과 질병 발생빈도와 정도를 감축하는 등 두 가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표 4 전략목표 4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중감률(%)
식량안전국	928	952	987	3.7
유통규제국	1,110	1,017	1,090	7.2
연구・교육・경제국	707	709	632	-10.9
<u>합</u> 계	2,745	2,678	2,709	1.2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전략목표 4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육류, 가금육,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 식품안전검역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은 2006년보다 3,500만

<sup>(2) 2005</sup>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달러 증액된 9억 8,70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는다. 이 예산 가운데 8억 6,300만 달러는 세출예산을 통해서 조달되며, 이 중에서 1억 500만 달러는 신 규 사용자 비용에, 1억 2,400만 달러는 기존 사용자 비용이나 신탁기금을 통 해서 제공될 것이다. 제안된 사업계획은 연방의 검역 비용을 충당하고, 주 (state)의 검역사업에 대한 연방의 지원을 유지하고, 식료 및 농업방위법안 (Food and Agricultural Defense Initiative, FADI)의 FSIS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충분한 재원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경제와 환경 손실을 초래하는 외래 농산물 질병과 병해충의 확산과 유입을 방지한다. USDA는 농업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으로부터 농업을 보호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외래 요인을 신속히 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서 4,500 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증액된 예산은 식물 병해충 탐지기술을 개 선하고, 동물건강 감시감독, 동물 백신의 공급을 확대하는데 배정된다. 또한 병원성 조류독감을 처리하는데 예산이 추가 배정될 것이다.

셋째, 축산물과 작물의 신규 질병으로부터 농업을 보호한다. 지형학적 영향 으로 미국은 외래 감염성 질병이나 병충해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ARS는 조류 독감, 광우병, 구제역 등 축산물 및 작물에서 발생되는 외래의 신규 질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구사업에 4,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배정받는다. 국립식 물질병복구단(National Plant Disease Recovery System)은 질병에 저항력이 있는 품종을 개발하여 병해충과 질병 발생시 이 품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 42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NRI는 감염성 해외 병원균에 노출된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는데 700만 달 러의 예산을 배정받는다.

넷째, 정부의 식료 및 농업방위법안(FADI)의 일환으로 국내 식료공급의 안 전성을 보장한다. FSIS는 식료비상네트워크(Food Emergency Respose Network, FERN)에 참여하는 실험소를 확대하고, 전력연구소네트워크(Electronic Labo-

#### 12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ratory Exchange Network, eLEXNET)을 운영하는데 약 1,600만 달러의 예산을 증액 받는다.

다섯째, 위해 종을 박멸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지원하다. 이를 위해서 민간 단체에 1,000만 달러의 무상융자를 지원한다.

### 6. 전략목표 5 : 영양 및 건강 증진

USDA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식량지원, 대 국민 영양교육, 영양과 건강 식단에 대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USDA는 교육이나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이 식단이나 육체활동을 개선하도록 촉구한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영양식단을 보장하고 둘째,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생활방식을 권장하고 셋째, 식량지원 계획과 소비자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3대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있다. 전략목표 5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표 5>과 같다.

표 5 전략목표 5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증감률(%)
식료 · 영양 · 소비자국	51,036	53,862	54,444	1.1
연구・교육・경제국	260	261	258	-1.1
합 계	51,296	54,123	54,702	1.1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2) 2005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전략목표 5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푸드스템프(Food Stamp) 참여를 위해서 약 2,590만 달러의 예산을 지

원한다. 2007년 푸드스템프 예산은 2006년과 동일한 350억 달러에 달한다. 이 번 예산은 식료가격 인상, 참여율 감소, 허리케인 대책으로 인한 예산 조정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예상치 못한 참여율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의 증가에 대비하여 약 30억 달러의 임시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푸드스템 프 사업은 건강식생활지수(Healthy Eating Index, HEI)의 수준을 높이고 비만이 나 기근을 줄이는 목적의 영양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둘째, 여성·유아·아동을 위한 영양공급계획(WIC)을 통해서 월 평균 저소 득 계층의 820만 명을 지원한다. 정부의 WIC 사업계획별 총 예산은 2006년 수준과 동일한 540억 달러에 달한다. 또한 해당 사업계획의 대상자와 관련 예 산이 초과될 경우에 대비하여 1억 250만 달러의 임시기금이 조성된다. WIC도 HEI 수준을 높이고 비만이나 기근을 줄일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율(breast feeding rate)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일일 평균 3,090만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중식지원사업 (School Lunch Program)과 일일 평균 1,030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조식지원 계획(School Breakfast Program) 등 학교급식지원대책을 통해서 취학아동의 균 형식단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예산은 아동영양지원계획(Child Nutrition Program)에 2006년보다 7억 달러 증액된 139억 달러가 배정된다. 또한 예상치 못한 참여 대상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3억 달러의 임시기금이 배정된다.

넷째, 품목별 보조식품지원계회(Commodity Supplemental Food Program, CSFP)의 기금을 제외한다. 이 사업계획은 푸드스템프와 WIC와 같은 연방양 분지원계획과 상호 중복되며, 제한된 영역에서만 이용가능하다. USDA는 WIC 대상인 여성, 유아, 아동을 격려하는 전환기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다섯째,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과학정보를 제 공한다. ARS는 영양 관련 연구 활동에 47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국민의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지침서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과 육체활동

#### 14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의 효율성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만 관리와 건전 생활습관을 촉진하는 연구사업에 660만 달러가 배정된다.

### 7. 전략목표 6: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호 및 향상

USDA는 자연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보전관리 수단, 기술지원, 비용분담, 인센티브, 토지은퇴, 지역권 및 규제지원계획 등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깨끗하고 풍부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습지를 보호하고 둘째, 농경지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양의 질을 향상시키며 셋째, 산림과 방목지를 보호하고 넷째, 종의 보호를 위해서 야생서식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킨다. 전략목표 6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은 <표 6>과 같다.

표 6 전략목표 6 달성을 위한 예산

단위: 100만 달러

사업별	2005	2006	2007	2007년 전년대비 중감률(%)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국	1,991	2,154	2,481	15.2
자연자원환경국	8,690	8,327	7,707	-7.4
연구・교육・경제국	469	466	356	-23.6
합계	11,151	10,947	10,545	-3.7

주:(1) USDA가 제공하는 보조의 총액인 사업계획별 예산기준임.

전략목표 6 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Farm Bill)의 환경보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 및 기술지원에 최대수준의 기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 2007년 예산은 2006년보다 2억 5,200만 달러, 2002년 이후 16억 달러 이상 증액된 40억 달러가 배정된다.

<sup>(2) 2005</sup>년 실제치, 2006년 전망치임.

이번 예산에는 환경보전안보계획(Conservation Security Program, CSP)에 3억 4,200만 달러, 습지보전계획(Wetland Reserve Program, WRP)에 4억 300만 달러 가 배정된다.

둘째, 자원보전 및 개발(Resource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Program, RC&D) 계획을 개혁한다. RC&D 계획을 통해서 자연자원보전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은 주 및 지방 정부와 지역 비영리기구 로 하여금 자연자원의 관리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개발하며, 계획을 수립하도 록 지원하다.

셋째, 대형 산불의 위험을 줄이고 정부의 산림증진법안(Healthy Forests Initiative, HFI)을 이행한다. 이를 위해서 2007년 예산에는 전국산불방지 대책 사업이나, 소방 활동을 강화하거나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금 이 배정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6억 5.600만 달러, 산불 진압활동을 위해서 10년 동안 평균 7억 4,600만 달러가 배정된다.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 연방림(National Forest)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약 14억 달러의 예 산이 배정된다. 이 예산에는 연방림의 임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달러가 추가 배정되어 있다.

넷째, 농업용수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연구를 제공한다. 가뭄은 가장 피해가 극심한 자연재해다. 이번 예산에는 ARS가 가뭄피해를 완화하는 기술이나 관 리체계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190만 달러가 증액된다. 또한 CSREES 는 작물, 원예식물, 산림의 용수사용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300 만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기후변화연구법안(Climate Change Research Initiative)를 지원 하는 연구사업을 제공한다. ARS는 32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아 농업 생태 체계를 통해서 식료 및 섬유의 생산과 탄소제거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 는 생산기술과 기법에 대한 학술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온실가스 측정을 위 해 구축된 기존 ARS 네트워크를 확충한다. 또한 정부의 기후변화과학지원계획(Climate Change Science Program)에 따라 수행한 연구사업을 지원한다.

자료: http://www.usda.gov(미국 농업부)

부표 USDA 2007년도 농업예산 현항

단위: 100만 달러

	사업계획별 예산(Program Level)				원그리호에(0 1 )				
	사업계	왹벌 예/	산(Progra			현금지출액(Outlay)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률(%)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률(%)	
농가 및 해외농업국	44,930	46,206	43,403	-6.1	28,185	28,243	26,169	-7.3	
농가지원청	36,541	36,797	33,891	-7.9	23,083	22,648	20,452	-9.7	
농가융자계획	3,135	3,853	3,502	-9.1	322	345	132	-61.7	
환경보전계획	2,012	2,213	2,327	5.2	1,886	2,135	2,508	17.5	
품목별지원계획	30,099	29,406	26,651	-9.4	19,599	18,835	16,441	-12.7	
상품신용공사계획	(34,919)	(34,975)	(32,535)	-7.0	(20,187)	(21,257)	(19,050)	-10.4	
기타(인건비/잡비)	1,295	1,325	1,411	6.5	1,276	1,333	1,371	2.9	
위험관리청	3,014	4,048	4,243	4.8	2,950	3,294	3,677	11.6	
행정 및 운영비용	70	76	81	6.6	67	74	80	8.1	
작물보험기금	2,944	3,972	4,162	4.8	2,883	3,220	3,597	11.7	
해외농업지원청	5,375	5,361	5,269	-1.7	2,152	2,301	2,040	-11.3	
수출신용보증	2,625	3,107	3,167	1.9	137	252	121	-52.0	
시장개발계획	188	248	148	-40.3	184	209	139	-33.5	
수출보조계획	0	30	63	110.0	1	30	63	110.0	
농가수출조정지원	21	90	90	0.0	-37	90	90	0.0	
해외식량지원	2,335	1,669	1,574	-5.7	1,719	1,552	1,450	-6.6	
기타(인건비/잡비)	206	217	227	4.6	148	168	177	5.4	
농촌개발국	14,278	18,102	14,406	-20.4	3,146	2,899	2,995	3.3	
농촌설비지원청(유무상융자)	6,617	8,278	6,325	-23.6	483	244	159	-34.8	
농촌주택보급청(유무상융지)	6,163	7,908	6,271	-20.7	2,399	2,279	2,431	6.7	
농촌사업협력청(유무상융지)	861	1,257	1,139	-9.4	124	207	237	14.5	
기타(인건비/잡비)	637	659	671	1.8	140	169	168	-0.6	
농촌지역진흥계획	(3,176)	(3,104)	(2,926)	-5.7	(781)	(756)	(793)	4.9	
식량영양소비자지원국	51,036	53,862	54,444	1.1	50,228	54,123	54,175	0.1	
식량영양지원청	51,036	53,862	54,444	1.1	50,228	54,123	54,175	0.1	
푸드스템프	32,851	34,811	34,795	0.0	32,614	35,223	34,928	-0.8	
이동영양지원계획	12,503	13,206	13,902	5.3	12,299	13,356	13,795	3.3	
WIC	5,192	5,399	5,361	-0.7	4,975	5,198	5,200	0.0	
기타	490	446	386	-13.5	340	346	252	-27.2	
식량안전국	928	952	987	3.7	811	839	870	3.7	
식량안전검역청	928	952	987	3.7	811	839	870	3.7	

주 : (1) 사업계획별 예산은 USDA가 유무상 융자, 비용분담, 연구 및 기술지원 활동 품목별 지원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지원하는 모든 재정지원 총액임.

<sup>(2)</sup> 현금지출액은 연방재무성(Federal Treasury)으로부터의 현금지불액임.

<부표> 계속

	사업	계획별 예	산(Prograr	n Level)		현금지	출액(Outlay	7)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률(%)	2005	2006	2007	전년대비 증감률(%)
자연자원환경보전국	8,704	8,339	7,719	-7.4	6,154	8,453	7,809	-7.6
자연자원보전청	3,166	3,145	2,787	-11.4	1,115	3,068	2,684	-12.5
환경보전운영계획	831	831	745	-10.3	783	921	768	-16.6
습지보전계획	464	411	15	-96.4	233	496	362	-27.0
자연자원및보전개발	51	51	26	-49.0	51	50	30	-40.0
농가안전및농촌투자계획	1,820	1,850	1,999	8.1	45	1,596	1,519	-4.8
기타	0	2	2	0.0	3	5	5	0.0
산림청	5,538	5,194	4,932	-5.0	5,039	5,385	5,123	-4.9
연방산림운영체계	1,393	1,423	1,398	-1.8	1,398	1,379	1,404	1.8
산림및방목지연구	276	279	268	-3.9	301	285	293	2.8
주정부및민간산림관리	352	309	244	-21.0	397	453	419	-7.5
임야화재관리	1,703	1,753	1,768	0.9	1,588	1,825	1,693	-7.2
자본유지 및 보수	600	442	383	-13.3	564	547	411	-24.9
토지취득	62	43	26	-39.5	100	54	77	42.6
기타	9	8	9	12.5	9	12	14	16.7
자유재량 예산	4,396	4,258	4,097	-3.8	4,357	4,555	4,311	-5.4
의무적 예산	716	936	835	-10.8	682	830	812	-2.2
유통규제계획국	1,752	2,191	1,731	-21.0	1,837	2,356	1,843	-21.8
동식물검역청	1,128	1,035	1,112	7.4	1,130	1,117	1,112	-0.4
인건비및잡비	939	1,016	1,092	7.5	1,024	1,013	1,093	7.9
긴급지원기금	169	0	0	-	85	85	0	-100.0
기타 APHIS지원계획	20	19	20	5.3	21	19	19	0.0
<u>농산물유통</u> 지원청	79	78	85	9.0	217	204	237	16.2
제32조 기금	471	998	450	-54.9	452	998	449	-55.0
곡물육류검역청	74	80	84	5.0	38	37	45	21.6
연구교육경제지원국	2,695	2,709	2,309	-14.8	2,582	2,587	2,388	-7.7
농업연구소	1,309	1,288	1,027	-20.3	1,268	1,270	1,141	-10.2
협동연구교육지도청	1,184	1,207	1,046	-13.3	1,113	1,102	1,014	-8.0
경제연구소	74	75	83	10.7	74	76	82	7.9
국립농업통계청	128	139	153	10.1	127	139	151	8.6
기타 사업활동	555	594	612	3.0	-7,659	-3,788	-3,464	-8.6
USDA 총 예산	124,877	132,954	125,610	-5.5	85,284	95,712	92,783	-3.1

주:(1) 사업계획별 예산은 USDA가 유무상 융자, 비용분담, 연구 및 기술지원 활동 품목별 지원 등을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 지원하는 모든 재정지원 총액임.
(2) 현금지출액은 연방재무성(Federal Treasury)으로부터의 현금지불액임.

# 미국, 2006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김 상 현\*

미국 농업부(USDA)는 분기별로 농산물 무역 전망을 수정·발표한다. 이번 2월 16일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2006년(이하 회계연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은 645억 달러로 지난해 11월 전망과 동일한 반면, 농산물 수입액은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20억 달러 상향조정된 63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1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 1. 서론

2006년 농산물 수출은 지난 11월 전망과 동일한 64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1월 이후 원예작물과 쇠고기 수출은 호조를 보인 반면, 대두, 닭고기, 낙농품의 수출은 둔화되었다. 특히 원예작물 수출은 아몬드와 수목작물 (tree crop)의 가격상승으로 163억 달러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쇠고기 수출도 광우병 관련 금수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농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10% 상승한 635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는 신선 과일과 채소, 설탕, 코코아, 커피, 맥주, 포도주의 내수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2006년 농산물 무역수지는 수입증가에 힘입어 지난 11월 전망보다 20억 달러 하향조정 된 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일 전망이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sh3615@krei.re.kr 02-3299-4369

표 1 미국 농산물 수ㆍ출입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	l 전망
		2001	2002	2003	2004	2005	11월	2월
수	- N-	52.7	53.3	56.0	62.4	62.4	64.5	64.5
수		39.0	41.0	45.7	52.7	57.7	61.5	63.5
무역수?	<b>:</b> ]	13.7	12.3	10.3	9.7	4.7	3.0	1.0

## 2. 세계 경제전망

#### 2.1. 선진국 경제전망

2006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3.5~3.7%대를 넘어설 것이며, 2006년 세계 GDP 성장률은 2005년 3.25%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가의 고공행진, 유럽과 일본의 더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세계 경기는 꾸준히 강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장기금리는 2004년과 2005년 상반기에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단기 금리 상승과 세계 자금수요 증가에 힘입어 2006년에 증가할 전망이다. 미 연 방지불준비위원회(FRB)는 미래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단기금리가 꾸 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6년 달러는 평균적으로 평가절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교역국인 캐나다의 GDP 성장률은 2005년 3%를 상회했으며, 2006년에 도 이런 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공산품 가격 상승,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요 강세, 밝은 투자전망으로 인한 캐나다 달러의 초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캐 나다의 대미수출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EU-25는 2005년 1%대의 낮은 성장세에 이어 2006년 1.5%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유로화의 급속한 평가절상에 따라 유럽의 수출경쟁력은 하락했다. 미국과 EU의 장기금리 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2006년 달러는 유로화 대비 완만한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이다.

#### 2.2.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

유럽과 일본의 경기부진을 전제로 할 때,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2005년 중국의 경제성장은 강세를 보이면서 연간 10%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중국 경제가 급성장함에 따라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한편, 일부 농산물을 비롯하여 공산품 원료 및 원유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수입증가율은 2005년 미국 수준에 버금가며, 에너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입증가 추이에 따라 2006년 세계경제는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잠정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변동환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6년 위안화 대비 달러는 다소 평가절하 될 전망이다.

#### 2.3. 개도국 경제전망

2005년 개도국 경제성장률은 거의 6%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지역이 될 것이다.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6% 대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GDP는 2004년, 2005년 7% 대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이런 추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은 5% 대를 상회할 것이며, 비중화권 아시아국의 통화는 대미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의 5대 경제권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며, 2005년 4.25%에 이어 2006년 4% 대를 유지할 전망이다. 바이오연료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고유가의 효과를 완화해 온 브라질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3.6% 대의 성장률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르헨

티나의 성장률은 2005년 6%대를 기록한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는 3% 대로 하락할 전망이다.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멕시코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4% 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수출지향 정책을 추구해 온 칠레는 2005년 6% 대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6년에도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 2.4. 환율전망

달러(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무역 가중치 반영)는 2002년 2월~2005년 4월 동안 약 20% 평가절하 된 반면, 2005년 4월~11월 동안은 5% 평가절상으로 반전되었다. 달러는 2006년에 유로화 대비 평가절상 되는 반면, 개도국 통화 대비 평가절하 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2006년 무역가중치를 반영한 달러화가다소 평가절하 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성장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품목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6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전망에 비해 2억 달러, 전년대비 3억 달러 상향조정된 16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 11월 이후 옥수수와 밀의 수출단가 상승과 함께 옥수수 수출량 하향세가 반전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밀의 수출량은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 수출단가의 상승으로 수출액은 44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옥수수 수출량은 중국과의 경쟁으로지난 11월 전망에 비해 400만 톤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사료와 에탄올 생산에 대한 내수 증대로 인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2006년 쌀의 수출량과 수출단가는 중동에 대한 수출 강세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유지종자와 가공품 수출액은 지난 전망에 비해 5억 달러, 전년대비 12억 감소한 98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대두 수출량은 지난 전망에 비해 450만 톤이나 감소할 전망인 반면, 수출단가가 톤 당 240달러로 상승세

로 반전됨에 따라 수출액은 6억 달러 감소에 그친 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과 중국의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남미와의 경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면화 수출은 지난 전망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출액은 45억 달러, 수출량은 360만 톤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이후 면화의 작황호조와 중국의 수입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면화 수출은 강세를 보였다.

2006년 육류, 가금육, 낙농품 수출은 전년대비 5억 달러 증가, 지난 전망보다 다소 증가한 126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2006년 쇠고기 수출량과수출액은 수출판로가 막힌 시장으로 수출이 재개됨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75만 톤, 3억 3,000만 달러 증가한 28만 7,000톤, 12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쇠고기 수출은 2사분기에 홍콩, 대만, 싱가포르로의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의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며, 이는 쇠고기 수출 증가분을 상회할 것이다. 이번 쇠고기 수출전망의 경우 2005년 12월 재개 된 일본으로의 수출이 연초 잠정 중단되었지만, 2006년 상반기 재개되며, 한국으로의 수출은 광우병으로 인해중단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006년 돼지고기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멕시코나 캐나다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환율의 영향으로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쇠고기 수출재개에 따라 다소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닭고기 수출은 조류독감(Avian Influenza, AI)으로 인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수출 감소에 힘입어 19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2006년 원예작물 수출액은 지난 전망에 비해 4억 달러 증가하며, 전년대비 18억 달러 증가한 163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이런 전망은 달러화의 약세, 해외수요 증가, 수출단가의 상승 등의 요인에 의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견과류 수출액은 유럽수요의 강세, 경쟁국인 스페인의 약세, 수출단가

의 강세 등의 요인에 힘입어 전년대비 7억 달러 증가한 31억 달러로 상향조 정 될 전망이다. 한편 견과류 가운데 아몬드 수출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2006년 과일과 조제품의 수출은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증가한 44억 달러로 상향조정되며, 신선 감귤류의 수출은 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신선 낙엽성 과일의 수출은 사과와 포도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14% 증가한 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채소와 조제품 수출은 37억 달러에 달하며, 감자를 포함한 신선채소의 수출은 1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신선딸기와메론, 그리고 포도주를 제외한 향유(essential oil), 맥주, 기타 식품조제품 등의기타 원예작물의 수출이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원예작물의 4대 수출시장은 캐나다, 일본, EU-25,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100만 톤

	10~	12월	2005	2006년	년 전망
	2004	2005	2003	11월	2월
밀	25.81	27.18	26.41	27.2	27.2
쌀	6.81	7.26	4.30	4.4	4.3
잡곡	0.88	1.02	50.38	56.5	52.3
옥수수	14.25	14.37	45.14	51.5	47.5
사료곡물	13.06	13.06	10.93	11.0	11.0
유지종자 및 가공품	2.70	3.04	39.56	38.8	34.4
대두	16.93	12.74	29.61	29.3	24.8
대두박	13.98	9.98	6.71	6.1	6.0
대두유	1.97	1.79	0.60	0.6	0.6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0.22	0.15	1.57	1.7	1.8
쇠고기	0.05	0.07	0.20	0.2	0.3
돼지고기	0.22	0.24	0.88	1.0	0.9
부산물	0.14	0.13	0.48	0.5	0.5
닭고기	0.68	0.58	2.43	2.5	2.4
담배	0.05	0.05	0.15	0.2	0.2
면화	0.57	0.61	3.37	3.6	3.6
주요 벌크품목	51.05	48.86	114.21	121.2	112.4

주:(1) 밀의 경우 밀가루 제외됨.

<sup>(2)</sup>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등이 포함됨.

<sup>(3)</sup> 주요 벌크품목은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이 포함됨.

표 3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6년 전망		
		~12월	2005			
	2004	2005	2003	11월	2월	
곡물 및 사료곡물	4.14	4.51	16.21	16.3	16.5	
밀	1.10	1.18	4.24	4.2	4.4	
쌀	0.27	0.31	1.26	1.4	1.4	
잡곡	1.47	1.51	5.30	5.4	5.2	
옥수수	1.34	1.36	4.73	4.9	4.8	
사료곡물	0.68	0.75	2.71	2.7	2.8	
유지종자 및 가공품	4.18	3.49	11.03	10.3	9.8	
대두	3.07	2.36	7.02	6.5	5.9	
대두박	0.39	0.40	1.49	1.2	1.3	
대두유	0.13	0.09	0.35	0.4	0.3	
축산물	1.96	2.20	7.44	7.8	8.1	
쇠고기	0.21	0.30	0.83	0.8	1.2	
돼지고기	0.54	0.59	2.24	2.4	2.3	
부산물	0.18	0.20	0.69	0.7	0.8	
가죽 및 모피	0.39	0.42	1.75	1.8	1.8	
가금육	0.75	0.86	3.01	3.0	2.9	
닭고기	0.51	0.58	2.03	2.0	1.9	
유제품	0.45	0.39	1.69	1.7	1.6	
담배	0.32	0.32	0.98	1.1	1.1	
면화	0.71	0.76	3.87	4.5	4.5	
종자류	0.29	0.28	0.93	0.9	0.9	
원예작물	3.87	4.38	14.52	15.9	16.3	
과일 및 조제품	0.81	0.95	4.09	4.3	4.4	
채소 및 조제품	1.41	1.58	3.47	3.7	3.7	
견과류 및 조제품	0.85	1.15	2.42	3.0	3.1	
설탕 및 열대성작물	0.54	0.61	2.70	2.8	2.9	
주요 벌크품목	6.93	6.44	22.67	23.1	22.5	
총수입액	17.35	17.92	62.39	64.5	64.5	

주 : (1) 곡물 및 사료곡물의 경우 두류 및 가공곡물 포함됨. (2) 밀의 경우 밀가루 제외됨.

<sup>(3)</sup>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등이 포함됨.(4) 주요 벌크품목은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이 포함됨.

#### 4. 지역별 농산물 수출전망

2006년 전체 농산물 수출액이 보합세를 띠는 가운데 국가별로는 미미한 변화를 보일 전망이다. 캐나다, 멕시코, 대만으로의 수출은 확대되는 반면, EU-25, 중국, 중동으로의 수출은 위축될 전망이다.

2006년에도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 대상국의 순위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캐나다 110억 달러, 멕시코 98억 달러, 일본 76억 달러, EU-25 68억 달러, 중국 54억 달러를 차지할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로의 수출은 원예작물 수출에 힘입어 지난 전망에 비해 각 각 1억 달러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특히 2006년 1사분기에 멕시코로의 수출 은 모든 품목에서, 캐나다로의 수출은 생축 및 가공품과 곡물 및 사료 등에서 지난해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로의 수출은 지난 전망에 비해 보합세를 보이며, 쇠고기와 원예작물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대두의 수출은 감소할 전망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대두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감소한 54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대만으로의 수출은 사료곡물, 과일, 쇠고기의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상향조정 되는 한편 일본으로의 수출은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럽과 유라시아로의 수출은 원예작물 수출이 소폭 증가한데 반해 대두 수출은 대폭 감소하여 지난 전망보다 1억 달러 감소한 87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한편 중동으로의 수출은 유지종자의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보다 소폭 감소한 30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표 4 미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10 -	12.9]		2006년 전망	
	10~12월		2005		
	2004	2005		11월	2월
아시아	6.38	6.32	22.54	22.6	22.6
동아시아	5.23	5.34	18.40	18.1	18.1
일본 중국	1.98	2.03	7.83	7.6	7.6
중국	1.90	1.84	5.29	5.5	5.4
홍콩	0.26	0.24	0.88	0.8	0.8
대만	0.56	0.67	2.20	2.1	2.2
한국	0.51	0.56	2.18	2.1	2.1
동남아시아	0.94	0.80	3.45	3.6	3.6
인도네시아	0.26	0.23	0.98	1.0	1.0
필리핀	0.21	0.17	0.84	0.9	0.9
말레이시아	0.10	0.11	0.38	0.4	0.4
태국	0.25	0.15	0.76	0.8	0.8
남아시아	0.22	0.18	0.70	0.9	0.9
서반구	6.29	6.91	24.71	26.1	26.3
북미	4.96	5.35	19.55	20.6	20.8
캐나다	2.53	2.75	10.35	10.9	11.0
멕시코	2.43	2.59	9.20	9.7	9.8
캐리비언	0.49	0.53	1.85	1.9	1.9
중미	0.39	0.46	1.51	1.6	1.6
남미	0.45	0.58	1.80	2.0	2.0
브라질	0.06	0.06	0.22	0.3	0.3
콜롬비아	0.13	0.21	0.60	0.7	0.7
베네수엘라	0.08	0.14	0.35	0.3	0.3
유럽/유라시아	2.88	2.81	8.60	8.8	8.7
EU-25	2.40	2.31	6.93	6.9	6.8
기타 유럽	0.11	0.13	0.47	0.5	0.5
FSU-12	0.36	0.37	1.20	1.4	1.4
러시아	0.26	0.32	0.90	0.9	0.9
중동	0.78	0.76	2.88	3.1	3.0
터키	0.19	0.25	1.02	1.1	1.1
사우디아라비아	0.10	0.11	0.35	0.4	0.4
아프리카	0.70	0.82	2.67	2.8	2.8
북아프리카	0.38	0.40	1.27	1.4	1.4
이집트	0.23	0.26	0.81	0.8	0.8
사하라이남	0.32	0.41	1.40	1.4	1.4
오세아니아	0.19	0.19	0.75	0.9	0.9
기타	0.14	0.12	0.24	0.2	0.2
총수입액	17.35	17.92	62.39	64.5	64.5

주:(1) EU-25는 기존 EU-15 이외에 2005년 5월 이후 10개 신생가맹국이 포함됨.
(2) 기타 유럽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 유고슬라비아가 포함됨.

<sup>(3)</sup> FSU-12는 소비에트연방 15개 공화국에서 발트 해 3국이 제외됨.

#### 5. 품목별 농산물 수입전망

2005년 미국 경제가 3.5%대의 신장 속도를 보임에 따라 미국 농산물 수입은 이 속도 이상 늘어날 것이다. 2006년 총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20억 달러 증가한 635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보합세를 보이는 원예작물을 제외하고, 대다수 품목의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설탕 및 가공품과 고무, 커피, 올리브유 등의 수입단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2005년 초 평가절하 된 이후 2004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미국의 구매력이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예작물과 가공품의 2006년 수입액이 지난 전망과 같은 282억 달러에 머물고 있지만, 개별 품목 간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신선 및 냉동 과일의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3억 달러 증가한 52억 달러로 상향조정 되는 반면, 신선 및 냉동 채소의 수입은 1억 달러 감소한 47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전망이다. 견과류 및 조제품과 향유 수입액은 지난 전망보다 각각 2억 달러 감소한 13억 달러, 24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원예작물 수입은 품목마다 계절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신선 및 냉동 품목의 수입은 보통 겨울철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포도, 오렌지와 온대성지역인 남반구의 과일과 채소 등은 추운 계절에 수입되고 있다. 이밖에 계절변화에 민감한 품목들은 초콜릿, 커피, 유제품, 곡물가공품, 과자류 등이다.

포도주 수입은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반응하여 다양한 품목의 수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설탕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세계 설탕가격 상승과 함께, 원당에 대한 미국의 수입쿼터 증가로 인해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설탕가격 상승으로 인해 과자류의 수입액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생우 수입은 전년대비 70만 두 증가한 220만 두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특히 캐나다로부터 전년대비 21만 2,000 두 증가한 약 100만 두가 수

입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산 수입 소는 30개월 미만의 입식용 혹은 도축용소로 제안되고 있다. 쇠고기의 경우 35억 달러에 달하는 110만 톤이 수입될전망이다. 돼지와 돼지고기의 수입량과 수입액은 전년대비 보합세를 보이는가운데 지난 전망보다는 다소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식물성 기름의 수입액은 올리브유와 팜유의 가격 상승분만큼 증가할 전망이다. 2005년 10~12월 동안 팜유 수입량은 전년 수준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지역의 생산 감소의 영향으로 올리브유 가격이 상승세를보이는 한편, 2006년에 시행되는 전이지방(transfat)에 대한 식품성분 의무표시제로 인해서 팜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전망

단위: 100만 톤

	10~12월		2005	2006년 전망	
	2004	2005	2003	11월	2월
포도주	1.89	2.08	7.07	7.6	7.6
맥주류	6.38	7.03	29.30	30.1	32.0
생우	0.47	0.79	1.49	2.2	2.2
쇠고기	0.30	0.26	1.22	1.2	1.1
유제품	0.09	0.09	0.36	0.4	0.4
곡물 및 가공품	1.22	1.31	4.64	4.7	4.8
과일(신선/냉동)	1.81	1.77	8.19	8.5	8.4
과일(조제품)	0.26	0.28	1.06	1.2	1.1
견과류 및 조제품	0.11	0.09	0.34	0.4	0.4
채소(신선/냉동)	1.27	1.35	4.96	5.1	5.3
채소(조제품)	0.36	0.34	1.39	1.5	1.4
식물성기름	0.50	0.64	2.23	2.4	2.6
설탕 및 가공품	0.63	0.97	2.79	3.0	4.1
코코아 및 가공품	0.26	0.33	1.24	1.3	1.6
커피 및 가공품	0.33	0.32	1.32	1.3	1.4

주 : (1) 포도주는 100만 헥토리터, 생우는 100만 두 기준임.

<sup>(2)</sup> 유제품은 치즈, 카세인, 버터를 포함함.

<sup>(3)</sup> 과일(조제품), 채소(조제품)에는 주스가 제외됨.

표 6 미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10~12월			2006년 전망	
	2004	2005	2005	11월	2월
축산물	2.87	3.20	11.14	11.7	11.6
생축(가금육 제외)	0.44	0.79	1.58	2.2	2.2
적색육 및 가공품	1.45	1.35	5.72	5.6	5.4
쇠고기	0.95	0.83	3.77	3.7	3.5
유제품	0.66	0.73	2.61	2.7	2.7
곡물 및 사료곡물	1.18	1.28	4.43	4.7	4.8
곡물가공품	0.89	0.94	3.26	3.5	3.5
유지종자 및 가공품	0.66	0.77	2.95	3.1	3.2
식물성기름	0.52	0.63	2.37	2.6	2.7
원예작물	6.27	6.64	25.79	28.2	28.2
과일(신선/냉동)	0.90	1.05	4.49	4.9	5.2
과일(가공품) 및 주스	0.50	0.54	2.17	2.4	2.4
견과류 및 조제품	0.38	0.31	1.19	1.5	1.3
채소(신선/냉동)	1.19	1.22	4.50	4.8	4.7
채소(가공품)	0.78	0.82	3.04	3.2	3.2
포도주	1.02	1.09	3.69	4.0	4.0
맥주류	0.64	0.74	2.99	3.2	3.5
향유	0.52	0.53	2.34	2.6	2.4
절화류	0.33	0.33	1.38	1.5	1.5
설탕 및 가공품	0.53	0.72	2.31	2.4	2.8
과제류	0.29	0.30	1.16	1.2	1.3
코코아 및 가공품	0.59	0.71	2.63	2.7	3.1
커피 및 가공품	0.56	0.71	2.83	3.1	3.4
천연고무	0.38	0.42	1.51	1.6	1.7
양념류 및 천연약재	0.35	0.41	1.49	1.5	1.8
담배	0.35	0.39	1.57	1.6	1.7
기타 음료	0.25	0.31	1.07	1.2	1.3
총수입액	13.98	15.55	57.72	61.5	63.5

### 6. 지역별 농산물 수입전망

미국의 주요 수입 대상국은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다. 과자류, 쇠고기, 포도주, 유제품, 곡물가공품, 식물성 기름의 경우 미국의 최대 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EU-25 등이다. 한편 중국은 과자류와 원예작물의 수입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6년 전체 농산물 수입액은 설탕, 코코아, 커피, 고무, 차, 양념류 등 열대성 품목의 수입증가로 인해서 지난 전망보다 20억 달러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망고, 파인애플, 메론 등의 신선 열대성 과일류의 경우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EU-25,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3대 농산물 수입 대상국으로 전체 수입 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EU-25의 2006년도 대미 수출액은 13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요 수출품목은 포도주와 맥주, 과일과 채소가공품, 치즈, 올리브유, 과자류를 포함한 가공식품과 음료 등이다. 캐나다의 2006년도 대미수출액은 1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로 과자류, 적색육, 신선 및 가공채소, 유채유, 생축 등을 수출한다.

멕시코의 2006년도 대미 수출액은 8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주요 수출품 목은 맥주,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 과자류, 생축 등이다. EU-25,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 대상국은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중국 순이다. 호주로부터는 쇠고기, 포도주, 맥주, 브라질로부터는 열대성 과 일, 주스, 커피콩, 중국으로부터는 가공 과일 및 채소, 주스, 과자류, 신선채소, 견과류, 양념류, 차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표 7 미국의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원

	10~12월		2005	มไร	2006년 전망	
	2004	2005	2005	비중	11월	2월
서반구	7.02	8.08	29.84	51.7	31.8	33.0
캐나다	2.95	3.41	11.82	20.5	12.1	13.0
멕시코	1.86	2.10	8.10	14.0	8.8	8.6
 중미	0.48	0.57	2.47	4.3	2.7	2.9
코스타리카	0.19	0.22	0.88	1.5	0.9	1.1
과테말라	0.17	0.19	0.90	1.5	1.0	1.0
기타	0.13	0.16	0.69	1.2	0.8	0.8
캐리비언	0.07	0.08	0.36	0.6	0.4	0.5
남미	1.65	1.92	7.10	12.3	8.0	8.0
 브라질	0.47	0.60	1.84	3.2	2.0	2.1
 칠레	0.29	0.28	1.53	2.7	1.7	1.7
콜롬비아	0.29	0.35	1.38	2.4	1.6	1.6
기타	0.61	0.70	2.36	4.1	2.6	2.6
유럽/유라시아	3.65	3.74	13.70	23.7	14.6	14.2
EU-25	3.52	3.62	13.24	22.9	14.0	13.6
기타	0.11	0.11	0.42	0.7	0.5	0.5
아시아	1.88	2.13	8.02	13.9	8.7	9.0
동아시아	0.62	0.72	2.66	4.6	2.9	3.1
중국	0.40	0.48	1.79	3.1	2.0	2.1
기타	0.23	0.24	0.87	1.5	0.9	1.0
동남아시아	1.03	1.16	4.38	7.6	4.7	4.8
인도네시아	0.35	0.45	1.60	2.8	1.8	1.8
태국	0.28	0.28	1.09	1.9	1.1	1.1
기타	0.40	0.43	1.69	2.9	1.9	1.9
남아시아	0.24	0.25	0.98	1.7	1.1	1.1
인도	0.21	0.23	0.90	1.6	1.0	1.0
오세아니아	1.02	1.06	4.18	7.2	4.3	4.8
호주	0.69	0.63	2.49	4.3	2.6	2.6
뉴질랜드	0.30	0.39	1.62	2.8	1.7	2.1
아프리카	0.26	0.35	1.33	2.3	1.4	1.8
사하라이남	0.23	0.31	1.21	2.1	1.2	1.6
코스타리카	0.09	0.14	0.57	1.0	0.6	0.8
중동	0.16	0.19	0.64	1.1	0.7	0.7
터키	0.09	0.12	0.36	0.6	0.4	0.5
총수입액	13.98	15.55	57.72	100.0	61.5	63.5

자료: http://www.ers.usda.gov(미국 농업부 경제연구소)

# 중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동향

박 은 철\*

2005년도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4년째 되는 해로 지금까지 농산물<sup>1)</sup>의수출과 수입은 모두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다. 수출입 총액은 562.9억 달러로 농산물의 수출액과 수입액은 6년 연속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6년중 2005년도는 중국 농산물 수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큰 한해였고, 농산물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75.5%나 대폭 감소하였으며, 곡물은 전년의 순수입에서 순수출로 전환되었다. 중국 농업부는 현재 중국의 농산물 수출상황은 양호하며 외부환경도 상대적으로 원만하여 수출 증가의 가능성은 비교적 큰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06년 2월 17일 중국 농업부가 발표한 2005년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과 각 품목별 수출입 특징 등을 살펴본다.

## 1. 농산물 수출입 현황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지속적으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출 증가 폭이 수입 증가 폭을 크게 앞질러 농산물 무역적자는 전년과 비교하여 대폭 감소하였다. 2005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액은 562.9억 달러로 전년대비 9.5% 증가하였다. 그중 수출액은 27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7.9%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287.1억 달러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적자는 2004년의

<sup>\*</sup> 농림부 parkec@hanmail.net 010-3077-8706

<sup>1)</sup> 여기에서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모두 합친 것임

46.4억 달러에서 2005년에는 11.4억 달러로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75.5%나 감소하였다.

2005년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총액은 전체 무역액2)의 4.0%를 차지한다. 그 중 농산물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3.6%를 차지하고 농산물 수입액은 전체수입액의 4.3%를 차지한다.

표 1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현황, 2005년

단위: 억달러

<u></u>	출입	수	수 출 수 입		입	무역적자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 구극역사 
562.9	9.5	275.8	17.9	287.1	2.4	11.4

http://www.agri.gov.cn

## 2. 농산물 수출입의 특징

#### 2.1. 토지집약형 농산물

## 2.1.1. 곡물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순수출

곡물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의 순수입에서 순수출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주요원인은 최근 2년간 중국이식량증산을 회복하여 수급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밀의 수입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옥수수의 수출은 대폭 증가하였다.

<sup>2) 2005</sup>년도 중국의 전체산업에서 무역흑자는 1,018.8억 달러이다.

2005년 중국의 곡물 수출은 1,017.5만 톤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627.2만 톤으로 전년대비 35.7% 감소하여 전년에 495.8만 톤의 순수입에서 2005년에는 390.3만 톤의 순수출로 전환되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쌀3)은 2005년 68.6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24.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2.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9% 증가하여 16.4만 톤을 순수출하였으며 순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5.0% 증가하였다.

옥수수4)는 2005년 864.2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70% 증가하였고 수입은 0.4만 톤으로 매우 적어 863.8만 톤을 순수출하였으며 순수출이 전년대비 270%나 증가하였다.

표 2 중국의 식량수출입 현황. 2005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순 수출입	비고
곡물 - 쌀 - 옥수수	1,017.5 68.6 864.2	110 -24.6 270	627.2 52.2 0.4	-35.7 31.9	390.3 16.4 863.8	전년 495.8만톤 순수입 전년대비 15.0% 증가 전년대비 2.7배 증가
- 밀	60.5	-44.5	353.8	-51.3	-293.4	전년대비 52.4% 감소

자료: http://www.agri.gov.cn

밀5)은 2005년 60.5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44.5%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353.8만 톤으로 전년대비 51.3% 감소하여 293.4만 톤을 순수입하였으며 전년 동기대비 52.4% 감소하였다. 보리제품은 2005년 217.9만 톤을 수입하여 전년 동기대비 27.7% 증가하였다.

<sup>3)</sup> 쌀, 쌀가루, 벼 및 벼 종자가 포함된다.

<sup>4)</sup> 옥수수, 옥수수가루, 기타 가공옥수수와 종자용 옥수수가 포함된다.

<sup>5)</sup> 밀, 밀가루 및 종자용 밀이 포함된다.

## 2.1.2. 식용 유료(油料)작물은 수출입 모두 증가하고 무역적자가 확대 되었으나 식용식물유는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여 무역 적자 감소

식용 유료작물은 2005년 136.0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6.8% 증가 하였 으며 수입은 2,704.2만 톤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하였다. 그중 대두는 41.3 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8.6% 증가하였고 수입은 2.659.1만 톤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하였다.

표 3 중국의 유료작물·식용식물유의 수출입 현황. 2005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유료작물	136.0	16.8	2,704.2	30.3
- 대두	41.3	18.6	2,659.1	31.4
식용식물유	22.8	250	621.3	-8.2
- 두유	6.3	220	169.4	-32.7

자료: http://www.agri.gov.cn

식용식물유는 2005년 22.8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2.5배 증가하였고 수 입은 621.3만 톤으로 전년대비 8.2% 감소하였다. 그중 두유는 6.3만 톤을 수 출하여 전년대비 2.2배나 증가하였고 수입은 169.4만 톤으로 전년대비 32.7% 감소하였다. 유채유는 3.1만 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4.6배나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17.8만 톤으로 전년대비 49.7% 감소하였다. 종려유(棕櫚油)는 433.0만 돈을 수입하여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식용식물유의 수출증가 주요원인 은 옥수수유와 두유의 수출증가가 비교적 컸기 때문이다.

## 2.1.3. 면화는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은 감소하여 무역적자 증가, 식용 당은 수출이 수입증가보다 커 무역적자는 확대

면화 수출은 2005년 0.8만 톤으로 전년대비 33.1% 감소하였고 수입은 265.3만 톤으로 전년대비 33.7% 증가하였다. 식용당 수출은 2005년 35.8만 톤으로 전년 대비 3.2배나 증가하였고 수입은 139.0만 톤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다.

표 4 중국의 유료작물·식용식물유의 수출입 현황. 2005년

단위: 만톤

구 분	수출량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전년대비 증감률(%)
면화	0.8	-33.1	265.3	33.7
식용당	35.8	320	139.0	14.4

http://www.agri.gov.cn

#### 2.2. 노동집약형 농산물

채소, 과일, 축산물, 수산물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의 수출은 계속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그 주요원인은 중국의 농산물 품질이 계속하여 높아지고 가격경쟁력이 비교적 우세하기 때문이다.

#### 2.2.1. 채소, 과일의 수출은 모두 증가하고 무역흑자는 크게 확대

채소 수출량은 2005년 680.0만 톤으로 전년대비 13.0%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44.8억 달러로 전년대비 18.1%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9.7만 톤으로 전년대비 9.2% 감소하여 수입액은 0.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6% 감소하였다.

과일 수출량은 2005년 364.6만 톤으로 전년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20.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5% 증가하였다. 수입량은 114.5만 톤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6.6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증가하였다.

표 5 중국의 채소 및 과일의 무역 현황, 2005년

단위: 만톤, 억달러

구 분		수	출		수 입			
	량	증감(%)	액	증감(%)	량	증감(%)	액	증감(%)
채 소 과 일	680.0 364.6	13.0 16.6	44.8 20.3	18.1 23.5	9.7 114.5	-9.2 7.9	0.82 6.6	-10.6 12.7

자료: http://www.agri.gov.cn

# 2.2.2. 축산물과 수산물은 수출입 모두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의 무역 적자는 대폭 감소되고 수산물의 무역흑자는 증가

축산물 수출은 2005년 36.0억 달러로 전년대비 13.0% 증가하였고 수입은 42.3억 달러로 전년대비 4.7% 증가하여 무역적자는 6.3억 달러로 전년대비 26.2% 감소하였다. 그중 산돼지 수출은 9.5억 달러로 전년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1.8억 달러로 전년대비 25.3% 감소하였다. 가금 및 가금산물 수출은 9.1억 달러로 전년대비 40.8%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1배 증가하였다.

수산물 수출은 2005년 78.9억 달러로 전년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41.2억 달러로 전년대비 27.2% 증가하여 무역흑자는 37.7억 달러로 전년대비 1.1% 증가하였다.

표 6 중국의 축・수산물 수출입 현황(2005년)

단위: 억달러

구 분	수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액	전년대비 증감률(%)	순 수출입	비고
축 산 물	36.0	13.0	42.3	4.7	-6.3	전년대비 26.2% 감소
수 산 물	78.9	13.2	41.2	27.2	37.7	전년대비 1.1% 증가

http://www.agri.gov.cn

## 3. 수출입 동향

### 3.1. 지역별 동향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은 여전히 동부지역 위주이며 2005년에는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수입비중은 약간 증가하였다. 중부지역은 동부지역과는 반대로 수출비중은 증가하고 수입비중은 약간 감소하였으며 서부지역은 수출입비중 모두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동부지역 농산물 수출액은 216.5억 달러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고 중국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78.5%를 차지하여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2.3% 포인트 감소하였다. 수입액은 269.3억 달러로 전년대비 2.9% 증가하였고 중국 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93.8%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하였다.

중부지역은 농산물 수출액이 38.2억 달러로 전년대비 38.4% 증가하였고 중국 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13.9%를 차지하여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2.0%포인트 증 가하였다. 수입액은 1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0.1% 감소하였고 중국전체 농산 물 수입액의 4.2%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0.6% 포인트 감소하였다.

서부지역은 농산물 수출액이 21.1억 달러로 전년대비 21.7% 증가하였고 중국전체 농산물 수출액의 7.6%를 차지하여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2%포인트증가하였다. 수입액은 5.7억 달러로 전년대비 9.8% 증가하였고 중국전체 농산물 수입액의 2.0%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0.1%포인트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체 성중 2005년 농산물 수출 1위는 산동성으로 수출액은 72.4억 달러로 전년대비 22.2% 증가하였다. 2위는 광동성으로 수출액은 35.8억 달러 이며 전년대비 5.2% 증가하였고, 3위는 절강성으로 수출액은 24.9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9.4% 증가하였다. 수입 1위는 산동성으로 수입액은 56.5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11.5% 증가하였다. 2위는 광동성으로 수입액은 45.5억 달러이며 전 년대비 10.3% 감소하였고, 제3위는 강소성으로 수입액은 45.0억 달러이며 전 년대비 3.4% 증가하였다.

#### 3.2. 대륙별 동향

#### 3.2.1.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입은 모두 증가

아시아지역은 중국의 제일 큰 농산물 수출시장으로 2005년 수출액은 181.5 억 달러로 전년대비 13.7% 증가하여 중국 농산물 수출총액의 65.8%를 차지하 였으며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2.4%포인트 감소하였다. 그중 수출 5위 대상국 (지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는 일본으로 79.4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2위는 한국으로 28.6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34.1% 증가하였으며, 3위는 홍콩으로 27.7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1.8% 증가하였다. 4위는 말레이시아로 6.9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으며, 5위는 인도네시아로 4.2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6.4% 감소하였다.

아시아지역은 2005년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시장이다. 아시아지역으로부터 수입은 56.7억 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중국 농산물수입총액의 19.6%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0.03%포인트 증가하였다.

#### 3.2.2. 유럽에 대한 수출입 역시 모두 증가

유럽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2005년 유럽에 대한 수출액은 45.4억 달러로 전년대비 32.9% 증가하였고,이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의 16.5%를 차지하여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7.3%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중 수출 5위 대상국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1위는 독일이며 9.4억 달러로 전년대비 37.5% 증가하였다. 2위는 러시아로 7.3억 달러로 전년대비 23.0% 증가하였으며, 3위는 네델란드로 5.4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30.7% 증가하였다. 4위는 영국으로 4.0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으며, 5위는 스페인으로 3.8억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대비 68.4% 증가하였다.

유럽은 중국의 네 번째로 큰 농산물 수입시장이다.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3.9억 달러이며 전년대비 수입액이 31.3% 증가하여 중국 농산물 총수입시장의 11.8%를 차지하였으며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 증가하였다.

<sup>6)</sup> 그중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35.0억 달러로 전년대비 33.3% 증가하였다.

#### 3.2.3. 미주에 대한 수출도 증가

북미지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농산물 수출시장이다. 2005년 북미에 대한 수출액은 33.4억 달러로 전년대비 23.6% 증가하여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의 12.1%를 차지하였으며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9%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중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대비 23.4% 증가하였으며, 캐나다에 대한 수출은 3.9억 달러로 24.8% 증가하였다.

남미는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 중 네 번째로 큰 시장으로 5.3억 달러를 수출 하였고 전년대비 30.2% 증가하여 중국 농산물 수출시장의 1.9%를 차지하였 으며 수출비중이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하였다.

#### 3.2.4. 북미로부터 농산물 수입은 감소하고 남미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북미와 남미는 각각 중국의 제1, 제2의 농산물 수입시장이다. 2005년 북미로부터 79.0억 달러를 수입하여 수입액이 전년대비 13.7% 감소하였고 중국 농산물 수입시장의 27.5%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5.2%포인트 감소하였다. 남미로부터는 75.6억 달러를 수입하여 수입액이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고 중국 농산물 수입시장의 26.3%를 차지하여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2.7%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중 미국으로부터 수입은 67.2억 달러로 전년대비 12.5% 감소하였고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은 30.1억 달러로 전년대비 5.9%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고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은 11.5억 달러로 전년대비 20.4% 감소하였다.

#### 3.3. 무역방식별 동향

중국 농산물무역은 주로 일반무역방식 위주이며 수출액은 증가하고 수입액은 감소하였으며,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가공무역방식은 수출입모두 증가하였다.

2005년 일반무역방식의 수출은 209.4억 달러로 전년대비 18.5% 증가하였고 농산물 수출총액의 75.9%를 차지하였다.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는 가 공무역방식은 45.1억 달러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총액의 16.4%를 차지하였다. 변경지역 소액무역방식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대비 23.2% 증가하여 농산물 수출총액의 1.9%를 차지하였다.

2005년 일반무역방식의 수입은 202.0억 달러로 전년대비 2.2% 감소하였으며 농산물 수입총액의 70.4%를 차지하였다. 원료를 수입·가공하여 수출하기위한 원료수입액은 42.5억 달러로 전년대비 9.6% 증가하여 농산물 수입총액의 14.8%를 차지하였다. 변경무역 소액무역방식의 수입은 2억 달러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여 농산물 수입총액의 0.7%를 차지하였다.

### 중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출현황

단위 : 만달러

번호	품목	2004년(A)	2005년(B)	전년대비 (B/A)
1	산동물	33,025.5	32,877.1	-0.4
2	육 ,식용설육	56,209.6	54,839.4	-2.4
3	가금육 및 기타	14,484.8	19,442.4	34.2
4	수,해산물	405,997.1	435,020.2	7.1
5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동물산품	23,427.7	26,741.7	14.1
6	기타 동물성생산품	97,543.6	101,160.3	3.7
7	산수목, 꽃	6,433.0	7,710.7	19.9
8	식 용채 소	253,761.4	305,224.2	20.3
9	식용과일 및 견과류	91,653.8	106,717.6	16.4
10	커피 ,차 ,마태 ,향신료	86,472.4	92,748.2	7.3
11	곡물	74,046.3	141,245.5	90.8
12	제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17,026.2	19,999.1	17.5
13	油料, 공업용 또는 약용식물, 사료 등	119,596.2	138,326.7	15.7
14	검, 식물성 액기스 등	7,275.1	11,331.8	55.8
15	식물성편조용재료	4,347.1	4,925.2	13.3
16	동식물유지 및 그산품	15,832.0	28,400.2	79.4
17	육류제 품	89,015.9	117,954.3	32.5
18	수 산 물제 품	259,716.2	318,484.2	22.6
19	당류와 설탕과자	25,223.9	41,839.3	65.9
20	코코아 및 그제품	6,959.4	10,987.8	57.9
21	곡물, 곡물분, 전분, 베이커리제품	65,298.6	75,972.1	16.3
22	채소,과일,견과등 제품	257,834.3	309,492.6	20.0
23	각종 조제식료품	61,275.0	71,542.1	16.8
24	음료, 주류 및 식초	74,309.5	71,861.9	-3.3
25	식품공업 잔유물 및 조제사료 등	50,243.7	47,806.0	-4.9
26	연초 및 그제품	51,359.9	53,724.6	4.6
27	기타농산물	60,631.3	72,021.7	18.8
	합 계	2,308,999.5	2,718,396.9	17.7

주 : 중국 상무부 통계로서 농업부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음.

## 중국의 품목별 농산물 수입현황

단위 : 만달러

번호	품 목	2004년 (A)	2005년 (B)	전 년 대 비 (B/A)
1	산동물	21,991.0	10,890.5	-50.5
2	육 ,식용설육	32,207.4	25,230.4	-21.7
3	가금육 및 기타	15,371.4	33,441.2	117.6
4	수 , 해 산 물	234,047.2	287,901.1	23.0
5	낙농품 ,조란 ,천연꿀 ,기타 동물산품	44,807.7	46,236.2	3.2
6	기타 동물성생산품	24,920.4	22,142.8	-11.1
7	산수목, 꽃	5,138.1	6,867.6	33.7
8	식 용채 소	40,484.2	52,369.1	29.4
9	식용과일 및 견과류	61,873.8	65,747.7	6.3
10	커피 ,차 ,마태 ,향신료	3,240.6	4,165.7	28.5
11	곡 물	221,851.2	139,378.1	-37.2
12	제 분공업생산품 ,맥아 ,전분	18,908.7	18,573.1	-1.8
13	油料, 공업용 또는 약용식물, 사료 등	또는 약용식물, 사료 등 737,185.6 816,082.6		10.7
14	검, 식물성 액기스 등	5,859.9	6,290.8	7.4
15	식 물성 편 조 용 재 료	8,783.2	6,777.9	-22.8
16	동식물유지 및 그산품	420,882.6	331,073.7	-21.3
17	육 류 제 품	255.7	298.6	16.8
18	수 산 물 제 품	2,367.1	2,575.5	8.8
19	당류와 설탕과자	33,618.9	45,140.4	34.3
20	코코아 및 그제품	13,566.0	17,749.0	30.8
21	곡 물 , 곡 물 분 , 전 분 , 베 이 커 리 제 품	19,478.8	23,996.3	23.2
22	채소,과일,견과등 제품	14,199.5	15,657.2	10.3
23	각종 조제식료품	47,520.8	30,538.0	-35.7
24	음료, 주류 및 식초	26,107.9	40,955.8	56.9
25	식품공업 잔유물 및 조제사료 등	94,648.0	130,577.8	38.0
26	연초 및 그제품	29,200.9	38,380.9	31.4
27	기타농산물	618,775.2	645,723.5	4.4
	합 계	2,797,291.8	2,864,761.5	2.4

주 : 중국 상무부 통계로서 농업부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음.

자료:中國農業部

##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의 농업정책 개요

박 기 형\*

2006년 3월 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0기 전국정치협상회의 4차 회의와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양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양회'에서는 2005년 업무보고 및 제11차 5개년 계획(11.5)이 열띤 토론을 거쳐 결의되었다.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시되는 '11. 5'는 작년 말부터 제기되어 온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이기 때문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향후 5년간의 중국 농정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11.5의 주요 목표와 내용을 소개한다.

## 1. '11.5'의 농업 및 농촌경제 목표

## 2.1. 농업의 종합생산능력을 강화하고, 식량수급의 기본적인 균형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한다.

국가통계국의 예측에 따르면, 2003년 중국 국내 식량 총수요량은 4억 8,625만 톤이었다. 최근 몇 년의 실제 정황에 따르면, 국내 식량수요는 매년 350~450만 톤씩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해 볼 때, 11.5 말기까지의 국내 식량 수요증가분은 약 2,500만 톤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sup>\*</sup> 중국 길림대학 goodmanist@yahoo.co.kr +86-139-4306-2353

그렇다면 2010년까지의 기본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경지면적은 18억 무 (1억 2,000만 ha)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전제아래, 농지는 16억 무(1억 670만 ha) 이상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 중 식량작물 파종면적은 15.5억 무(1억 340만 ha)이하여서는 안 된다. 식량 총생산량은 5억 톤을 달성해야하며, 축산물, 유제품, 채소, 과일 등 생산량도 고르게 증가하여야 한다. 각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2.2. 농촌 잉여 노동력의 타산업과 도시로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회 총노동력 대비 농업 노동력의 비중은 매년 1%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인구 비중은 매년 1%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산업과 취업구조의 편차는 한층 더 조정 될 것이며, 도시화과정에서의 장기적 발전정체현상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2.3. 농민소득의 대폭적인 증대와 도농간 주민소득격차 확대추세를 전환한다.

농촌주민소득은 연간 5%이상 증대되고 있다. 이는 끊임없는 빈곤탈출 정책의 성과이며, 남은 빈곤층의 원바오(溫飽, 의식이 풍족한 생활)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또한 빈곤지역의 기본적인 생산생활조건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2.4. 농촌지역의 각종 사회사업을 가속화한다.

2010년까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중고등교육의 보급률을 더욱 높인다. 또한 2010년까지 전국 농촌지역 공공위생 서비스체계와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를 구축하여 농민 개개인 모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의료서비스 혜택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 그리하여 주요 건강지표가 개발도상국의 상위수준이 되도록 끌어올린다. 지역조건에 따라 농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농촌 사회양로보험제도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 2. '11.5'의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개요

도시와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도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농업생산발전, 여유로운 생활, 현대적인 농촌풍속, 농촌면모 개선, 민주적인 관리'등 제반 요구에 따른 신농촌건설을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다.

#### 2.1. 현대농업의 발전

농업생산력 발전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주요 임무로 견지하여, 농업구조의 전략적 조정, 농업성장방식의 전환, 농업 종합생산능력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농업의 기본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고히 한다.

#### 2.1.1. 농업 종합생산능력 제고

전반적인 식량자급을 견지하며, 식량생산의 안정적인 발전, 국가 식량안전 확보, 5억 톤 가량의 식량종합생산능력을 달성하도록 한다. 식량 주산지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단수, 품질, 생산효율 등을 제고하고, 식량주산지와 소비지의 상호 이익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기존 주생산지를 제외한 기타지역의 식량생산능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강력한 경지보호제도를 실시하여, 농지의 절대 규모 및 지력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 소형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농지를 개발하고, 대형 관개시설은 개조한다. 중저생산력의 농지는 개선작업을 가속화하고, 농지의 지력, 농업재해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한다.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및 전환능력을 제고한다. 새로운 국가농업과학기술기 지와 지역별 농업과학연구센터의 확충을 가속화한다. 농축수산물의 육종, 사 료사양, 전염병 방지, 자원절약, 오염정화 등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한 다. 슈퍼 교잡벼 등 우량 품종을 배양 보급한다. 또한 종자의 유전자 자원 보 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한다. 전통적 경작방식을 개혁하고, 농업표준화를 실시하여, 자원절약형 농업으로 의 발전을 모색한다. 농약, 비닐, 화학비용 등을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토양검사에 따른 과학적인 시비기술(맞춤시비, 균형시비, 저 질소시비,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 등)을 보급한다. 선진적이고 실용성을 갖춘 농기계 보급을 통해 기계화율을 높인다.

#### 2.1.2. 농업구조조정의 추진

식량, 면화, 식물유의 안정적인 증산을 보증하는 가운데, 사육사양산업의 비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농업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한다. 천연 목초지의 보호, 사료기지의 건설, 사육사양방식의 개선, 규모화집약화표준화 수준의 제고를 통해 목축업 및 낙농업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토지에 적합한 경제림 및 화분산업 발전을 유도한다. 휴어제, 금어제 등을 실시하여 어로활동을 조절하고, 수산양식과 수산물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높은 생산량, 우수한 품질, 높은 효과, 생태적,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농산물 구조를 고도화한다. 우수한 식량작물 전문 품종, 경제수익이 높은 경제작물, 식량절약형의 축산물,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한 신형 브랜드의 수산물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업입지의 지역별 최적화를 이룬다. 황회해(黃淮海)평원, 장강중하류평원, 동북평원의 식량종합생산능력을 제고한다. 지역 기후조건에 적합한 경제작물 재배단지를 건설하고, 또한 특색 있고 우수한 브랜드를 갖춘 희소한 열대작물재배단지를 건설한다. 농업전용지, 농축산 결합형 목축업단지를 개발하고, 남부 초지 구릉지역과 서남부 카르스트 지역의 초지목축업을 특화・발전시킨다. 전통목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회복・배양한다. 수자원부족지역에는 절수형 답작농업을 개발한다.

#### 2.1.3. 농업서비스체계 강화

농업기술보급, 농산물 품질 및 안전과 그 표준, 동물방역 및 식물보호, 인증

인가 등의 서비스체계를 완비한다. 농업정보자원의 통합을 통한 농촌경제정보 응용시스템 구축을 강화한다. 농업서비스조직의 혁신을 추진하고, 농민발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각종 경제협력조직의 개편을 장려하여, 농업조직화율을 제고한다.

#### 2.1.4. 농촌유통체계 구축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및 개선을 통해 농산물 품질의 등급화, 포장의 규격화를 촉진한다. '만촌천향 시장공정'(万村千剌市場工程)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급·수급 합작사 경영망의 개선과 도시 상업망의 농촌지역으로의 확장을 가속화한다. 또한 신선 농산물의 녹색통도(韓色通道)1)망을 구축한다. 또한 연쇄 경영방식을 통해서 농자재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한다.

#### 2.2. 농민소득 증대

#### 2.2.1. 농업소득증대의 잠재력 발굴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농업 연관 산업의 범위를 확장하여, 농민으로 하여금 농업의 산업적 범위 확장에 의한 더 많은 이익창출을 꾀하도록 한다. 농산물 가공, 신선도 관리, 저장, 운반 및 기타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추진한다. 농업산업화 경영발전을 지지하고, 산업 내 선도능력이 강한 주도기업을 육성하며, 기업과 농민이 공동으로이익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양식업과 원예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농산물 수출을 적극 장려한다. 또한 농촌관광산업을 개발・발전시킨다.

<sup>1)</sup> 농산물 녹색통도(神色通道)는 신선 농산물의 수송에 대해서 도로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며, 신선 농산물을 80~100% 적재한 차량에 대해 동식물검역증명서 혹은 신선 농산물 산지증명서를 소재한 경우 도로이용료를 면제해 준다.

#### 2.2.2. 농외소득의 증가

향진기업 체제의 혁신 및 구조조정을 통해, 향진기업을 일정 조건을 갖춘 향진 및 현단위 소재지로 집중시킨다. 현(群)단위 경제발전을 지지하며, 고용 규모가 큰 노동집약형 산업과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현(群)단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취업정보서비스체계를 완비하여 잉여 노동력의 비농업 및 도시지역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유도하고, 도시지역으로 진입하는 농민공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그들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한다.

### 2.2.3. 소득증대 및 감면 정책의 완비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보조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집행방식을 또한 개선한다. 농산물 가격의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농자재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농업지지 보호제도를 수립한다. 농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징수를 엄격히 관리하여, 문란한 징수행위를 근절시킨다.

#### 2.3. 농촌면모 개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정부의 유도와 농민들이 자발적인 참여하고, 지역에 적합한 정책의 실시를 통해 형식적이지 않은 실 질적 효과를 내도록 하여, 농민들의 생산생활조건을 개선한다.

#### 2.3.1. 농촌 기초시설 건설 강화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생산생활 시설의 건설을 추진한다. 농촌 음용수의 안전공정의 실시를 가속화한다. 농촌지역 도로포장 사업을 강화하여, 전국 대부분 향진 단위 지역에 대한 아스팔트(시멘트)포장을 실시한다. 동·중부지역은 각 촌과 연결되는 아스팔트(시멘트)포장 도로를 편제화하고, 서부지역은 각 촌과 연결되는 도로를 편제화하여, 농촌지역 도로보호체계를 완비하도록한다. 농촌지역 메탄가스, 바이오매스 에너지(짚), 소형 수력발전, 태양에너지등의 친환경에너지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지역의 전력망을 완비토록 한다. 우편 및 전신 일반서비스 기금을 조성하여 농촌정보망 사업을 강화하고 농촌의 우편, 전신분야의 발전을 꾀하여, 농촌마다 전화, 인터넷

서비스를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토지절약, 부대시설, 에너지절약, 환경 보호, 특색강조'라는 원칙에 따라, 향촌건설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며 지 역특색을 살린 주택 등의 건축물들이 건설되도록 한다.

#### 2.3.2. 농촌 환경보호의 강화

전국 토양오염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농약, 화학비료, 비닐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대규모 사육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촌쓰레기 및 하수오수에 대한 처리를 추진하여, 농촌의 환경 위생과 면모를 개선한다. 공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도시쓰레기, 기타 오염폐기물의 농촌진입을 차단한다.

#### 2.3.3. 농촌위생사업의 적극적인 발전

향진 단위의 위생원(보건소)을 중심으로 농촌 의료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농촌지역에 3급서비스 및 구조체계를 완비한다. 향촌 의료인원을 훈련시키고, 도시 의료진의 농촌 지원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농촌 약품공급망 및 관리감독망을 구축한다. 조류독감 등 가축과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질병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농촌 가족계획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지역 가족계획가정 장려보조제도 및 '저출산·고소득'(少生快富)사업을 실시한다.

#### 2.3.4. 농촌 사회보장 발전

농촌의 경제발전수준 및 기타 사회보장제도와 상응하는 농촌 양로보험제로를 수립한다. 새로운 농촌합작의료제도를 신설하고, 지역에 따라 농촌 최저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한다. 농촌 '우바오후'(五保戶)2)부양제도, 극빈가정보조, 재해민 구제 등의 사회구제체계를 완비한다.

<sup>2)</sup> 우바오후(五保戶)는 농촌지역에서 노동능력이 떨어지고, 무의탁 생활을 하며, 지자체로부터 5가지 종류의 기본생활조건에 대한 부양을 보장받는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 등의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며,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노인에 대한 의, 식, 주, 의료, 장례에 대한 보장, 고아에 대한 의, 식, 주, 의료, 교육에 대한 보장 등이며, 지역에 따라 주택보장 대신 연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 2.4. 신농민 육성

농촌교육, 기술훈련, 문화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기술을 습득하는 등 경영능력을 갖춘 신농민을 육성한다.

#### 2.4.1. 농촌의무교육의 가속화

농촌지역에 9년제 의무교육을 확대·보급한다. 농촌지역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한 학비 및 잡비를 면제하고, 특히 빈곤가정 학생에게는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며, 기숙사 생활비를 보조한다. '각급 부처의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공동분담, 재정투입의 확대, 보장수준의 제고, 개별조직에 의한 실시'원칙에 따라 농촌의무교육이 공공재정의 보장범위 안에 포함되는 농촌의무교육 경비보장체계를 구축한다. 농촌 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며, 중서부지역 농촌교사 50%에 대한 1회의 전문 연수를 실시한다. 도시지역 각단위의 농촌 지원을 장려하고, 도시지역 교사의 농촌 자원역량을 확대한다. 또한 농촌 초등중학교의 원거리교육(遠程發育)3)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2.4.2. 노동력 직능훈련 강화

신농민의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농민의 농사기술 및 과학기술 능력을 제고한다. 농촌 노동력 전이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노동력의 취업능력을 증대한다. 농촌 실용인재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기술력,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 및 과학기술인력을 배양한다.

#### 2.4.3. 농촌문화사업 발전

농촌문화시설의 확충하고, 라디오, TV방송, 영화 등의 보급을 확대한다. 문예 인력의 향촌유입을 유도하여 농민들의 정신적 문화수요를 충족시킨다. 농촌 여 가활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 농민들의 문화산업 개설을 장려한다. 농민 건 강체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문명농촌, 문명농가'(文明鄉凱, 文明戶)캠페인을

<sup>3)</sup> 원거리 교육(道程教育)은 교사 및 교육기관이 인터넷, TV방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 형태이다.

전개하여, 농민들의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도한다.

#### 2.5. 농업 및 농촌 재정투입 증대

'多지원·少징수' 방침에 따라 공업에 의한 농업지원, 도시에 의한 농촌지원을 이끄는 장기적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민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며, '기존 보유량의 적정수준으로의 조정, 증가분에 대해서는 편중'원칙에 따라, 국가 재정지출 및 예산 내 고정자산투자의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공공재정의 농촌 투입범위를 확대하고, 3농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은 전년 도보다 확대된 폭으로 집행한다. 새로 증가된 교육, 위생, 문화에 대한 재정지 출은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중앙과 지방 각 정부의 기초시설건설 역시 농업과 농촌이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의 농업지원투자 관리방식을 개혁하고, 농업지원투자체계의 통합을 통해, 자금사용효율을 제 고한다. 금융기관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소액대부를 통한 사회자금의 농업농촌으로의 유입을 유도한다.

#### 2.6. 농촌개혁의 심화

가정단위의 청부제 경영을 기초로 하는 통합·결합된 이중경영제도를 구축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지방은 '자발과 유상'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토지의 청부사용권 양도를 허용한다. 여러 형태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토지청부권의 양도와 관련된 중재서비스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농촌 세제개혁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며, 종합적인 농촌개혁을 실시하여, 향진기구, 농촌의무교육, 현향 단위의 재정관리체계 등에 대한 개혁업무를 완수한다. 농촌 금융체제의 개혁을 심화하고, 농촌에 적절한 특수 금융조직을 구성하고, 농촌신용합작사의 농업지원을 통해 농촌금융체계를 완비하도록 한다. 집체임업권제도의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토지수용제도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피징수자인 농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촌단위 집단경제조직의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농촌 기층조직의 건설을 대폭 추진하고, 촌단위 당조직 건설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촌민 자치조직과 기타 촌단위 조직의 건설을 함께 추진한다. 촌단위 조직활동 장소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촌 기층간부 배양을 강화한다. 공개행정 및 민주적 관리를 통해, 촌단위 당 조직 지도자의 역동적인 촌민자치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3. 사회주의 신농촌건설의 주요 공정

#### 3.1. 식량, 면화, 식물유의 대형생산기지 및 고품질 식량생산 산업공정

- 식량주산지에 대형 상품 식량생산기지를 집중 건설
- 고품질 면화, 식물유 생산기지 건설
- 13개 식량주산지역 484개 식량 주생산 현/장(縣/場)단위에 우량 품종 재배, 병충해 방제, 농기계화 등을 표준적으로 실시하는 1만 무(667ha) 규모의 표준화 경작지 건설

#### 3.2. 옥토공정

○ 증산의 잠재력이 높은 중·저 생산성 농지에 대하여 다른 유형의 흙비료 신기술을 투입하여 생산성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시범기지 건설.

#### 3.3. 식물보호 공정

- 현(시)단위의 기층 및 성급 단위의 중급 센터 구축
- 생태 및 생물에 대한 재해통제 시범기지, 농약안전성시험평가센터, 생물 기술(Bio Technology)시험 지역센터 설립

## 3.4. 대형 관개시설 지속적인 건설 및 개조 , 중부 4개성 대형 침수펌 프장 개조

○ 대형 관개시설의 지속적인 건설 및 절수형 개조사업

#### 54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 호남, 호북, 강서, 안휘 4개 성지역의 기존 침수퍾프장 정비사업

#### 3.5. 종자산업 및 우량종자 공정

- 농작물 품질별 종자데이터베이스 구축
- 농작물 개량센터 및 우량품종 육종기지 설립
- 축수산물 우량 품종 육종기지, 수산물 유전자육종센터, 유전자은행 및 검측센터 설립

#### 3.6. 동물방역체계

○ 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예측, 예방통제, 검역감독, 동물약 품질감독 및 잔류여부 감독통제, 방역기술, 방역장비 등 6대 부문 체계 확립

#### 3.7. 농산물 품질안전 검사검측체계

- 국가급 농산물 품질표준 제정
- 농산물 검사기술연구센터, 농산물 품질검사센터, 지역별 품질검사센터, 성급 농산물 품질 종합검사센터, 현급 농산물 품질 검사장 설립

#### 3.8. 농촌 음용수 안전

○ 고불소, 고비소, 고염수, 오염수, 흡혈충 질병지역, 미생물 표준초과 등 음용수 표준수질에 못 미치는 지역 및 음용수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농 촌주민 1억 명의 음용수 문제를 해결

#### 3.9. 농촌도로

○ 120만 km의 농촌도로 보수 및 건설하여, 구비조건을 갖춘 향진지역과 행정촌지역과를 연결

#### 3.10. 농촌 메탄가스

○ 가축사육장, 농가부엌, 화장실 개조 및 메탄가스 저장지 건설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농가 메탄가스 이용사업 및 일정 규모의 가축사육장(지역)

에 대한 중대형 메탄가스사업 실시

#### 3.11. 농촌 송전사업 및 친환경에너지 현(縣) 공정

- 50개 친환경에너지 시범 현(縣) 설치
- 전력망 연장, 풍력발전, 소형수력발전, 태양전지에너지 등을 통해 350만 호의 전력이용 보장

#### 3.12. 농촌 의료위생서비스 체계

○ 중·서부지역 향진 위생원(보건소)을 중심으로, 현단위 의원, 부녀아동 보호시설, 현급 중의원(민족의원) 설립

#### 3.13. 농촌 가족계획 서비스 체계

○ 중서부 지역에 대한 현, 향단위의 가족계획 기술서비스센터 설립을 중심 으로 하여, 현단위 서비스센터, 차량형 이동센터 등 설치

#### 3.14. 농촌 노동력 전이

- 농촌노동력의 기술훈련 강화
- 취업 및 권익보호 서비스 제공 능력 강화
- 법률, 취업정보, 취업지도, 직업소개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자료: 중국농업정보망(http://www.agri.gov.cn)

## 인도, 통상정책 및 농산물무역 동향

강 혜 정\*

인도 정부는 1991년 이후 꾸준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상품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고 최근 들어 인접지 역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최근까지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농산물 수출국이다. 인도의 주요 수출 농산물은 쌀, 대두 오일케이크 및 유박, 탈각 캐슈넛, 밀(메슬린), 냉동쇠고기, 사탕수수, 홍차기타와 부분발효차 등이며 주요 수입 농산물은 식용유지류와 콩류 등이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과 인도의 전체 교역액(55억 달러)에서 농산물 비중은 7.3%으로 현재까지 양국 농산물 교역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나 시간에 따라 인도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1. 인도의 최근 통상정책

인도는 1991년부터 개방경제정책을 도입한 이래 각종 수출진흥정책도입, 수입허가제 철폐, 수입수량제한 해제, 수입관세인하, 자유무역협정체결 등 통 상진흥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반면,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무역적자 축소 를 위해 W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긴 급관세 등 수입규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인도정부는 2002년 1월 제10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2-2007)의 추진과 연계하여 2007년까지 세계교역량의 1%, 연간 수출액 800억불, 이를 위해 향우 5년간 매년 12%의 수출증가율 달성 목표를 제시한 '중기수출전략' 발표에이어 동년 3월에 '2002~07 5개년 신수출입정책'(New Exim Policy)를 발표하였다. 2002년에 발표된 신수출입정책의 초점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촉진에 관한 것으로 농업분야 및 서비스분야 수출증대, 특별경제구역(SEZ), 수출촉진구역(EOU), 중소기업 수출전문단지, 전자하드웨어 기술단지등 수출촉진 단지의 개발육성 지원강화, 8단위 ITC(HS) 코드 사용 및 제도 간소화에 따른 수출입 거래시 비용과 시간의 절감,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관세인하 및 실제 루피 환전 환율 인정,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부과 계속, 영세산업(SSI) 수출능력 증대, 시장개발 프로그램,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8월31일 최근의 급변하고 있는 국제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어온 '수출입정책 5개년계획'(Exim Policy, 2002~07)을 보완하여 향후의 무역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NFTP: National Foreign Trade Policy, 2004~09)을 발표하였다. 농업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근교 및 농촌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출유망분야가 핵심 분야로 발굴되어 농업, 수공예, 수공의류, 보석류, 가죽, 신발류 등 6개 분야가 중점육성 대상 분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분야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대상 분야에 추가할 예정이다.

둘째, '수출우대도시'(TEE: Towns of Export Excellence)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요건은 현행 100억 루피(약 2.2억불) 생산액에서 25억 루피(약 5,500만 불) 생산액으로 축소되었다.

셋째, 과일, 채소, 화훼, 소규모 육림 및 이들 분야의 부가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특별농업생산제도'(Special Agricultural Produce Scheme)를 도입하여 농업분야에 필요한 자본제 수입시 자본재수출촉진제도(EPCG)에 의한 수입관

세를 완전 면제하고, '농촌수출구역'(AEZ: Agricultural Export Zone)내 자유설치를 허용하였다.

넷째, 농촌수출지역(AEZ)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개발 특별자금 (ASIDE)의 이용이 가능하며, 농업용 종자, 구근(bulbs), 괴경(tubers) 및 경작용 재료에 대한 완전 수입자유화와 함께 의료식물 및 약초류의 수출증대를 위한 시재(plant portions), 유도체(derivatives) 및 추출물의 수출이 자유화 된다.

## 2. 지역경제협력 현황

인도는 그동안의 개방화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역외국으로서의 불이익을 극복하고자 최근 들어 인접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협력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지역경제협력은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arde Agreement)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그리고 기타 지역협력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도는 FTA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특혜무역협정(PTA)<sup>1)</sup>을 FTA와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도와 PTA 협정을 맺은 국가는 1980년 방글라데시를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칠레와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까지 10개국이다. 현재 이집트와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와 PTA를 위해 협상 중에 있다. 2005년까지 인도가 FTA를 체결한국가 또는 국가군은 5개국으로 스리랑카 FTA가 2000년에 태국, 싱가포르와체결한 FTA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발효되었다. ASEAN과는 상품에 관한 FTA가 2006년에 발효할 예정이고 현재 투자, 서비스분야에 대해 협상중이다.

<sup>1)</sup>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는 회원국간 특정거래부문에 한 하여 특정한 형태의 혜택제공을 취지로 맺는 협정을 말한다.

	특혜무역협정(PTA)	자유무역협정(FTA)	기타 지역협력연합
주요 내용	특정국가 또는 특정상품에 대한 관세 우대	역내 무역자유화, 역외 독자적 관세주권	정치·경제적 고려에 따른 경제협력
기체결	방글라데시(1980) 네팔(1991) 부탄(1995) 미얀마(1995) SAPTA(1995) 아프카니스탄(2003) GCC(2004) MERCOSUR(2004) 칠레(2005) SACU(2005)	스리랑카(서명:1998/발효:2000) 태국(서명:2003/발효:2004) 싱가포르(서명:2003/발효:2005) SAFTA(서명:2004/발효:2006) ASEAN(서명:2005/발효(상품):2006)	방콕협정(1975) SAARC(1985) BIMST-EC(1997) IORARC(1997) BOBCOM(1999) IBSA(2004)
협상중	이집트, GSTP	BIMSTEC(합의:2004/종결:2017) 방글라데시(합의:2002/종결:미정)	
검토중 (공동 연구)	이란	중국, 한국, 일본, GCC, 모리셔스, 이집트, SACU	

- 주 : (1) SAPTA(South Asia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
  - (2)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3) GCC(The Gulf Cooperation Council)은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으로 구성됨.
  - (4)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페루, 가나,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쿠바, 볼리비아, 가이아나, 멕시코, 니카라과, 북한, 이라크, 짐바브웨, 베트남, 싱가포르,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파키스탄, 베닌, 아이티, 모잠비크, 수단으로 구성됨.
  - (5)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로 구성됨.
  - (6) BINST-EC(Bangladesh-India-Myanmar-Sri Lanka-Thailand-Economic Cooperation)은 2004년 7월 정상회의에서 BIMSTEC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7).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s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 (8) IORARC(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은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마다가스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오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예멘으로 구성됨.
  - (9) IBSA(Inida, Brazil, South Africa)
  - (10) BOBCOM(Bay of Bengal community)은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부탄으로 구성됨.

#### 2.1.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인도는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자국의 특수사정을 충족시키기에 미흡하다는 경제적 판단에 따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병행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껴왔다. 이러한 가운데,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한 지역 통합 움직임을 강화함에 따라 인도정부 또한 고립을 탈피하고 자국의 교역 및 투자증대, WTO 등 다자체제 협상에서 개도국과의 연대확보 등 측면에서 FTA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1.1. 기체결된 국가 또는 국가군(5개국)

#### (1) 스리랑카

1998년 12월20일 체결하여 2000년 3월 1일 발효하였다. 상품교역에 한해 단계적인 관세철폐협약으로 인도는 3년, 스리랑카는 8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한다. 투자 및 서비스확대를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다.

#### (2) 태국

2003년 10월 9일 기본협정에 서명을 하였고 2010년까지 양국간 상품교역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84개 품목에 대해서 2004년 MFN 실행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Scheme)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즉, 2004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28일까지 50%, 2005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75%, 2006년 3월 1일부터 100% (관세율 0%) 감축하기로 하였다. 현재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부문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 (3) 싱가포르

FTA를 포함한 포괄적인 경제협력체결(CECA)에 관한 협상으로 2005년 7월에 서명하였고, 2005년 8월에 발효한다. 인도는 협정 체결 후 싱가포르산 500여개 품목을 우선 관세 면제하고, 양국간 1300여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06

년부터 시작하여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 (4) ASEAN

2003년 10월8일 발리 제2차 인도-ASEAN 정상회의에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조기이행계획(Early Harvest Programme:EHP) 품목과 관련하여 ASEAN 6개국 (브루나이, 인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2004년 11월1일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07년 10월31일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반면 신규가입 ASEAN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04년 11월1일부터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10년 10월31일까지 관세철폐를 추진한다.

#### (5)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

서남아 7개국으로 구성된 SAFTA는 2004년 1월6일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2006년 1월1일 발효한다. 동 협정 발효 후 인도, 파키스탄은 관세를 7년내 0-5%로 삭감하고, 방글라데시 등 여타 국가들은 10년 내 동 수준으로 인하한다.

#### 2.1.2.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2개국)

## (1)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s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뱅골만 주변에 위치한 동남아 및 서남아 국가간 포괄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을 목표로 1994년 태국 주도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12월 제1차 방콕 각료회의에서 구체화 되었다. 2004년 2월 태국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FTA 기본협정 서명 및 네팔 및 부탄의 회원가입이 결정되어 회원국수가 총 7개국으로 되었으며 2004년 7월말 태국개최 회원국간 정상회의에서 FTA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17년까지 회원국간 자유무역지대 창설을목표로 한 FTA 협상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2) 방글라데시

2003년 7월에 다카에서 개최된 인도-방글라데시 공동경제협의회에서 FTA

추진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협의하였다. 인도는 방글라데시와 2003년 10월 및 2004년 1월에 2차에 걸친 협상을 갖고 FTA를 조기 체결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2.1.3.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또는 국가군

중국과 2003년 6월 공동연구그룹(JSG) 구성에 합의한 후 JSG 회의를 통해 FTA 추진 가능성을 포함한 경제협력 방안을 토의하고 있다. 2004년 10월 한국과 인도의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그룹(Joint Study Group) 결성에 합의하였고, 2006년 2월 6일 공식적인 양국의 CEP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2) 그 밖에 일본, GCC, 이집트, SACU, 모리셔스 등과 FT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무역확대 및 자유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3. 인도의 농산물 무역

### 3.1. 인도의 농산물 수출입 규모 및 변화

인도의 농산물 수출 규모는 2003년 65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608억 달러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다. 1991~2003년 기간에 농산물 수출은 2.3배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출 증가가 3.4배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따라서 국가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15.6%에서 2003년 10.7%로 감소하였다.

<sup>2)</sup> 우리나라가 인도와 추진하는 CEPA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 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합니다.

표 2 인도의 교역지표 비교

단위 : 억 달러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총수출액	178.7	209.9	305.4	346.2	359.2	452.5	607.9
농업수출액	28.0	33.6	54.9	56.6	46.4	52.3	65.0
비중(%)	(15.6)	(16.0)	(18.0)	(16.3)	(12.9)	(11.6)	(10.7)
총수입액	195.1	212.7	344.8	409.0	479.0	589.6	698.3
농업수입액	7.4	10.4	22.2	25.8	39.7	39.2	49.0
비중(%)	(3.8)	(4.9)	(6.4)	(6.3)	(8.3)	(6.7)	(7.0)
GDP대비 농산물 교역액	1.3	1.6	2.2	2.0	1.9	1.9	1.9

주 : GDP대비농산물 교역액 : (농업수출액+농업수입액)/GDP \* 100

자료 : 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FAO, Statistical Database(http://apps.fao.org)

인도의 농산물 수입 규모는 2003년 49억 달러로 1991년에 비해 6.4배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높아 같은 기간에 농업부문 무역수지는 흑자였다. 1991~95년 기간에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26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1997년부터 흑자정도는 감소하여 최근 3년간(2001~03) 연평균 12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인도는 농산물 무역 구조를 볼 때 최근까지는 수출초과(농산물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농산물 수출국으로 볼 수 있다. 2003년 GDP 대비 농산물 교역액은 1.9%이다.

### 3.2. 인도의 주요 수출 농산물

<표 3>에서 나타난 2001~03년 동안 인도 농산물의 대세계 최대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쌀(8억 7,775만 불), 대두 오일케이크 및 유박(3억 8927만 불), 탈각 캐슈넛(3억 8779만 불), 밀(메슬린)(3억5821만 불), 냉동쇠고기(2억 5369만 불), 사탕수수(2억 5018만 불), 홍차기타와 부분발효차(2억 2923만 불) 등은 2억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다.

3개년 최대수출액이 1억 이상 2억 이하인 품목은 3kg이하포장 홍차, 커피, 피마자유, 참깨, 로우커스트두, 잎담배(주맥제거), 양파(쪽파), 사탕수수당 이다. 5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나타낸 품목은 잎담배(주맥제거 않은 것),

표 3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출현황 (2001~03년간 5천만 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u> </u> 도의 대서	세계 수출역	<u> </u>
HS(6단위)	한글품명	최대 수출액	2001년	2002년	2003년
100630	쌀(정미)	877,752	604,242	877,476	877,752
230400	대두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389,273	384,063	363,186	389,273
080132	캐슈넛(탈각)	387,789	361,759	387,789	346,607
100190	밀(메슬린)	358,213	253,259	358,213	351,460
020230	쇠고기(버팔로)(냉동/뼈없는 것)	253,685	228,356	253,494	253,685
170199	사탕수수, 무당	250,182	217,391	250,182	241,494
090240	홍차기타(발효차)와 부분발효차	229,234	192,759	229,234	211,982
090230	홍차(발효차)와 부분발효차(3kg이하포장)	182,562	182,562	92,870	91,276
090111	커피(볶지않은 것/카페인미제거)	173,951	173,951	138,583	152,444
15153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141,385	141,385	104,774	105,877
120740	참깨	129,541	128,725	72,808	129,541
130232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116,830	90,163	91,660	116,830
240120	잎담배(주맥제거)	109,923	37,376	61,752	109,923
070310	양파, 쪽파(신선/냉장)	108,045	65,951	73,808	108,045
170111	사탕수수당(향미,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	102,857	102,857	28,056	75,006
240110	잎담배(주맥제거 않은 것)	91,419	87,013	91,419	45,913
210111	커피엑스 및 에센스와 농축물	87,463	87,463	60,742	67,789
100110	밀(듀우럼종)	84,209	17,970	3,258	84,209
130190	천연검	80,879	80,879	68,935	53,642
121190	향료, 의료용 식물	75,601	75,601	68,840	63,993
110100	밀 또는 메슬린 가루	70,865	40,360	54,024	70,865
080450	과아버, 맹고, 맹고스틴	69,721	18,470	18,576	69,721
081290	과일 및 견과류(일시저장처리)	65,235	55,841	65,235	20,676
120220	낙화생(탈각)	64,433	40,239	23,570	64,433
09042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57,583	42,356	51,375	57,583
071340	렌즈콩(건조)	51,424	51,424	42,543	31,727
170191	사탕수수, 무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50,796	1,245	3,435	50,796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커피엑스 및 에센스, 밀(듀우럼종), 천연검, 향료 및 의료용 식물, 밀 또는 메슬린 가루, 과아버 및 맹고, 일시저장처리한 과일 및 견과류, 낙화생, 건조 파쇄 고추류, 렌즈콩,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사탕수수 등이다.

쌀은 제일의 수출농산물로 3개년 동안(2001~03년) 그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1년 대비 2003년 쌀 수출액은 약 45% 증가하였다. 2001~03년 동안 홍차, 잎담배, 천연검, 렌즈콩 등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들의 수출액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수출구역'(AEZ: Agricultural Export Zone)의 설립에 힘입어 맹고와 맹고스틴의 수출액은 2001년에 비해 2003년에 약 277%로 크게 증가하였다.

#### 3.3. 인도의 주요 수입 농산물

2001~2003년 동안 인도의 대세계 최대 수입실적이 5천만 불 이상인 농산물은 <표 4>과 같다. 인도의 주요 수입 농산물은 식용유지류와 콩류이다. 팜유(조유)의경우 최대 수입액이 12억 4,429만 불에 달하고 그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다음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대두유(조유)로 3개년 최대 수입액은 5억 389만 불이다. 정제팜유, 면(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캐슈넛, 건채두류 등은 최대 2억 불 이상을 수입하였다. 인도인의 주요 단백질의 원료인 콩류와 식용 유지류는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매우 높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식용 유지류의 관세율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 4. 한·인도 농산물 교역 현황

#### 4.1. 한 · 인도 농산물 교역규모 및 변화

한국과 인도의 교역량은 인도의 수출 지향적 무역정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의 전체 교역액은 1995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2004년까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표 4 인도의 대세계 농산물 수입현황 (2001~03년간 5천만불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Ċ	인도의 대서	세계 수입약	4
HS(6단위)	한글품명	최대 수입액	2001년	2002년	2003년
151110	팜유(조유)	1,244,289	395,145	881,509	1,244,289
150710	대두유(조유)	503,892	368,645	364,887	503,892
151190	팜유(정제유)	374,131	374,131	87,253	356,458
520100	면(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366,522	366,522	271,474	350,739
080131	캐슈넛(미탈각)l	284,780	99,409	226,560	284,780
071390	건채두류	251,849	194,371	251,849	154,262
071310	완두(종자용 포함)	196,643	151,508	196,643	185,764
071320	이집트콩(종자용 포함)	151,945	151,945	105,872	83,032
500200	생사	149,596	113,263	149,596	132,395
150790	대두유(정제유)	122,978	75,835	122,978	105,000
510119	양모(그리지, 카드 또는 코움하지 않은 것)	83,705	60,206	81,220	83,705
510129	양모(카드, 코움, 탄화처리하지 않은 것)	78,298	58,966	74,195	78,298
071339	기타콩(종자용 포함)	66,572	20,305	46,403	66,572
071331	녹두(건조)	58,535	9,841	12,169	58,535
151800	동식물유지	57,401	57,401	20,758	7,814
151219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정제유)	56,508	56,508	21	1,226
080211	아몬드(미탈각)	55,145	40,394	40,476	55,145
151211	해바라기씨유, 잇꽃유(조유)	55,067	46,265	1,822	55,067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의 대인도 전체 수출은 2000년 13억 3천만 달러에서 2004년 36억 3천만 달러로 5년간 174%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한국의 대인도 전체 수입은 2000년 9억 8천만 달러에서 2004년 18억 5천만 달러로 88%가 성장하였다.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 5년간 3억 4천만 달러에서 17억 8천만 달러로 422%의 증가를 보였다 <표 5>.

한국과 인도의 농산물 교역규모는 2000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 수출은 2000년 424만 달러에서 2004년 528만달러로 5년간 25%의 증가를 보였다. 한국의 대인도 수입은 2000년 1억 3,500만 달러에서 2004년 3억 9,600만 달러로 약 193%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의대인도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5년간 1억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표 6>.

표 5 한국의 대인도 교역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00-'04)
수	출	46,867	112,581	132,617	140,773	138,414	285,295	363,198	174
수	입	48,485	79,830	98,471	110,563	124,891	123,275	184,998	88
무역	수지	-1,618	32,752	34,146	30,210	13,523	162,021	178,200	422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표 6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교역현황

단위: 만 달러

구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증가율 ('00-'04)
	농산물	96	163	414	426	527	583	501	2
	축산물	1	-	9	15	10	17	4	-6
수출	임산물	64	79	2	2	6	6	24	149
	총계	160	242	424	443	542	606	528	3
		(0.34)	(0.21)	(0.32)	(0.31)	(0.39)	(0.21)	(0.15)	
	농산물	4,249	10,765	12,485	16,693	19,049	14,471	38,519	21
	축산물	1	10	114	260	324	165	272	14
수입	임산물	555	1,156	890	769	939	964	776	-1
	총 계	4,804	11,932	13,490	17,722	20,312	15,600	39,567	19
	중세	(9.9)	(14.9)	(13.7)	(16.0)	(16.3)	(12.7)	(21.4)	
	농산물	-4,153	-10,603	-12,072	-16,267	-18,523	-13,887	-38,018	22
무역 수지	축산물		-	-105	-245	-315	-148	-268	16
	임산물	-492	-1,077	-889	-767	-933	-958	-753	-2
	총 계	-4,644	-11,680	-13,066	-17,280	-19,770	-14,994	-39,039	20

주:()는 농산물수출과 수입이 전체 상품 수출과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수산물 무역정보, 농수산물 유통공사(www.kati.net). 2004년 기준으로 양국 전체 교역액 (55억 달러)에서 농산물 비중은 7.3%이고 한국의 농산물 전체 교역액 (172억 달러)에서 양국 비중은 2.3%로 현재까지 양국 농산물 교역현황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0~04년 기간에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전체 상품 규모는 크게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0.32%에서 0.15%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반면,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수입이 전체 대인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04년 기간에 13.7%에서21.4%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인도의 농산물 교역은 현재까지는 미미한 상태이나한국의 인도 농산물의 수입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4.2. 한・인도 농산물 교역 현황

<표 7>는 2001~04년 한국의 대인도 농산물 수출현황과 해당품목의 인도 실행세율을 나타낸다. 4개년 동안 최고 수출실적이 4만 불 이상인 농산물은 채소종자(2003년 264만 불), 추잉껌(2003년 93만 불), 기타씨(2004년 64만 불) 등이다. 그 밖에 캔디류, 파이와 케이크, 무종자, 신선마늘, 인삼엑스 또는 분, 과즙음료, 조제식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이 인도로 수출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종자류와 식품가공품이다. 신선마늘이 2001년에 17만 불 수출된 적 이 있으나 그 후에는 실적이 없다.

한국이 수출하는 농산물 중 채소종자의 인도 실행관세율은 10.20%로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인삼엑스(분), 된장, 전분 등의 인도 실행세율은 52.2%이고, 케이크, 과즙음료, 난황, 조란, 배합사료 등의 실행세율은 30.6%이다. 그러나 신선마늘과 조제식료품기타의 실행세율은 각각 100%와 206.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이 인도부터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과 해당 품목의 한국 실행세율은 <표 8>과 같다. 2004년에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은 가장 높은 수입실적 인 2억 1,947만 불을 나타내었다. 2004년 대두유 오일케이크 및 유박의 대세

계로부터 수입액이 4억 1,920만 불이므로, 이 품목에 대한 전체 우리나라의 수입의 절반정도가 인도로부터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출현황 (2001~04년간 4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천 불

HSK 한글품명 인도 인도 (2001-2004년) 최고 2001 2002 2003	<u> </u>
(105/106)   조기   2001   2002   2003	
( 03/ 00)   수출액   2001   2002   2003	2004
1209919000 채소종자(기타) 10.20 2,643 2,643	1801
1704100000 추잉껌(당으로 도포 하였는지의 여부불문) 52.24 925 389 521 925	792
1207999000 기타씨 30.6 637 113 512	637
1704902090 캔디류기타 412 370 412 380	311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30.6 388 223 181 365	388
1302191120 인삼엑스분(백삼) 52.24032 205 68 125 67	
1209912000무 종자10.20204182	204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100 168 168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기타) 30.6 152 90	152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52.24032 147 147 57	83
1904101000 콘플레이크 52.24032 142 1 8	
2103901010 된장     52.24032 128     128	56
2309901099     배합사료기타     30.6     127     55     127     3	
2202902000     과즙음료     30.6     92     83     73     86	92
2106909099 조제식료품기타 206.48064 91 91 4 24	18
2103909030     혼합조미료     52.24032     88     59	88
2101201000 차, 마태조제품(설탕 대용물 함유) 52.24032 78 48	78
0404900000 유장기타 30.6 77 77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30.6 75 75	
1704902010 드롭프스 67 14 67 37	17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30.6 54 54	
1209911090 파속종자(기타) 10.20 53 53	
3501100000 카세인 40.37568 50 50	
1108110000 전분(밀의것) 52.24032 45 45 16 8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표 8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2001~04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입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HSK 한글품명 한국 실행세송 (**14세 **14) - 대인도(2001-2004) - 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14(14)	-		,	한국수입					
HSK   만달음병   연어하는   2004   수입력   3교치   2001   2002   2003   2004   2004   3교치   2001   2002   2003   2004   2004   3교치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4   2005   2004   2004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2005				대세계 대이도(2001-2004)					
2304000000 대투유의 추출시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1.8 419,197 219,473 83,511 111,038 65,035 219,47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328(2) 1,064,934 42,713 0 0 42,713 2306490000 유배씨의첫(기타/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1.8 164,733 34,478 34,478 26,887 16,581 28,655 1207400000 참에 630(40) 80,593 14,407 7,930 2,301 6,544 14,407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17031090000 사탕수수당밑(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이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첫세계의조산(오일케이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240109050 34,9mm미만의 것) 지적에부크산(오일케이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2501009050 기타민(심유길이 28,5mm이상 1 336,049 6,677 1,587 2,197 2,899 3,999 7,557 3301904800 추출을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페마자유와 그분회를 8 4,035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0 3,223 2401201000 및단배(황색종)주백제거) 20 63,711 2,464 1,126 1,060 2,002 전문 구이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률 및 디크너 모우거스트워프워프워스트워 씨로 등 4,631 2,002 746 1,226 1,060 2,002 전문 구의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률 및 디크너 모유의 기타의 씨로부터 얻은 점실률 및 디크너 인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6 1,164 1,114 2007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978 999000 개월건리(자리자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978 999000 가닐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4040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 39 780 999000 가닐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1040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 39 88 8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일의 주택 20 3,887 790 705 790 24054500000 유박기 드고프라켓(오일케이및 5 47,989 773 0 705 790 2405450000 기타식물(황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HSK	한글품명		2004		2001		Ì	
2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 1.8 419,197 219,473 83,311 111,038 63,033 219,473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328(2) 1,064,934 42,713			( = 1,7-7	2004	최고치	2001	2002	2003	2004
2306490000 유세시의것(기타/오일케익 및	2304000000		1.8	419,197	219,473	83,511	111,038	65,035	219,473
2006490000 유박) 0 47,106 41,120 20,21 26,576 41,120 1001909020 일(사료용) 1.8 164,733 34,478 34,478 26,887 16,581 28,655 1207400000 장깨 630(40) 80,593 14,407 7,930 2,301 6,544 14,407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1703109000 사탕수수당밀(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제(레이프 또는 골자)씨의 첫(저에라크산맛오웨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72 11,587 6,677 34,9mm미만의 첫) 1 336,049 6,677 1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추수(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패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0 3,223 2401201000 일단배(황색종/주백제거) 20 63,711 2,464 1,226 1,060 2,002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250301010 젤라틴 양공의기타의 서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1010 젤라틴 양공의기타의 서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1010 젤라틴 87,711 36 46,067 886 443 886 0 39 101110000 위의(복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1049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1005901000	옥수수(사료용)	328(2)	1,064,934	42,713			0	42,713
1207400000 참개 630(40) 80,593 14,407 7,930 2,301 6,544 14,407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1703109000 사탕수수당밀(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서에루고산(오일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520100905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1 336,049 6,677 11,587 6,677 34,9mm미만의 것) 1 336,049 6,677 1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세거) 20 63,711 2,464 1,407 2,464 1,407 2,464 1302320000 판수(기타)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세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세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센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9901110000 카피(볶지않은첫/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세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있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고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5 56 561	2306490000		0	47,106	41,120		20,251	26,576	41,120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1703109000 사탕수수당밀(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1001909020	밀(사료용)	1.8	164,733	34,478	34,478	26,887	16,581	28,655
1703109000 사탕수당밀(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채(레이프 또는 콜라)씨의 첫(저에루크산/오일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5201009050 기타면(섬유길이 28.5mm이상 34.9mm미만의 첫) 1 336,049 6,677 1,587 6,677 3301904800 추출을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백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커스트무/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점질물 및 디크너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0000 커피(볶지않은 첫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유박) 5 47,989 773 0 756 646 710 756 561	1207400000	참깨	630(40)	80,593	14,407	7,930	2,301	6,544	14,407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2306410000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의 것(저에루크산/오일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7 기타면(섬유길이 28.5mm이상 34.9mm미만의 것) 1 336,049 6,677 1,587 6,677 3301904800 추출을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 페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1302320000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결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점결물 및 디크너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괴(복지않은짓/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전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106109010 합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고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6 6 66 710 756 561	2207101000	조주정	10	38,787	11,846	11,846	3,130	0	0
2306410000 유채(테이프 또는 콜자)씨의 첫(저에루크산)오일케익및유박) 0 5,784 7,110 7,110 5,355 5,066 5201009050 기타면(섬유길이 28.5mm이상 34.9mm미만의 것) 1 336,049 6,677 1,587 6,677 3301904800 추출음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거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결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점결물 및 디크너 9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배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5 561 561	1703109000	사탕수수당밀(기타)	3	45,579	8,358	5,296	3,503	3,532	0
2306410000   전(저에루크산/오일케익및유박)   0   3,784   7,110   7,110   5,355   3,066     5201009050   기타면(섬유길이 28.5mm이상 34.9mm미만의 것)   1   336,049   6,677   1,587   6,677     3301904800   추출올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페마자유와 그분획基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2401201000   있답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커스트 무/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1302320000   캐슈넛(탈각)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첫/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일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306909000	기타(오일케익및유박)	5	9,224	7,557	2,197	2,899	3,099	7,557
34.9mm미만의 첫) 1 336,049 6,67 1,587 6,67/ 3301904800 추출올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전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인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5 790 230650000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306410000		0	5,784	7,110		7,110	5,355	5,066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2401201000   잎단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1302320000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226   1,060   2,002   746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5201009050		1	336,049	6,677			1,587	6,677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0 3,223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커스트무/루우커스트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사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3301904800	추출올레오레진(기타)	8	8,913	4,239	3,624	3,709	3,388	4,239
2401201000 일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로우커스트무/루우커스트의 씨 로우커스트무/루우커스트의 씨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점질물 및 디크너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가라(문교과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4,053	3,707	1,519	2,417	2,535	3,707
1302320000   로우커스트두/루우커스트의 씨	1007009000	수수(기타)	3	5,074	3,223			0	3,223
1302320000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2081320000   캐슈넛(탈각)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7999000   전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 땅콩의 기타의 씨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함으로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2401201000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63,711	2,464			1,407	2,464
2007999000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2008199000 전과. 땅콩의 기타의 서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약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1302320000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8	6,312	2,002	746	1,226	1,060	2,002
2008199000 전과. 땅콩외 기타의 세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건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0801320000	캐슈넛(탈각)	8	1,142	1,164	410	664	1,164	1,114
2008199000 씨류(조제저장처리) 45 17,671 1,043 229 409 1,043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007999000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30	4,674	1,125			1,125	24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008199000		45	17,671	1,043		229	409	1,043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유박)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3503001010	젤라틴	8	7,641	978	178	703	978	978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106109010 합유조제식료품)     기타(단백질합량이 48%이상 합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아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유박)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항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0901110000	커피(볶지않은것/카페인미제거)	2	83,443	949	318	494	228	7
2106109010 기타(단백질함량이 48%이상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45	28,825	916	50	50	916	175
2106109010     함유조제식료품)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유박)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0404900000	유장기타	36	46,067	886	443	886	0	39
2306500000 야자또는코프라의것(오일케익및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106109010	2 / N /	8	12,956	812	324	493	783	812
2306500000     유박)     5     47,989     773     0     773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2401301000	잎의 주맥	20	3,857	790			705	790
	2306500000	1 1 / 2 / 1 / 2 /	5	47,989	773			0	773
1302192000     캐슈넛쉘액     8     392     738     455     738     384     391	1211909090	기타식물(향료,의료용등)	8	30,300	756	646	710	756	561
	1302192000	캐슈넛쉘액	8	392	738	455	738	384	391

# 표 8 한국의 대인도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 <계속> (2001~04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

단위 : 천 불

	한글품명	한국 실행세율 ('04,%)	한국수입					
HSK			대세계			대인도(2001-2004)		
			2004	수입액 최고치	2001	2002	2003	2004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이하)	176(20)	8,714	685	685		0	0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처리)	30	3,007	630	572	630	355	381
1404909000	기타 식물성생산품	3	11,745	592	8	14	86	592
2106909099	조제식료품기타	8	187,180	581	401	562	274	581
0501000000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 세정 여부 불문)와 그 웨이스트	3	446	486	115	263	486	404
1302390000	식물성점질물기타	8	4,418	478	228	308	341	358
0404102130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49.5(20)	3,757	407	407	238	158	391
1516202090	기타식물성유지와그분획물	8	8,827	387	49	41	88	193
1302199099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8	32,245	383	67	63	110	383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27	834	371	162	367	83	203
5201009030	기타면(섬유길이 25.4mm이상 28.5mm미만의 것)	1	76663	323			0	323
1520000000	글리세롤(조상의것)	8	2665	307	307	299	0	0
1518001000	탈수 피마자유	8	298	264	14	29	167	264
1515909090	기타비휘발성 식물성유지	8	6885	262	30	64	119	262
2306300000	해바라기의것(오일케익및유박)	5	328	259			0	259
0910300000	심황(강황)	8	296	249	124	146	194	249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27	257	232	125	191	0	232
5203000000	면(카드또는코움한것)	1	940	229	54	150	229	22
3501100000	카세인	20	10727	214	16	95	0	0
1301101000	쉘락	3	338	204	186	128	149	183
2001100000	오이류(조제저장처리)	30	5491	192	192	165	173	102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50.6	7404	191		18	43	191
0910990000	향신료 기타	8	528	175	175	133	169	136
0602909090	산식물(기타)	8	14091	174		174	10	0
2302300000	박류(밀의것)	5	53815	171			0	171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8	10447	159			23	159
0408190000	난황(기타)	27	3149	156			0	156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부분발효차(3kg 이하포장)	40	1046	141	72	4	83	141

주 : ( )는 시장접근세율을 나타냄.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사료용 옥수수(2004년), 유채 오일 케잌 및 유박(2004년), 사료용 밀(2001년), 참깨(2004년), 조주정(2001년) 등은 천만 불 이상 5천만 불 미만의 수입액을 보이고 있다. 백만 불 이상 천만불이하의 수입실적을 가진 품목은 사탕수수 당밀, 기타 오일 케잌 및 유박, 유채씨 오일 케잌 및 유박, 면, 추출올레오레진,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수수, 잎담배, 로우커스트두, 캐슈넛 조제저장처리견과과실, 조제저장처리 견과 및 씨류이다.

이들 품목 중 유채씨 오일 케잌 및 유박,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캐슈넛 등은 거의 전량이 인도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커피, 조제저장처리 과실견과, 향료 또는 의료용 식물, 탈지분유, 일시저장처리 오이류, 변성유장, 난황, 홍차 등은 수입액은 크지 않으나 지난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이 있는 품목들이다. 참깨를 제외한 이런 사료용 농산물의 한국 실행세율과 시장접근세율은 5%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 EU,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 해제

김 정 섭\*

1996년에 내려졌던 영국산 쇠고기 상품과 생우에 대한 EU의 수출금지 조치(embargo)가 4월 하순쯤이면 해제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생우와 2005년 6월 15일 이후 생산된 쇠고기 상품에 한해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 3월 8일 EU의 '식품사슬 및 동물보건에 관한 상설위원회(the Steering Committee on the Food Chain and Animal Health)'는 영국의 생우와 쇠고기 상품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검토 기간인 6주가 지나면 EU 집행위원회가 그 제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는 1996년 3월에 단행되었다.

이는 그 당시 영국에서 우해면양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 BSE) 발병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 이번에 채택된 수출금지 조치 해제 의견은 EU 집행위원회가 2005년 7월에 채택한 '전염성해면양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이하 TSE) 로드맵'에 규정된 수출금지 조치 해제 관련 조건들을 충족해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그 규정에 따르면, BSE 발병이 일정 수준 이하에 머물러야 하며, EU 법규에 명시된 BSE 통제가 완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에만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이 EU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되고 최종적으로 공식 문헌을 통해 공표되면,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생우와 2005년 6월 15일 이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된다.

EU 집행위원회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총국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마르코스 키프리아누(Markos Kyprianou)는 "EU 집행위원회는 BSE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장 엄격한 모니터링과 통제 수단을 적용했었다. 영국산 쇠고기 수출 금지를 포함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에 소비자들을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필수적인 조치라는 판단을 했었기 때문이다. 이 조치 이후, 영국은 이전염병에 대응함에 있어 큰 진보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쇠고기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정상적인 교역을 재개해야만 한다."라고 논평했다.

영국산 소, 쇠고기, 관련 가공 상품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1996년 3월 이후 지속되어왔다(EU 집행위원회 결정 Commission Decision 96/239/EC). 1999년에는 그 금지조치가 개정되어, 뼈를 제거한 쇠고기와 그 가공 상품에 한해생산일자를 확인하고 명시하고 여타 부가적인 통제 수단을 의무화한 '일별수출 계획(Date-based Export Scheme, 이하 DBES)' 하에 수출이 가능했었다.

DBES에 따라 영국은 1996년 8월 1일 이후 출생한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가공 상품을 수출할 수 있었지만, 여기에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일련의 조건들이 부과되었다. 예를 들면, 해당 소가 6~30 월령이어야 하며, 이력추적이 가능해야 하며, 소의 전 생애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소의 어미소에서 BSE가 발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9 월령 이상의 소의 경우 반드시 뼈를 제거한 상품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사실상 DBES 하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영국산 쇠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되었다.

2005년 7월 EU 집행위원회의 'TSE 로드맵'이 공표된 이후, 영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돌기 시작했다. 이 로드맵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영국산 쇠고기 수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해제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아주 명확하게 설정했다. 첫째, 영국은 가축 100만마리 당 200건 이하 수준에서의 추정 BSE 발병 수준을 유지해야만 했다. 둘째, 'EU 식품 및 수의 사무국(EU Food and Veterinary Office, 이하 FVO)'이 영국에서의 BSE 통제 강화 및 EU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2004년 5월에 '유럽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영국에서의 BSE 발병이 100만 마리 당 200건 이하 수준에 머물 것이며 따라서 영국은이제 BSE 리스크가 높은 국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2005년 6월에는 FVO의 검사 결과, 영국에서의 BSE 통제 조치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EU 법규도 준수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 있다.이번 수출금지 조치 해제 제안은 유럽 의회로 송부될 것이다. 그리고 약 1달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수출금지 조치 해제에 관한 법률 문건을 EU가 채택하고 공표하고나면, 그 즉시 발효될 것이다.

자료: http://europa.eu.int/rapid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RAPID)

# EU, 유전자변형 작물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

김 정 섭\*

EU 집행위원회 산하 '연합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는 지난 2월 24일에 유전자 변형 작물과 종자의 허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유럽의 농업인들이 수확한 농작물 중에 '우발적으로' 포함될수 있는 유전자 변형 물질의 양을 얼마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EU 역내에서 향후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 입안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옥수수, 사탕무, 면화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 연구는 또한 유전자 변형 종자 허용치를 여러 가지로 설정하고 어느 수준에서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품목과 유전자 변형 품목을 함께 재배해도 괜찮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우발성'이란 현재의 영농활동 하에서 비의도적 이면서도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을 의미한다. 유전자 변형 물질과 그로부터 파 생된 상품에 대한 이력추적과 표시에 관한 EU의 현행 법규정은 유전자 변형 을 하지 않은 식품이나 사료 중 유전자 변형 물질의 우발적 함유량을 0.9%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치를 토대로 농업 부문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과 일반 작물의 공존을 허용하고 있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10-7339-2546

이번에 수행된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작물 생산에 있어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량을 0.9%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옥수수의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옥수수는 특히 인근 지역에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 풍속, 재배지의 규모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또한 유럽에서 생산되는 일반 종자 안에 유전자 변형 물질이 우발적으로 함유될 수 있는 양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2003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일반 작물 또는 유기농 작물이 유전자 변형 작물과 효과적인 수준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지침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이후로 많은 회원국들이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와 관련된 법안을 의결했다. EU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전자 변형 작물의 공존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더욱 확대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만들 전망이다.

자료: EU Commission

# 덴마크, 육류산업 관련단체 통합 추진

김 정 섭\*

덴마크 육류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연합하여 '덴마크 육류 협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통합 및 단일화는 덴마크 육류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육류 산업 부문의 3대 주요 조직(Danske Slagterier 덴마크 도축사업자 연합회, 덴마크 축산 및 육류 위원회 the Danish Livestock and Meat Board, 덴마크 가금류 위원회 the Danish Poultry Council)들이 통합되어 '덴마크 육류협회(Danish Meat Association)'로 재편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육, 계란 부문 산업의 활동들이 하나의 우산형 조직 안에서 통일적인 모습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 앞의 세 조직들이 일년 간 지출하는 예산 합계의 5%에 해당되는 약 210만 유로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육류 협회는 연구,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동, 자문 서비스, 일 반적 마케팅 등의 활동을 통해 육류 및 계란 산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 이다. 그리고 생산자들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관련 업체들의 경쟁력을 보호 하는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덴마크 육류 협회는 공식적으로는 이 번 4월 1일에 출범할 예정이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덴마크 육류협회의 경영 이사로 선임된 크리스티나 흐비드(Christina Hvid)는 "세 산업 조직들의 협력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 보다 잘 조율된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육류 및 계란 부문은 덴마크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주요 수출 분야이다. 이번 조직 통합 및 단일화는 이 부문이 덴마크 국내에서 그리고 국 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 (1) 덴마크 도축사업자 연합회는 도축업체, 대규모 양돈업체, 기타 양돈 관련 기업 및 조직들의 대표적인 산업 협력 단체이다.
- (2) 덴마크 축산 및 육류 위원회는 쇠고기 부문을 대표하는 산업 협력 단체이다. 여기에는 소 도축업체, 쇠고기 가공업체, 무역회사, 생산자를 대표하는 농민 단체인 'Danish Agriculture'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3) 덴마크 가금류 위원회는 가금육 및 계란 생산자, 도축업체, 관련 기업들을 대표하는 산업 협력 단체이다.
- (4) 덴마크 육류 협회는 앞의 세 단체들이 연합한 기술 및 관리 행정 센터로 서 1년 예산이 약 4,000만 유로에 달하며 직원 수는 385명이다.

자료: http://www.danskeslagterier.dk (덴마크 도축사업자 연합회)

# 주요 국가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

허 덕\*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목적은 가축 질병의 만연 방지를 위해 가축 1마리마다 소재정보 등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환축 발생시에 이동이력 등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식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속한 원인구명 및 회수라는 식품의 위기관리와 유통과정 투명화를 의도한 것이다.

최근에는 BSE 청정국에서도 건강이나 환경을 중시해 식품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생산·유통이력을 기록하고 유사한 위기관리 대책으로 대비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도입은 EU를 시작으로 하여 BSE의 피해를 계기로 광범위한 지역에 확대되고 있다. 각국들은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제화 등 확실한 제도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호주, 캐나다, EU 가맹국, 브라질, 태국 등 각국에 있어서 최신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실시 상황을 소개한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uhduk@krei.re.kr 02-3299-4261

# 1. 호주

#### 1.1. 개요

## 1.1.1. 목적 등

호주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로는 2005년 7월에 거의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전국 가축개체식별제도(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cheme: NLIS)가 있다.

NLIS는 농장식별번호(Property Identification Code: PIC)제도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특징은 개체식별용의 표지로서 마이크로칩을 심은 이표나 위내 알약(캅셀)형태의 전자 표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NLIS의 목적은 일본의 트레이스어빌리티법과 같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축 전염병이나 잔류농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NLIS로 트레이스 할 수 있는 범위는 생산현장에서부터 도축장까지이다. NLIS 도입경위나 내용에 대해 이하에 간단하게 살펴본다(자세한 것은 마지막의 종합 표들을 참조바람).

#### 1.1.2. NLIS 도입 경위

호주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어, 1960년대 PIC제도에서 시작된다. 호주에서는 1960년대부터 부루세라병이나 우결핵 등 질병예방 대책으로 소의 개체식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각 주 정부(준주를 포함)는 개개 농장을 고유의 8자리 숫자 번호로 식별하고, 소가 이동할 때는 출신 농장을 나타내는 표지로 한 마리마다 PIC가 기재되어 있는 테일 태그(tail-tag, 이표의 경우도 있음)의 장착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PIC제도를 통해 질병이나 농약잔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소를 사육하던 농장을 신속하게 특정하고, 바로 대책을 강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6년부터는 비록 임의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소를거래할 때 전국출하

자증명서(National Vender Declaration: NVD)를 출하자 측에서 매수인 측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출하자(사육자)가 자신이 사육한 소에 대해 사용금지 사료를 급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나 농약이나 동물용 의약품 잔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 안전성을 증명하였다.

이와 같이 호주에서는 NLIS 도입 이전에 PIC에 의한 소의 출신농장의 특정과 NVD에 의해 안전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져왔다. 그 후 EU로 수출하기 위한 전용 쇠고기 검사체제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NLIS 도입을 촉진하게 되었다.

EU는 1998년 호주검역검사국(AQIS)에 의한 종래의 검사체제와 테일 태그에 의한 관리 시스템으로는 안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U는 쇠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U 전용으로 수출하기 위한 육우 한 마리마다 생산농장까지 확실히 트레이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구축과, 유통이나 도축단계에서 EU 수출 전용을 위한 것 이외의 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는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여 호주 정부나 산업계는 EU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 NLIS 도입을 결정하였다.

세계 각국에서 BSE 등 질병 발생이 이어짐에 따라, EU 수출을 위한 전용이외의 소에 대해서도 NLIS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져, 2002년 빅토리아(VIC)주에서 NLIS가 최초로 의무화되었다. 이후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어 실시된주가 있기는 하지만, 차례차례 의무화가 진행되어 2005년 7월에는 북부 준주(NT)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의무화되었다. NT도 2007년 7월부터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내외적으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해외로부터의 생산이력 요구에 대한 대응이나 호주산 쇠고기나 유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유지·강화 등도 NLIS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 1.2. NLIS의 운용 등

#### 1.2.1. 관리 체제

NLIS는 농어임업성(DAFF), AQIS, 호주 가축·식육 생산자사업단(일명 호주축산공사 MLA), 호주 육우생산자 협의회(CCA), 호주 식육처리업자 협회(AMPC), 호주 곡물비육장 협회(ALFA)등의 정부나 업계 멤버로 구성된 '세이프 미트'가 관리운영 책임을 진다. 실제 운영은 상기 멤버의 대표로 구성된 NLIS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NLIS위원회는 NLIS 추진사업 계획수립이나 사업비 재원 확보, NLIS 인정업자(전자표지의 제조자, 컴퓨터 소프트업자 등)를 선정한다. 세이프 미트가 MLA에 위탁하여 NLIS위원회의실제 사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NLIS의 데이터베이스는 MLA가 관리하고있다.

#### 1.2.2. 표지의 종류

NLIS의 표지에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전자이표와 위내 캅셀(보울더래스)이 있다. 여기에 이표는 농장 내에서 출생한 소에 붙이는 생산자 이표(브리더태그(breeder-tag): 백색)와 다른 농장으로부터 구입한 이표 미장착 소에 붙이는 구입자 이표(포스트 브리더 태그(post breeder-tag): 오렌지색)의 2종류로 구별된다.

위내 캅셀을 사용한 경우는 마크가 붙은 통상 이표가 붙여진다. 그 이표에 도 전자이표와 동일하게 기재 된다.

이 표는 읽기 쉽고 또한 탈락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오른쪽 귀의 일정한 장소(귀를 옆으로 3분할하여 얼굴에 가까운 부분의 중심)에 장착한다. 비용 측면에서 이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1.3. 데이터 내용

NLIS는 종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PIC제도를 기반으로서 만들어졌다.

NLIS의 표지(전자이표나 위내 캅셀)에는 PIC제도에 링크 할 수 있도록 개개 소 번호와 그 소가 사육된 농장을 나타내는 PIC번호가 부여된다. 여기에 개개 소의 이동기록을 부가하여 생산농장에서 도축단계(지육)까지 전자적으로 소의 이동을 트레이스 가능토록 한 것이 NLIS이다.

이와 같이 NLIS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개개 소의 이동기록이 주이며, 안 전성에 관한 항목이나 생년월일 기재는 주가 아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NVD에 의해 증명된다. NLIS의 또 다른 용도로 다른 생산자가 농장에서 소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번식농가나 최종소유자가 도축장 등이 임의로 기록한 지육중량이나 육질등급 등의 지육 피드백 정보와 NLIS의 데이 터를 링크시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1.4. 특징

NLIS는 전자 표지를 채용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전자 표지를 채용한 이유는 MLA에서는 등록처리의 정확성과 스피드, 데이터베이스의 운용비용의 경감 그리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의 스피드에 큰 장점이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NLIS 데이터베이스 운용은 현재 6명만으로 수행되고 있다. 질병발생에 신속 대응한 예로 2003년 빅토리아주에서 탄저병이 발생했을 때, 동일농장에서 다른 소의 이동상황을 20분 이내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한다.

#### 1.5. 비용 부담

NLIS가 의무화됨에 따라 NLIS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랐다. 그러나 이 원칙에 의해 생산자의 이표 등 비용부담 문제가 장애가 되어 도입이 늦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표대금이나 이표를 읽는 기계비용 등에 보조를 하고 있다.

각 주의 이표대금 보조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빅토리아주: 1개 당 이표대금을 1.80호주 달러로 설정(보조액은 미공표)
- (2) 뉴사우스웨일즈주: 1개 당 이표대금을 2.60호주 달러로 설정(보조액은 미공표)
  - (3) 사우스 오스트렐리아주: 이표 1개 당 0.7호주 달러 보조
  - (4) 웨스트 오스트렐리아주: 이표 1개 당 1호주 달러 보조

연방정부는 2004년 10월에 열린 총선거의 공약으로, NLIS에 관해 2,000 만 호주 달러(약 180억원: 1호주 달러=900원)의 지원을 한다고 공표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는 2005년에 발표하였다. 우선적으로 NLIS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이나 운영경비로 충당하고, 그 외에 다른 용도는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지만, 개개 생산자가 구입하는 이표대금 보조에는 부정적이었다.

# 2. 캐나다

#### 2.1. 배경

캐나다에서는 현행 소 개체식별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도 개체식별이 이루어진 경험이 있다. 1920년대 이후 소에 대해서 연방 정부가 금속성 이표에 의한 개체관리가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1952년 구제역 발생 때 활용되었지만, 1985년에 이 제도는 일단 폐지되었다.

1993년에 영국에서 1987년에 도입한 육용 번식암소 1마리에서 BSE 발생이 확인되었다. 이 후 가축의 추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계기로 하여소에 대한 개체식별제도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도에 캐나다 정부는 본 제도의 관리주체인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을 통해 제도의실질적인 운영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로서 캐나다 소 개체식별 에이전시(CCIA)를 설립하였다. 이로서 캐나다의 소 산업부문에서 현재와 같은 소 개

체식별제도가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되었다.

## 2.2. 목적 및 법적 근거

#### 2.2.1. 목적

CCIA는 다음 해 1999년 임의형식의 소 개체식별제도를 개시하였다. 이 제도는 캐나다의 모든 소가 각자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가지고, 소 등의 등록 및 말소를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가축이 도축된 식육처리시설로부터 출생농장을 특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이 제도의주목적은 만일 국내에서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방역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2.2.2. 법적 근거

1993년 가축위생법 개정에 의해 '연방정부가 가축개체식별제도의 창설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후, 2000년 4월, 소(물소 포함)의 개체식별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 정한 가축위생규칙(Canada's Health of Animals Regulations)이 공포됨에 따라 이 제도가 의무화되었다. 이 규칙의 시행은 제1단계로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농장에서 이동하는 소에 대해 이표 장착이 의무화되고, 제2단계로 2001년 7월 1일 이후 수입소를 포함한 모든 소에 대해 이표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2002년 7월 1일에 이 규칙은 완전하게 실시되어, 소유하는 소에 이표 장착을 게을리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4,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현행 규칙에서는 대상 가축은 모든 소 및 양(이하, '가축'이라 함.)으로 하고 있다. 또한, 당초 이표장착에 대해 예외 규정이 마련되었던 공공목장, 공진회장, 시험연구소 및 수의진료소 등으로 이동하는 소에 대해서도 2005년 6월 29일의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표의 장착이 의무화되었다.

#### 2.3. 제도의 개요

# 2.3.1. 생산단계

이 규칙에 의해 가축의 생산자는 이표를 CCIA가 인정하는 판매업자 등에게 자체 부담으로 구입하고, 소유하는 가축이 출생농장에서 이동할 때까지동안에 장착해야 한다. 이표를 구입했을 때 생산자는 즉시 판매업자 등에게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고, 판매업자 등은 해당 생산자 정보 및 판매·배포한 이표번호 등을 CCIA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06년 7월이후에는 판매업자 등이 보고하여야 할 기한은 판매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등, 해당 보고의 신속성이 강화되었다. 동시에, 생산자에 대해서는 구입했지만 농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채로 처분한 이표에 대해서 CCIA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등, 개체식별번호의 관리 강화를 도모하였다.

생산자에게는 CCIA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지만, 소가 해당 농장 밖으로 이동한 때의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일, 이동사유 및 양도자의 이름과 주소 등에 관한 기록과 최저 5년간의 기록보관 유지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게되었다. CCIA가 관리하는 정보로부터 이러한 기록을 쫒아감으로써 가축의이동력 등의 추적이 가능해진다.

생산자가 소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CCIA의 '월령증명 웹사이트'(The Age Verification website)에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BSE에 관한 위생조건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이 소의 월령에 의해 다른 조건을 마련하는 것등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트가 만들어진 것이다. 즉, 2004년 12월에 관련된월령을 증명하기 위해 개체식별번호와 생년월일을 이 제도의 데이터베이스에추가한 프로그램이다. 이 사이트에서 생산자는 개체식별번호에 추가하여, 생년월일이나 출생집단의 출생시기, 가축 성별, 거세ㆍ출산 경험 유무 등에 대해서도 구분해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사이트가 완성되고 얼마 후인 2005년 3월 시점에서, 이 사이트에 등록된 소의 생년월일은 약 13,000건이었지만, 동년 9월 시점에서는 10만 건을 넘어, 캐나다 국내에 있어서 소의 월령증명에

의한 수출기대가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이표의 종류

본 제도 개시 당초 비용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CCIA는 9자리수의 바코드가 인쇄된 패널형태의 이표와 마이크로칩이 든 전자(RFID)이표 2종류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었다. 2007년 말까지 경과 조치가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바코드형태의 이표 사용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트레이스 백(trace-back)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2006년 9월 1일까지 모두 RFID 이표로이행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현재는 CCIA에 의해 7종류의 RFID 이표가 인정되고 있다. 이표는 떼어내 거나 교체부착하기 곤란하고, 부당한 수정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데 이터 상실이 방어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색은 앞으로 황색만으로 통일되지 만, 현 단계에서는 경과조치로 종래대로 백색의 이표도 사용 가능하다.

RFID 이표용 개체식별번호는 15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최초 3자리는 캐나다 국가코드 '124'이며, 나머지 12자리수는 해당 가축의 유일한 번호이다.

#### 2.3.2. 유통 단계

현행 규칙에서는 가축상, 시장 관계자 및 수송업자 등은 CCIA에 대해 가축의 이동에 관한 정보를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들 관계자는 거래하는 모든 가축에 이표가 장착되어 있음을 확인한 위에,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CCIA에 의해 인정된 이표를 장착하고 있지 않은 가축을 수송 또는 구입해서는 안된다.

이표가 탈락한 경우 생산자 및 이들 관계자는 새로운 이표를 장착하고, CCIA에 대해 해당 개체식별번호를 보고함과 동시에 이표를 분실한 가축에 관한 기록을 보관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수입 가축에 관해서는 수입자가, 해당 소가 생산한 국가를 이동하기 전 또는 캐나다에 도착한 후 즉시, 이표를 장착하여야 한다. 수입가축의 개체식별 번호는 해당 수입가축의 출생지를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분한 정보와 함께 수입 후 30일 이내에 CCIA에 보고하여야 한다.

# 2.3.3. 도축· 가공 단계

식육처리업자 및 렌더링업자 등은 도축·렌더링 처리한 가축의 개체식별번호 등을 기록한 후, 해당 번호를 도축일 등 해당 소에 관한 정보와 함께 도축후 30일 이내에 CCIA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식육처리시설로 수송하는 도중에 이표가 탈락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관리자가 도축 전에 해당 가축에 새로운 이표를 장착하여야 하고, 새로운 이표를 신청할 때에는 ① 분실한 이표번호(해당 소가 생애 2개 이상의 이표를 장착하고 있던 경우는 그들 모든 번호), ② 본 시설에 수송 전 해당 가축의 소유자, ③ 수송업자에 의한 증명 등등 비교적 상세하게 정해 놓은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이들 정보들을 CCIA에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축이 도축되었을 때 각 개체식별번호는 그 역할을 끝내게 되지만, 일단 개체 식별번호가 할당된 이후 20년간은 다른 가축에 같은 번호가 재차 할당할 수 없다.

도축처리시설 이후 소매업자 등을 통한 쇠고기 유통단계에 있어서 트레이스 백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가령 쇠고기 유통단계에서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도축처리시설이 보지하고 있는 도축 및 판매기록을 통해 트레이스 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소에 관한 추적 대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특정 소의 집단으로 소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가축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체를 처분한 농가나 렌더링업자 등은 사체가 반출된 농장의 명칭, 주소 및 반출일 등을 사체 처분 뒤 30일 이내에 CCIA에

보고하여야 한다.

#### 2.4. 본 제도의 관리 및 재정 지원

캐나다에서 소 개체식별제도는 1998년에 비영리단체로 설립된 CCIA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캐나다 육우생산자협회(CCA), 캐나다 가축마케팅협회, 캐나다 식육협의회 및 낙농산업 등을 포함한 동 국가에서 소 관련산업 모든 부문의 대표자로 성립되는 이사회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및 캐나다 농업농산식료성(AAFC)도 이 멤버의 일원으로 의결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에 출석 할 수 있다.

제도 개시 당초에는 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CCIA가 쇠고기산 업개발기금에서 자금을 거출하였다. 그 후, 시험·연구나 개발목적을 위해 사 용되는 추가적인 기금은 AAFC, CFIA 및 몇 몇 주정부나 민간의 산업단체 등 을 통해 승인되어 왔다.

CCIA는 본 제도의 관리운영에 충당하기 위해 생산자 등에게 판매된 모든 이표에 20센트를 징수하고 있다.

#### 2.5. 제도의 준수

농업농산식료행정금융벌칙법(Agriculture and Agri-Food 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Act)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이표장착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본 제도에 있어서 모든 가축에 개체식별이표가 장착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CFIA는 생산에서 식육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검사관을 파견 하고 있다.

# 3.6. 제도의 확충

현행 소 개체식별제도에 대해서는 향후 몇 가지의 구성요소를 새롭게 의무

화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CCIA는 생산자가 소의 생년월일 등에 관한 자발적으로 보고한 정보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재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생년월일에 대해서도 보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대상 가축을 확장할 예정이다. 동 국 정부는 현행 대상인 소, 물소, 양에 추가하여 돼지, 말, 염소에 대해서도 본 제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소의 부모에 대한 개체식별번호나 생산농장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CCIA는 생산자에 의한 다종·다양한 정보의 자발적인 보고를 촉진하기 위해 '월령증명 웹사이트'에 '부가가치 모 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시스템 운용능력의 새로운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가축의 트레이스 백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생산자와 가축을 관 련짓는 정보에 지리적 정보를 추가한 '농장식별'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동시에 착수하고 있다.

현재 CFIA는 가축 질병에 관한 조사를 위해 연간 약 2,000건의 트레이스 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 그 유효성은 90% 정도까지 향상되고 있다고 한다. 잠재적으로도 심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잠재된 가축 전염병의 신속한 억제 및 배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제도의 확충은 새로운시스템 개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있다.

#### 3. EU

## 3.1. EU 에 있어서의 쇠고기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의 확립

EU에서는 1980년대 이후 BSE, 구제역, 돼지콜레라, 축산물의 다이옥신 오염 등의 사건이 연속하여 발생하였다. 특히 1996년과 2000년 두 번에 걸친 BSE위기에 즈음하여 EU의 쇠고기 소비는 격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축질병 관리 및 식품안전성 확보의 관점에서 가축의 개체식별·이동 이력기록 철저와 식품 트레이스어빌리티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위치가 부여되었다.

1992년에는 소를 포함한 가축 증명 및 등록에 관한 지령(92/102/EEC)이 만들어졌다. 이에 의해 각 가맹국에 의한 농장 리스트 정비, 사육자에 의한 주관 당국에 사육상황(출생·사망·이동에 관한 두수, 이동 전 및 이동 후 장소, 일시) 보고 의무, 이표를 이용한 개체식별 의무가 규정되었다.

제1차 BSE 위기 후인 1997년에는 소 증명ㆍ등록 시스템 구축 및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표시에 관한 규칙(EC/820/97)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소 개체 식별에 관해서는 이동이력관리를 위한 패스포트 정비, 컴퓨터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졌다. 한편, 쇠고기(제품)가 되는 개체에, 관련 출생ㆍ사육ㆍ도축이 이루어진 가맹국명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개체식별번호 등 쇠고기와 소를 연계하는 정보 표시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 않았다. 더욱이 동 규칙에서는 각 가맹국에서의 의무적인 표시에 대해 2000년 1월 1일부터 개시토록 하였지만, 이 기한 전에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나라는 불과 3개국뿐이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각국의 보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00년 7월에는 1997년의 규칙(EC/820/97)을 폐지하고, 이에 대신하여 소의 증명·등록 시스템 구축과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표시에 관계하여 새로이 정리된 규칙(EC/1760/2000)이 발표되었다.

# 3.2. 현행 소의 증명·등록 시스템 및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표시 시스템에 대하여

# 3.2.1. 규칙(EC/1760/2000)의 목적

BSE 문제로 쇠고기·쇠고기제품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산·유통까지

## 3.2.2. 규칙의 주요 개요

#### 가, 소의 증명 및 등록(생산 단계)

# 1) 이표

199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소에는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이표를 양귀에 장착토록 하였는데, 생후 20일 이내 또는 출생농장을 떠나기 전에 장착을 하여야 한다. 장착된 이표는 이표 주관 당국의 허가 없이 떼거나 교체해서는 안된다.

#### 2)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각 가맹국의 주관 당국은 컴퓨터화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하여 운용해야 한다.

#### 3) 패스포트

주관 당국은 각각의 소에 대해 출생통지로부터 14일 이내(EU 구역 밖에서 수입된 소에게는 새로이 실시하는 개체식별통지 후 14일 이내)에 패스포트를 발행하여야 한다. 또한, 소의 이동에 즈음하여 항상 패스포트를 휴대하여야 한다.

소가 사망한 경우 사육자는 7일 이내에 주관 당국에 패스포트를 반환하여

야 한다. 도축장에 보낸 경우에는 도축장 관리자가 패스포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 4) 각농장에서의 등록부의 보관

소 사육자는 최신의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가 완전하게 운용되고 있는 경우는 소의 이동·출생·사망에 대한 정보를 날짜와 함께 3~7일 이내에 주관 당국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입수처, 개체식별 및 소유·이동·판매·도축한 소의 행선지에 관한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부의 보관기간은 최저 3년간이다.

#### 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표시(유통 및 소비 단계)

#### 1) 의무적 표시

2002년 1월 1일 이후 각 가맹국에서 쇠고기(제품)를 판매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소의 생산(출생)국명, 비육국명, 소와 쇠고기의 관련을 나타내는 코드번호(개체식별번호 등), 도축장의 소재 국명 및 승인번호, 식육 가공장 소재 국명 및 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쇠고기에 대해 출생국·비육국·도축국이 다른 경우 각각의 국명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 2) 자발적 표시

최고기(제품)를 판매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항목 이외의 항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가 이루어진 가맹국의 주관 당국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 다. 규칙의 준수를 위한 조치

유럽 위원회의 전문가는 각국의 주관 당국과 제휴하고, 각 가맹국이 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지에 대한 상황 검증 및 확인을 위한 현지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칙(EC/1082/2003)에서, 생산단계의 검사로 매년 농장에 있

는 소의 최저 10%를 검사(데이터베이스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는 5%)하고, 농장 선정에 있어서는 사육두수나 과거 질병발생 상황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각 국가의 주관 당국이 선정토록 하고 있다.

#### 3.3. 문제점 및 향후의 과제

EU 식품수의국(Food and Veterinary Office)은 2002년 EU 15개국을 대상으로 쇠고기의 트레이스어빌리티와 쇠고기 표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생산단계에서 농장에서의 기록이나 등록에 관한 의무규정에 대해서는 대개 적절히 운용되고 있지만, 도축 이후의 유통단계에 있어서 소의 이동이력이나 원산지를 일정 이상 확실히 트레이스하기 불가능한 경우를 많이볼 수 있었고, 의무적·자주적 표시 양 쪽 모두에서 규칙 불이행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은 각 가맹국이 행동계획을 작성하고, 점차 개선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유럽위원회는 2004년 4월 규칙(EC/1760/2000)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본 규칙의 실시가 BSE 발생에 의해 축소된 쇠고기 소비 회복에 큰역할을 하였다고 종합결론 짓고 있다. 그렇지만 원산국 표시가 지역주의로이어져, 역내의 자유로운 물류를 저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소비자에게 보증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원산국 표시에 대신하여 'EU산'이라고 표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는 유럽 회계검사관청(Court of Auditors)이 도축단계까지의 쇠고기 개체식별 데이터베이스 운용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이 중에는 데이터베이스 양식 등이 EU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가맹국간 데이터 교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역내·외에서 소의 이동에 걸리는 트레이스어빌리티가 보증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유럽위원회에 대해 규칙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위원회는, ① 통일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콘트롤에 대해

유럽의회에서 과거에 부정되었고, ②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은 각국의 책임이라는 등의 반론을 동시에 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1998년부터 소의 식별 미스, 사육자에 의한 등록부 갱신 지연, 개체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고 지연이나 미실시라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체의 전자식별 시스템 도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 1월 보고서에서는 시스템 개량은 진전되고 있지만, 도입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직과 관리 시스템 확립, 개체식별 방법으로 이표에서의 시각적인 확인의 필요성, 20일 이내의 이표장착 의무에 따라 송아지 위의 발육 관계로 삼키는 형태의 트랜스 폰더 도입이 까다롭다는 점, 회수율의낮은 묻는 형태의 트랜스 폰더는 푸드 체인에 이물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까다롭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3.4. 벨기에의 사례

#### 3.4.1. 이표

이표 및 이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가 기입된 출생신고 용지는 미리 농가에 송부된다. 이표는 생후 7일 이내 또는 농장을 떠나기 전까지 양쪽 귀에 장착한다.

#### 3.4.2. 패스포트

출생 후, 출생신고서에 패스포트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주관 당국에 송부(전화나 인터넷 전달도 가능)한다. 이 정보에 근거하여 주관 당국이 5일 이내에 패스포트를 발행한다. 패스포트 중 아랫부분이 농가보관용이며, 윗부분을 이동처(다른농가나 도축장)에 건네준다. 이동처가 농가일 경우는 받은 패스포트를 주관 당국에 송부하고, 새로운 패스포트(이동이력의 추가나 새로운 사육자 명 등이 들어간 것)를 발행해 준다. 이동처가 도축장일 경우는 도축장이 이를 주관 당국에 반환한다.

#### 그림 1 벨기에의 소 이표



- (1) 태어난 국명(알파벳 2문자)
- (2) 체크 디지트(1자리수)
- (3) 개체번호(8자리수: 최초 1자리수 또는 2자리수는 지역 표시)

그림 2 벨기에의 패스포트 기재내용



- (1) 개체 식별 번호(이표 번호)
- (2) 패스포트 발행일
- (3) 출생 농장
- (4) 이동이력(농장 번호 및 이동일)
- (5) 전사육자(농장 번호, 주소, 이름)
- (6) 생년월일
- (7) 모색
- (8) 성별
- (9) 품종(육용소·젖용 소· 교잡종)
- (10) 모친의 개체 식별 번호
- (11) 이동일

# 3.4.3. 지육단계에서의 개체 정보 전달

지육에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실(seal)을 첨부

그림 3 벨기에의 지육 실(seal)



# 4.4.4. 표시

그림 4 가게 앞에서의 부분고기의 표시 사례



- (1) 명칭(품종·부위)
- (2) 소비 기한
- (3) 제조자의 명칭 및 주소
- (4) 출생국
- (5) 비육한 국가
- (6) 도축한 국가
- (7) 가공한 국가
- (8) 소와 쇠고기 관련을 나타내는 코드번호(개체식별번호)

# 4. 브라질

## 4.1. 도입 경위, 개체식별 대상 범위 및 기한

브라질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제도는 2002년 1월 9일에 브라질 농무성 (MAPA)이 제정한 훈령제1호에서 시작된다. 이 시스템은 통칭 Sisbov(Sistema Brasileiro de Identificaro e Certificaro de Origem Bovina e Bubalina)라 불리며, 대상 가축은 소와 물소(이하 '소'라 함.)이다.

Sisbov가 도입된 경위는 '브라질 쇠고기의 최대 수출상대국인 EU 시장으로 부터 가축의 추적가능성(트레이스어빌리티)에 대해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APA 농목방역국(SDA), 브라질 농목연구공사(EMBRAPA), 브라질 전국농업연맹(CNA) 등을 중심으로 개체식별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이 훈령 제1호가 제정된 2002년 당초 MAPA는 Sisbov의 목적을 '동 국에서 생산 또는 수입된 모든 소의 개체식별, 개체등록 및 생산이력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소가 대상이며, 그등록 기한은 이하와 같다.
  - (1) EU로 수출하는 소를 생산하는 농장은 2002년 6월까지
  - (2) EU 이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소를 생산하는 농장은 2003년 12월까지
  - (3) 국내용 또는 구제역 청정지역 혹은 동 지위 인정을 신청 중인 지역에 소 재하는 생산 농장은 2005년 12월까지
  - (4) 그 외의 생산농장은 2007년 12월까지

그러나 2003년 12월 12일자 훈령 제17호에 의해, 상기(2)의 기한이 '2004년 3월 15일까지'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2005년 1월 21일자 훈령 제1호에 따라, 등록 의무는 '수출을 위한 전용 생산 농장'에 한정되어 있다.

2003년 12월 12일자 훈령 제88호에 의해, 도축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안에 MAPA의 전국데이터베이스(BND)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① 도입 당시: 40일간, ② 2004년 5월 31일 이후: 90일간, ③ 2004년 11월 30일 이후: 180일간, ④ 2005년 5월 31일 이후: 365일간 이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8일자훈령제77호에 의해 등록기간은 도축 전 최저 40일간으로 변경되었다. 이 후 2005년 10월 6일자 훈령제6호에 의해 수출을 위한 전용 생산농장에 유래하는 소의 도축허가가, ① BND에 최저 90일간 등록, ② 도축전 40일간은 동일 농장에서 사육, ③ EU를 위한 전용 도축의 경우 수출 직전 90일간은 수출 인정지역에서 사육하여야 한다는 점이 의무화되었다.

이처럼 과거부터의 여러 차례 변경된 이유는 ① 낙농장 및 수출하고 있지 않은 국내용 육용우 농장에 대해 장점이 없고, ② 개체식별장치의 공급이 따라오지 못했으며, ④ 수출 패커에 소를 반입한 뒤부터 도축까지의 대기 중에 개체식별을 하는 형식적인 방법을 배제하기 위한다는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 4.2. 개체 식별 및 등록,가축 식별서(DIA)의 발행

소의 개체식별 및 등록을 완료한 경우 DIA가 발행된다. 이에는 수출용으로 도축되는 경우 가축과 함께 이동할 필요서류로, ① Sisbov 번호(15자리수코드) 및 Sisbov 관리번호(9자리수 코드), ② Sisbov에 등록한 날, ③ 출생 장소 및 개체식별 장소의 주·군, ④ 품종, ⑤ 성별, ⑥ 인증기관명, ⑦ 출생연월, ⑧ 도축허가일, ⑨ 인증기관의 기술책임자 성명 등이 기록된다.

개체식별로부터 DIA 발행에 관련되는 수속은 이하와 같다.

- (1) 생산자가 Sisbov에 참가하기 위해 MAPA로부터 인정된 개체 등록·경력 증명 발행기관(이하 '인증 기관'이라고 함)에 신청을 실시
- (2) 인증기관이 MAPA에 식별두수와 생산자에 관한 전국 개인등록번호 (CPF)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신청

- (3) MAPA는 개체식별번호를 인증기관에 통지
- (4) 인증기관이 생산자명으로 이표 및 기타 식별 장치를 발주
- (5) 이표메이커는 이표의 식별장치를 납입. 이 때 생산농장 및 생산자에 관한 항목과 Sisbov번호 등을 이미 기입한 식별표 2부를 생산자에게 전달
- (6) 생산자는 식별표 2부의 공란부분(품종, 성별, 출생연월 등)을 기입하고, 식별표 1부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나머지의 1부를 보관
- 1(7) 인증기관은 농장의 개체식별상황을 검증한 후, 데이터를 자기의 시스템 및 BND에 등록
- (8) BND가 등록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인증기관은 DIA를 발행하여 생산자에게 전달

2002년 7월 31일자 훈령 제47호에 의해, 인증기관은 독자적인 시스템에서 상기의 DIA 항목 외로, ① 백신접종이나 치료 등 위생 조치력, ② 사육 방법, ③ 이동력 등의 데이터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 4.3. 개체 식별 번호의 이용

브라질에서 개체식별제도의 설립은 어디까지나 수출 시장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내 마켓으로부터의 요청이 아니다. 브라질 자체는 자국에는 BSE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isbov 번호 자체를 국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출을 위한 전용 쇠고기에 대해 개체식별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EU 수출을 위한 전용 쇠고기 컷트 및 곤포상자라벨표시 내에 수출 패커가 반입 시에 결정한 롯트번호가 기록되고 있다고한다. 이에 대해 MAPA나 인증기관 등에 확인해 보니, 브라질에서도 도축 시에 결정한 롯트 번호를 라벨 표시 내에 기재해 수출하고 있었다.

한 인증기관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서비스 일환으로서 인증기관 자체 시스템에 접속하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한다.

#### 4.4. 향후의 상황

Sisbov는 당초 상정되었던 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우여곡절을 겪어 왔기 때문에, 훈령만을 보더라도 불확실한 점이 많다. 이들 점에 대해 각 방면에 여러 군데 문의한 결과, MAPA에서는 '2006년 2월 또는 3월경에 Sisbov의 최종적인 개정안이 나온다고 하며, 현재의 불명확한 점들은 어디까지나 현행규정에 의한 해석이 차이이므로, 향후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Sisbov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향해 4년째를 맞고 있다.

# 5. 태국

#### 5.1. 태국의 축산 트레이스어빌리티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아세안제국에서는 BSE의 발생이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 또한 아세안제국 중에는 일본 등과 같이 소만을 다른 축종으로부터 독립시켜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외에 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물 등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아세안제국에는 대응이 곤란한 나라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태국은 선진적이라 할 수 있다. 축산물 중 브로일러가 수출 산업으로서 번성하여, 주요 수출시장인 EU와 일본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움직임에 앞서, 닭고기 수출기업이 HACCP의 취득을 진행시킴과 동시에 함께 트레이스어빌리티를 구축하여 대응해 왔다.

태국은 '세계의 부엌'으로 불리는 만큼,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이나 과일, 야채 등의 수출을 진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에 대해서도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행정조직을 설치하고, 트레이스어빌리티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축산물의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해서는 농업협동조합성 축산

개발국(DLD)의 국 규칙이 제정되어, 이에 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나 데이터 취급에 관해서는 조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 5.2.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조직 및 규칙

태국에서 트레이스어빌리티를 관할하는 정부조직은 농업협동조합성의 2002년 10월9일자성령에 의해 설립된 국가농산물식품기준국(ACFS: National Bureau of Agricultural Commodity and Food Standards)이다. 이 조직의 목적은 ① 태국 농산품의 품질을 국제 레벨로 끌어올리고, ② 국제시장에서 태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며, ③ 소비자를 위해 식품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검사시스템과 농산물 공정 거래방법의 개발을 수행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ACFS는 축산물에 관해서는 DLD, 수산물에 관해서는 수산국(DOF), 농산물에 관해서는 농업국(DOA)과의 제휴 하에 트레이스어빌리티를 구축하고 있다.

축산물의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해서는 DLD의 '2003년도 축산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축산국 규칙'에 의해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규정은 없고, 가이드 라인의 성격이 강하다. 규칙은 사료공장, 사육농장, 도축장 및 가공장에서 원료, 가공 및 제품에 관한 데이터의 기록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산단계,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의 데이터 전달에 대해서는 서류 작성에 의한 보존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다. 사료생산자, 사육업자, 도축업자 및 가공업자 각자가 데이터를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의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코드의 통일 기준 작성 등의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DLD에 의하면 국 규칙 하에서 개개의 닭고기 수출기업 등은 독자적인 트

레이스어빌리티를 운영하고 있어, 품목관리코드가 공장번호나 날짜 등의 순서가 기업마다에 차이가 나는 등, 전국적인 통일 시스템으로서 운영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하며, 그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 5.3. 태국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사례

태국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은 축산물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일부로 정비되었다. 여기에서는 현재 실제로 대처를 진행 중인 민간조직의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 5.3.1.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개시

수도 방콕 서쪽 나콤파톰현의 캄펜센 소 생산자조합(KU Kamphaengsaen Campus Beef Producer Cooperative Ltd)은 1993년 소 비육농가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현재 회원은 약 200명으로 1,200두가 비육소로 등록되어 있다. 동조합은 카세서트(농학의 의미)대학 구내에 있으며, 조합회원이 생산하는 비육소에 대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동조합은 그 지방에서 개발한 캄펜센 소를 중심으로 비육을 하여, 양판점 체인인 칼 풀이나 티스코 로터스 등에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다.

2000년경 태국이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후에 두 나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생산 쇠고기가 이들 수입 쇠고기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쇠고기의 이력을 관리하고, 안전 등을 소비자에게 어필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러한 점들이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 6.3.2.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의 구조

이 조합은 회원이 캄펜센 소의 번식농가 등에게 비육 송아지를 도입하고, 비육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비육조합에 등록하며, 이표를 소에 장착하여, 비육 완료 후에는 조합이 비육 소를 매입한 뒤, 도축·해체하여 양판점에 판매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하와 같다.

# 가. 이표 장착과 비육조합으로 송아지 등록

비육조합 회원은 비육용 송아지를 캄펜센 소의 번식농가나 낙농가 등에게 서 구입하여, 비육 후 조합에 판매한다는 것을 전제로 등록을 한다. 조합은 비육용 송아지가 조합이 정하는 체중 등 일정 조건에 합치되었는지를 확인하 고, 이표를 장착한다. 통상 비육용 송아지는 약 12개월령 정도로 체중은 250 ~300 kg 정도이다.

표 1 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규칙에서 관계자가 기록 하여야 할 데이터 항목

	기록하여야 할 데이터 항목						
관계자	원료조달관계	생산관계	판매관계				
•	원료구입처 정보(명칭, 주소) 원료정보(생산롯트, 반입검 사 기준 및 방법)	생산 롯트 정보	판매상대 또는 사양농장정 보(명칭, 주소), 판매사료정 보(명칭, 종류, 수량, 생산 연월일)				
사육 업자	도입가축에 관한 정보(도입 처의 이름, 주소, 종류, 품 종, 수령일, 월령, 수량, 사 육농가번호, 반입검사 방법 과 결과) 사료에 관한 정보(생산연월 일 구입사료: 생산자명, 전 화번호, 생산롯트, 생산연 월일 자가배합: 월료구입처, 배 합성분, 생산롯트	사료급여정보(급여량, 급여일, 가축관리번호, 사료 롯트 물 사용정보(수원지, 품질, 정화방법, 검사소이 검사 결과) 사용약물정보(상표, 일반명 칭, 생산자, 판매자, 생산연 월일, 유효기간, 생산롯트) 치료(차료약이 사용일시, 사용법, 사용량, 사용기간, 투약정지기간, 소비가능일)	도축으로 반송전 검사샘플 정보(채취일, 검사결과) 가축판매정보				
도축 업자	생산농장정보(명칭, 주소) 용기와 기타 자재정보(제조 처, 안전성)	생산롯트 정보	식육구입자 정보(명칭, 주소) 판매식육정보(명칭, 종류, 수량, 생산롯트, 생산 연월일)				
가공 업자	원료식육의 수송업자 및 조 축장 정보(명칭, 주소, 식육 생산롯트)	생산롯트 정보	식육구입자 정보(명칭, 주소) 판매제품정보(명칭, 종류, 수량, 생산롲트, 생산 연월일)				

#### 나. 이표 번호와 코드

이표 번호는 9자리수이다. 코드는 왼쪽에서부터 2자리 수 씩 8자리 수 까지가 등록연도(불년: 불교식 연도), 등록월, 등록일, 농장에서의 소 번호를 각각나타내며, 그 후에 A(캄펜센 소)또는 B(기타 소)의 기호를 붙인다. 색에 대한지정은 하지 않는다.

#### 다. 개체식별 데이터베이스

조합은 등록된 소의 개체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관리한다. 데이터 항목은 이표번호, 소유자, 품종, 성별, 등록일, 체중, 앞니의 개수 등이다.

#### 라. 비육

비육은 약 8개월 정도 이루어지며, 520~550 kg까지 성장한다. 그 동안 비육농가는 비육조합이 정한 매뉴얼에 따라 비육하여, 조합으로 출하하기 일정기한 전까지 구제역(FMD) 백신접종이나 체내 기생충 구제 그리고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드문 거세 등을 하고 있다. 사료에 관해서는 조합이 지정한 농후사료를 사용하거나 또는 조합에 배합사료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마. 도축장에서 판매점까지

출하 소에 대한 도축은 조합운영 도축장에서 이루어진다. 처리된 쇠고기는 약 1주일 정도 에이징(aging) 기간을 거쳐 분할, 뼈가 붙은 포션 컷트(portion cut) 상태로 소매점에 판매된다. 이 때 컷트의 진공 팩에는 도축장에서 지육 번호, 부위명, 중량, 도축시기, 상미기한을 기재한 실(seal)이 첨부된다.

#### 바. 가게에서의 표시

일부 컷트를 구입한 판매점은 구입한 고기의 데이터를 가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입력하고, 고기를 컷트 함과 동시에 입력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 매판매용 실을 작성하여 팩에 첨부한다. 실에는 상품명 외에 품목코드, 중량, 가격, 브랜드 마크, 상미기한 등이 기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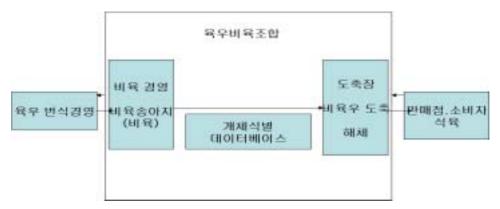


그림 5 캄펜센 소 생산자조합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모식도

#### 사. 지금까지의 클레임

조합에 확인해 본 바, 판매점 단계에서 고기에 타박상 흔적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 농가가 조합으로 출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기록부터 농가를 특정해 개선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양판점인 칼 풀과 티스코 로터스도 신 선식품에 대한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채용이나 배송센터에서의 검사실시 를 홈 페이지 상에 공표하고 있다.

#### 5.3.3. 일본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과의 비교

일본의 소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에서는 소 생산에서 유통 · 소비에 이르 기까지 일관된 개체식별번호에 의해 추적되며, 개체식별 데이터베이스가 그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태국의 예에서는 비육우 생산조합이 비육용 송 아지 단계에서부터 도축 그리고 판매단계까지 거의 모든 단계에 걸쳐 개체식 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나 소비자단계에서 문제 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합이 일원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전국 베이스의 트레 이스어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소에서는 번식, 비육, 도축, 판매 와 소비가 각자 독립된 단계가 됨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태국 에서도 일본이나 EU에서 채용하고 있는 전국 베이스의 개체식별 데이터베이 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표 2 각국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비교표-트레이스어빌리티 법 전체

<u> </u>		네이스이	걸니디	시스템 미교표-트레이스	기월디디 립 전제 
			1	트레이스어빌리티 법 전체	
국가	법제화	대상가축	대상자	이표 등의 규격	장착시기
일본	2003년6월, 소개체식별을위한정보 관리및전달에관한특별 조치법	모든 소	관리자,도 축업자,판 매업자,특 정요리제공 업자	10자리 개체식별번호를 그 숫자와 바코드에 의해 표기. 생산농가가 소의 양족 귀에 장착	출생시, 수입시
호주	국내:2005년7월, 각 주의 법률로 전자표식을 이용 한 전국가축개체식별시 스템(NLIS)의무화 수출: 연방정부 '수출규 격법'- EU 수출용	원칙적으로 모 든 소	소생산자, 판매업자, 피드롯,가 축시장,도 축장 등,	표식에는 원칙적으로 전자이표,위내캅셀(루멘보울더레스),가 있음. 이표에는 두가지 번호가 있음. 눈으로 식별할수있도록 이표 앞에 표기하는 번호 와 내장된 마이크로칩이 달린 번호임. ·가시표시번호(15자리-16자리) 내역:8자리:농장식별번호(PIC번호) 1자리(영문):표 식제조업자식별번호. 1자리(영문):표식의 종류 1자리(영문):표식의 제조연도 4자리-5자리(영문):개체번호 ·내장반호:전자반호(15자리) 내역 3자리:표식제조업자식별번호 12자리:개체번호 위내 캅셀을 사용하는 경우 이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붙은 통상의 이표를 장착함.	목장이동(출하)시
캐나다	가축위생법(Health of Ani mal Act) 및 가축위생규 칙(Health of Animals Reg ulations)의 일부개정에 의해 소에 대한 제도를 의무화(2000년4월부터 시행)	모든 소 및 양	가축관리자 및 도축업 자 등	황색 RFID이표로, 개체식별번호는 12자리(중전 9 자리바코드 달린 파넬형 이표도 경과조치로 인정 하고 있음)	해당가축이 출생 후 해당농장 밖 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장착     수입가축은 동 국에 도착 후 바로 장착
EU	2000년7월, 소 증명과 등록시스템 형성 및 우육·우육제품의 표시에 관한 구주의회 및 구주이사회 규칙(EC/1760/2000)	모든 소	가축사육자 (keeper),도 축업자,판 매업자(단, 단순한 수 송업자는 제외)	· 이표 표시내용·2의'테이터항목'란 참조 재료·유연성있는 플라스틱(변경할 수 없고 읽기 쉬운 것·제사용 불가) 형식·세로 45밀리이상, 가로 35밀리이상, 두께 5밀 리이내 · 패스포트 서식에 관한 규정 없음. (기재항목에 대해서는 2의'테이터항목'참조	・이표 이표의 장착은 생후 20일 이내, 출 생농장을 떠나기 전, EU 역외로부 터 수입된 소도 수입국내에서 검역 후 20일 이내에 도축되는 경우를 제 외하고, 이표에 의한 개체식별 실시 ·패스포트 각각의 소에 대하여 주관당국은 출 생통지부터 14일 이내(EU 역외로부 터 수입되는 소는 새로이 실시하는 개체식별 통지 후 14일이내) 발행
브라질	농무성훈령제1호(2002년 1월9일자) (우육수출 상대국인 EU 시장 요구를 고려)	당초 모든 소 (물소 포함)의 Sisbov(소 개체 식별제도)에 가입이 의무화 되었지만, 2005 년1월21일자 훈령제 1호용 생산농장에서 사육되는 소로 바뀜)	장, 개체등 록·경력증 명발행기관 (이하'인정 기관',수출	2004년4월2일부 훈련제21호에 의하면 이표에는 1 번위부터 다음의 것을 인자 (1)SISBOV문자 (2)15자리코드-(가)최초3자리는 출생국,(나)다음 2 자리는 출생주,(다)다음9자리는 개체식별번호, (라)최후의1자리는 에러검출코드 (3)바코드 (4)SISBOV관리번호인 6자리 큰 숫자(15자리증9-1 석번제일 것) · 이표는 황색(단, 수입우는 백색)으로 크기는 55 mm×66mm. · 이표에는 이외에 메이커식별,제조연월일이 요 철로 표시됨. · 개체등록· 경력증명발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을 표시하는 관리번호나 로고 등은 이표에는 업요은	도축하가에는 Sisbov에 등록한 증명 서가 필요하며, 하가서 발행에는 '농업성에 등록된 후 일정기간'이 필요함. 이 기간은 과거 자주 변경 되었지만, 현재에는 2005년10월6일 자훈령제6호에 의해(가)권국테이터 베이스(BND)에 최저 90일간이 등 록, (나)도축전40일간은 동일농장에 서 사육, (다)문민수출용 도축의 경우 이전 90일간 수출지정지역에서 사 워 의무 결론적으로 최저등록일수가 지켜 지면 되고, 특히 장착기간 규정은 없음.

#### 표 3 각국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비교표-생산단계

		2. 생산단계		
 국가	전달방법	데이터항목	보고자	시스템관리자에 보고내용
일본	소의 두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인쇄된 이표를 장착(탈착금지)	개체식별번호,생년월일소의 종류,성 별,모친의 개체식별번호,사육지,수입 연월일,수입국명,양도에 관한 정보 등	관리자,수입업자,도축자	출생(생년월일) 성별 모친의 개체식별번호, 소의 종류),수업위(수업연월일, 성별,수업 국명소의 종류),양도등(개체식별번호,연 월일,양도상대),양수등(동일),도축연월일, 사망,수출
호주	전자이표, 위내캅셀 이동후 48시간이내에 보고	농장식별번호(PIC), 시장, 도축장으로 의 이동기록 등 생년월일 기재 않음.	원칙적으로 하수측(가축시 장,피드롯,도축장,생체수출 업자등)이 NLLS데이터베이 스에 보고 의무, 동일 소유자가 다른 농장(PI C)간을 소가 이동하는 경우 그 소유자가 보고 의무	· 출하된 곳의 농장식별번호(PIC) · 출하한 곳의 농장식별번호(PIC) · 개개 소의 NLIS번호 · 화물운송장(Waybill)의 시리얼번호 · 도착일, 판매일 · 기타 가축시장시장의 PIC 피드롯·피드롯의 PIC 도축장·도축 또는 지육번호,도축일,도축 장인증번호(PIC)
캐나다	가축의 귀에 개체식별번호 입력 및 기재된 RFID이표 장착(탈착 및 교체 금지)	·개체식별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의 출생 농장 관리자 정보	이표판매자 등	이표판매자는 이표 판매후 24시간 이내에 판매·배포한 이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 호와 해당이표구입자 성명, 주소, 전화번 호를 CCIA에 보고
EU	· 이표 양쪽 귀에 같은 이표 장착, 탈착은 주 관기판 허가없이는 불가 · 패스포트 가축이동시 주관당국이 발행한 패스 포트 휴대를 의무화	(규칙 BC/911/2004에 규정) ・이표 출산국명(알파벳2문자),숫자12자리이 내(예:프랑스의 경우 숫자 10자리중 최 조 1자리는 헌번호그 의8자리는 개체 번호벨기에의 경우 숫자 9자리증 최 초 1자리가 체크디짓트 숫자,이의의 8 자리는 개체번호(최초 1·2자리는 지역 을 표시) ・패스포트 개체식별번호,생년월일,성별,품종또는 모색,모친의 개체식별번호,출생농장번 호,이동일 및 이동차 농장번호,신청자 의 농장번호(또는 농장명),사양자 사 인,발행기관명,발행일	수송업자를 제외한 모든 가 축사양자(keeper),최신등록 부를 유지관리할 필요. 컴퓨 터D/B가 완전히 운용되는 경우 소의 이동·출생·사 명에 대해서는 일자와 다불 어 3.7일 이내에 주관당국에 보고 의무. 주관당국은 요청 에 응하여 입수처개체식물 및소유·이동·판매·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록부 보지기간은 최저 3년간	(2(나)패스포트 사항과 같음.
브라질	2004년4월2일자훈령제21호에 의해 2 중의 식별장치가 필요. (1)규정된 이표를 우측 귀에 장착함은 공통 (2)다른 하나는 이하에서 선택- 좌축 귀에 보턴상태의 식별장치(26-36mm)또는 청색문신 - 우축 후지 규정부위에 낙인 - 천자칩. 전차집 이외는 Sisbov관리 번호 6자리 숫자를 이외는 Sisbov관리 번호 6자리 숫자를 가한 것 (4)제조메이커식별을 요철입체로 표시할 것 (5)뒷면에 제조연월일을 요철입체로 표시할 것 · 소이표등 식별장치(와 같이 가축식별번호(DIA)가 이동하는데, 이는 BND에 등록한 후 인증기관이발행함. 가축이동하나(GTA)청구발행시에 DIA가 요구되며, 이두가지 서류는 소와 함께 이동 도축된 가축의 DIA와 GTA는 SIF(연방검사서비스)에 최저 1년은 보관된	이묘자체에의 기록사항은 전자와 동일 · DIA에 기재되는 사항은 2004년4월2 일자 훈령21호를 기준으로 MAPA에 서 확인한 위에 아래와 같음. · SISBOV번호(15자리코드)(바코드도 필요) · SISBOV관리번호(9자리코드) · SISBOV한 등록한 날자 · 원산국 · 출생장소(주·군) - 개체식별한 장소(주·군) - 품종 - 성별 · 인증기관명 - 농무성 로고마크 - 출생연월(일) - 도촉하가일 · 인증기관 기술책임자명 및 그 CRMV (지역수의심의회)등록번호 · 수출패커가 BND에 대해 등록한 사항은 2002년7월31일자훈령제47호에 의해 '도촉장소 및 도촉일'	· 생산자 · 인증기관 · 수출 패커	· 2002년7월31일자훈령제47호,2004년4월 2일자훈령제21호로부터 종합해 보면, 인증기관이 생산자 및 생산관련하여 관리하는 정보는 이하와 같음 생산자병 - 출생장소(국·주·군) 및 출생연월 - 개체식별 개시장소 및 일자 - 성별 - 품종 - 사망・불병 - 백신접중이나 치료 등 위생조치력 - 사양방법 - 이동력 - 혈통 - 수정단이식(도너,레시피언트별) - 이표메이커병 - 생산자의 전국개인등록번호(CPF)또는 법인등록번호(CNF) - 사양농가의 주소 - SISBOV관리번호 - SISBOV관리번호 - 동ISBOV관리번호 - 작용의유용우, ))육용우, ()유육검용수입우의 경우 MAPA와 인증기관이 SIS BOV데이터를 공동으로 완성하여 감.

표 4 각국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비교표-유통 및 소비단계

		3. 유통 및 소비단계		
국가	전달방법	데이터항목	보고자	시스템관리자에 보고내용
일본	지육 태그, 상표라벨 등	개체식별번호,생년월일,소의 종류, 성별,모친의 개체식별번호,사육지, 수입연월일,수입국명,양도에 관한 정보 등	도축업자, 판매업자 (도매,소 매)	-
호주	-	-	-	-
캐나다	도축시 이표 제거	· 개체식별번호 · 도축일	도축업자	도축자등은 도축한 가축의 식별번호 등을 기록한 뒤 해 당번호를 도축일등 해당가축 에 관한 정보와 함께 CCIA에 보고 (도축처리시설 이후 쇠고기 유통단계에서 트레이스 백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EU	규칙EC/1760/2000에서는 '의무적 표시시스템은 지육,4분할,부분육 증명과개별가축을 확실하게 링크시킬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규칙EC/1825/2000에서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관여하는 관계자가 가진 등록시스템은) 소, 지육,부분육이 어디서 와서 나갔는지를 증명하기 위해그 구매처와 출하처를 기록함'으로 되어 있음. 벨기에 도축장에서는 일본과마찬가지로 지육에 개체정보가 기록된 실을 첨부한 정보 전달을 실시하고있음.	및 승인번호,식육가공장소재국 및 승인번호,우육에 대해 출생국,비육 국,도축국이 다른 경우 각각의 국명 민치육에 대해서는 소 개체와 우육 의 관련을 나타내는 코드번호(개체 식별번호등),민치육의 제조국명,소 개체의 원산(생산(출생),비육,도축) 국과 민치육제조국이 다른 경우 각 각의 국명	도축업자	도축 후 7일 이내에 도축업자 가 주관당국에 패스포트를 반환
브라질	브라질도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 수출용 우육에 대해 라벨표시만으로, 국 내용에 대해서는 라벨표 시가 필요 없음.	· 수출용 우육 및 곤포하는 상자의 라벨표시에, 롯트번호가 기재됨. · SISBOV제도 중에 수출할 때 상 기 롯트번호 이외에 요구사항 등 은 없음.	· SIF에 등록된 수출 커 출업 자,유에 대한는 유.	SIF에 등록된 패커는 개체데 이터로서 '도축장소 및 도축일'을 BND에 등록함. 등록방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음 도축된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한 파일을 작성하여 BND로 송신-패커가 가지고 있는 유저번호와 패스워드에 의해 BND시스템에 억세스하여 도축한 가축에 대하여 필요사항입력

표 5 각국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비교표-시스템 관리기관

				4. 시스템	관리기관	
국가	유무		명	칭	정보제공	정보제공 방법
일본	있음.	독립행정	법인 가축가	량센타	있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리 기관의 HP에 억세스한 후 개체식별번호를 입력
호주	있음.	호주식육 산공사 N		사업단(일명 호주축	원칙적으로 생산자나 소유자 만 NLIS D/B에 억세스 가능, 생산자 등 허가가 있으면 다 른 사람도 가능	원칙적으로 인터넷, 이외 에 FAX 등 수단도 있음.
캐나다	있음.	캐나다 소개체식별에이전시(CCIA)			있음.	CCIA가 관리하는 데이터는 가축위생 및 식품안전의 이유로 추적에 필요한경우에 한하여 CFIA에게만 정보제공.
	있음(각 국에서 정비).	주요국의 운영기관		데이터베이스	소비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 보제공을 하지 않음.(단, 규칙 상 구주위원회 및 각 가맹국	-
	/3 <sup>□</sup> I).		주관당국	D/B운영기관	의 주관당국이 모든 정보를	
		프 랑스	농업식료 어업농촌성	Institute de L'elevage (가축개량협회(프랑스 농무성 소관단체)	억세스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또한, 각 가맹국에 따라 이해	
EU		벨기에	연방식품 유통안전청	연방식품유통안전청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비 자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계당 사자가 데이터 억세스를 할	
Le		아일랜드	농업식료성	농업식료성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필요.	
		네델란드	농업자연 식품안전성	NAHS(내쇼날 애니멀 헬스 서비스 (위생 당국의 관계기관)		
		영 국	환경식량 농촌성(Defra)	RPA(Rural Payments Agency)(Defra의 집행 기관으로 단일자불제도 를 담당하고 있음.)		
브라질	있음.	는 MA · 개체등 관')은	APA농목방역 록·경력증	시스템(전국D/B:BND) 국(SDA) 명발행기관(=*증명기 하고 각 기관이 독자	유저번호와 패스워드을 입력 하고 BND D/B에 로그인하여	에 억세스할 수 없지만, 인 증기관의 독자서비스로 각 기관이 관리하는 시스 템에 억세스를 허용, - 출생연월(일) 또는 개체 식별일 - 성별, 품종, 이동력, 사양 방법, 위생조치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표 6 각국의 트레이스어빌리티 시스템 비교표-기타 특기사항

			5. 기타 특기할 사항	
국가	경비 부담	트레이스 어빌리티 접근방법	제도를 확실하게 하는 조치	기타
일본	국가가 부담	생 산 정 보공개 JAS등	농림수산성 직원이 관리자,도축자,판매 업자 등에 입입검사를 실시. 또한,도축 직후 지육에서 채취한 샘플과 소매점에 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 등에서 채취 한 샘플의 DNA감정을 실시	-
호주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이 원칙. 단, 많 · 이표는 생산자 부담이 원칙. 단, 많 은 주에서 일부 보조 실시. 가축시 장과 도축장 등의 리더기 도입 경비 에 보조를 실시 · NLIS의 테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 경비는 생산자와 관련기업이 MLA 에 지불하는 과징금과 분담금,연방 정부의 보조 등으로 운영하고 있음.	-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벌칙규정을 만듬.	· NLIS는 생산단계부터 도축(지육)단계까지 · 임의로 생산자정보공개JAS를 실시하고 있는 식육업자 있음. · 수출용의 경우 수송컨테이너번호는 모두, 호주검역검사국(AQIS)의 중앙데이터베이스에 보존의무 있음. · 원칙적으로 전자이표를 이용 · PIC를 기초로 하고 있음.
캐나다	· 이표는 관리자 자기부담 · CCIA는 판매한 모든 이표로부터 관리경비로 이표 1매당 20센트를 징수 · 제도 개시 시 및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 국가 및 관련단체 등이 거출	가축 및 및 안 시 품 및 안 의 전을 추적이 (트레이스 백)	농업농산식료행정금융벌법(Agriculture and Agri-Food Administrative Monetary P enalties Act)에 의해 소유한 가축의 이표 장착을 태만히 한 경우 500-4000달러 부 과	생산자는 가축이 해당농장 외로 이동한 때는 해당 가축의 개체관리번호,이동 일,이동이유 및 양도자 성명,주소 등을 기록하고,해당 기록을 최저 5년간 보지할 의무가 부과됨. 가축상시장관계자 및 수송업자 등도 거래하는 모든 가축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도록 하고,만일 가축전염병 등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는 CCIA가 관리하는 데이터 및 이들 기록으로 신속한 트레이스 백이 가능하게 됨.
EU	생산부문(이표,패스포트.데이터베이스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규칙 EC/1760/2000에서는 '발생비용을 가축취급자(keeper)에게 부담시킬수 있다'고 함. 프랑스에서는 중앙데이터베이스 운영 경비는 100% 국고부담,지방데이터베이스 운용경비는(시스템유지비 50%, 이표관계 25%, 패스포트 우송료 25%)는 10% 국고보조, 90%가 농가등 부담아일랜드에서는 이표는 농가부담,패스포트 우송료는 국고부담	테네스용보의관도 이이여 금급에도 조지리왕	구주위원회 전문가는 각국의 주관당국과 연계하여 각 가맹국의 본 규칙 준수상황을 현지조사 생산단계의 검사로는 매년, 농장 소의 최저 10%를 검사(데이터베이스가 완비 된 경우는 5%)하고,농장선정시 사육두 수와 과가 질병발생상황 등 리스크를 고려하여 각국의 주관당국이 선정	트레이스어빌리티에 관한 접근방법은 각 가맹국 책임하에 실시(각 가맹국은 규칙 EC/1760/2000의 준수에 필요한 모 든 조치를 강구할 필요)
브라질	생산자 자기부담	수출 우 이 는 역에 는 이 의 수출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 생산자에 대한 감사는 인증기관이 활동실적이 있는 농장을 추출하여 무작위로 실시 · 인증기관 및 이표제조메이커에 대한 감사는 MAPA가 연1회,개시 24시간이내에 통고하고 감사.그러나,고발의경우에는 무작위로 실시 · 수출패커에 대한 감사는 SIF가 매주감사함과 동시에 MAPA기술자가 부정기적으로 연간 수회,다른 감사사항을 포함하여 감사함. 결론적으로 SIS BOV만에 관해 감사하는 것은 아님.	현재 검토되고 있는 SISBOV 개정안에 서는 생산농장에 대한 감사는 180일간 1회(연 2회)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료 : http://alic.lin.go.jp에서



DDA 2006년 3월 농업협상 동향

## DDA 2006년 3월 농업협상 동향

임 소 영\*

지난 2005년 말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 시한으로 정해 놓은 4월 말이 약 한달 여 남은 가운데,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모델리티 합의안의 도출은 물론 향후 DDA 협상 전망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 1. G-6 논의 동향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 일본 등 주요 6개국을 포함한 캐나다, 이집 트, 말레이시아 등은 지난 달 각 그룹들이 제시한 관세감축안을 토대로 농업과 비농업분야에서의 실제 관세감축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따라 각기 다른 관세구간, 다른 감축률을 적용하여 각 국의 평균 감축률이나 감축 이후의 평균 관세율 등을 기초로 실질적인 관세감축 여부를 확인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2월 말 경에 나온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놓고 G-6의 파리 고위급 회담, 런던 각료회의(3월 10, 11일)가 이어 열렸으나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주요국간 입장차 조율이 이루어 지지 않자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3월 협상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지게 되었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lsyjr@krei.re.kr 02-3299-4250

#### 2. WTO 농업위원회 3월 회의

이번 농업위원회 3월 회의에서는 세 번의 비공식 전체회의와 각 분야별 Room F 회의가 열렸지만 일부 쟁점을 빼고는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민감품목의 TRQ 증량폭을 둘러싸고 국내 소비량을 증량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수출국들의 공세가 계속되는 한편 EU는 기존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현행 수입량을 기준으로 TRQ를 증량하되 수입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암시를 주었다. 한편 우리나라가속한 G-10은 지난 2월 회의에서 제시하였던 민감품목 제안서가 현재 제시된 각 그룹별 입장차를 절충한 중간지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기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특별품목에 대해 제안서를 배포하였는데 이 제안서에 대해 G-33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핵심 쟁점에 밀려 거의 논의되지 않던 의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G-33은 특별수입구제조치(SSM) 관련 제안서를 제시하였는데 수출국들은 G-33이 제시한 SSM의 대상품목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일반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품목으로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낮고 구제조치는 너무 높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블루박스, 그린박스, 품목특정 AMS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블루박스에 대해서는 농업생산액의 5%로 설정되어 있는 상한의 축소 여부와 기존 블루박스 및 신규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 여부에 대해논의가 이루어졌다

각 국은 블루박스를 농업생산액의 5%에서 2.5%로 줄이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EU는 기존 블루박스에 대해 품목별 상한을 설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동시에 EU는 신규 블루박스에도 규 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블루박스의 추가 규제 설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여 블루박스를 둘러싼 미국과 EU 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그린박스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G-20이 제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 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직불금 지급기준을 기존의 'fixed'에서 'fixed and unchanging'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미국, EU, G-10 등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 여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품목 특정 AMS에 대해서도 '99-'01 3년 평균을 기준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 다는 미국과 UR 이행기간을 기준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수입국간의 의 견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아프리카-최빈개도국(LDC) 그룹 공동 제안서가 배포 되면서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팰코너 의장은 이를 바탕으로 문 안(reference paper)을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3월 농업주간에는 WTO 전체 회원국 차원의 회의와 동시에 G-6 회의 도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요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G-6를 포함한 G-11 국가들은 이달 27, 28일간 고위급 회의를 가지고, 4월 4, 5 일에는 G-6의 고위급 협상이 잠정 예정되어 있다. G-11 회의에서는 농업과 비농업협상에서 기술적 쟁점과 함께 4월 말에 모델리티 합의안 도출이 가능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협상 전략상 기존 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 진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3)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3)

# 세계 곡물수급 동향(2006. 3)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10일 발표한 세계곡물 수급전망(3월 1일 현재)에 의하면, 2005/06년도 세계 곡물생산량은 전년대비 2.4% 감소한 19억 8,826만 톤, 소비량은 0.9% 증가한 20억 1,155만 톤, 그리고 기말재고량은 5.8% 감소한 3억 7,767만 톤, 기말재고율은 1.3% 포인트 감소한 18.8%로 전망하고 있다.

#### 1. 전체 곡물

2005/06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감소한 19억 8,82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4,985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곡물인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5/06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95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 억 8,922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0.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0.9% 증가한 20억 1,155만 톤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02-3299-4269

고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다. 2005/06년도에는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였으나 2005/06년도는 다시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2억 3,54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곡물 소비량이 생산량을 2,329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05/06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5.8% 감소한 3억 7,767만 톤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4/05년도 20.1%에서 18.8%로 1.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н	2002/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58.85	2,038.11	1,983.75	1,988.26	△2.4	0.2
공 급 량	2,303.78	2,395.05	2,383.95	2,389.22	△0.2	0.2
소 비 량	1,946.83	1,994.10	2,010.01	2,011.55	0.9	0.1
교 역 량	240.27	239.49	235.67	235.42	△1.7	△0.1
기말재고량	356.94	400.95	373.94	377.67	△5.8	1.0
기말재고율	18.3	20.1	18.6	18.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32, March 10, 2006.

#### 2. 쌀

2005/06년도 쌀 생산량은 2004/05년 보다 1.9% 증가한 4억 968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쌀 생산국인 태국, 중국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

기 때문이다. 전월대비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의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며, 인도네시아는 감소할 전망이다.

2005/06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4억 1,780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331만 톤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대비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페루의 소비량은 증가할 전망이며, 베트남은 감소할 전망이다.

2005/06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대비 3.4% 감소한 2,67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대비 중국, 미얀마, 브라질은 수출량이 증가될 전망이고, 미국은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1.0% 감소한 6,569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95만 톤, 2004/05년보다 812만 톤 감소한 수준이다. 전월보다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의 재고량은 감소할 전망이며, 미국, 베트남, 일본의 재고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2005/06년도 기말재고율은 15.7%로 2004/05년도의 17.8%보다 약 2.1%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b>フ</b> . 日	2002/04	2004/05		2005/06(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91.38	402.21	408.99	409.68	1.9	0.2	
공 급 량	501.67	488.30	481.89	483.49	△1.0	0.3	
소 비 량	415.58	414.49	415.24	417.80	0.8	0.6	
교 역 량	27.41	27.72	26.69	26.79	△3.4	0.4	
기말재고량	86.09	73.81	66.64	65.69	△11.0	△1.4	
기말재고율	20.7	17.8	16.0	15.7			

#### 3. 소맥

2005/06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677만 톤으로 전년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05/06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4/05년 6억 922만 톤보다 약 1,455만 톤 증가한 6억 2,377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1999/00년 1억 1,413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5/06년 에는 1억 1,031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대비 수출 증가 국가는 브라질과 터키이고, 캐나다, 루마니아, 시리아는 수출량이 감소했다.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은 17.9%로 전년보다 2%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기말재고량은 1억 4,262만 톤으로 전년보다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각각 전년대비 9.0%와 14.1% 감소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4.6에서 22.9%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 н	2003/04 2004/05		2005/06	2005/06(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54.59	626.75	616.17	616.77	△1.6	0.1	
공 급 량	720.66	758.85	765.77	766.40	1.0	0.1	
소 비 량	588.56	609.22	623.81	623.77	2.4	0.0	
교 역 량	109.36	110.84	110.36	110.31	△0.5	0.0	
기말재고량	132.10	149.63	141.96	142.62	△4.7	0.5	
기말재고율	22.4	24.6	22.8	22.9			

#### 4. 옥수수

2005/06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8,389만 톤으로 전년보다 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EU25,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 옥수수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의 소비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6억 8,49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이후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였으나 2004/05년은 생산량이 소비량을 2,694만 톤 정도 초과하였고 2005/06년도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101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7.6% 감소한 7,158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7.4%, 14.0%로 이들 두 국가가 8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06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 보다 0.8% 감소한 1억 3,01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101 만 톤 정도 감소한 수준이다. 2005/06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0.3% 포인 트 감소한 19.0%가 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3/04	2004/05	2005/06(전망)		변동률(%)	
। च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23.04	709.08	683.76	683.89	△3.6	0.0
공 급 량	747.97	812.06	815.19	815.05	0.4	0.0
소 비 량	644.99	680.90	687.03	684.90	0.6	△0.3
교 역 량	77.34	77.50	72.73	71.58	△7.6	△1.6
기말재고량	102.98	131.16	128.16	130.15	△0.8	1.6
기말재고율	16.0	19.3	18.7	19.0		

#### 5. 대두 및 대두박

2005/06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412만 톤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생산량은 전년대비 10.4%인 약 550만 톤이 증가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01만 톤 감소될 전망이어서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분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켰다. 2006년 2월 전망까지 중국의 대두 새산량은 감소할 전망을 보였으나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 전망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6% 증가한 6,60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9.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37.1%, 브라질이 39.5%, 아르헨티나가 15.1%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442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4,488만 톤과 비교하여 2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약 3.7% 포인트 높은 25.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del></del> 구 분	2003/04	2004/05	2005/00	5(전망)	변동	률(%)
1 T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6.75	215.33	222.76	224.12	4.1	0.6
공 급 량	227.12	250.91	267.63	269.00	7.2	0.5
소 비 량	190.17	205.69	213.73	213.81	3.9	0.0
교 역 량	55.62	65.03	66.35	66.07	1.6	△0.4
기말재고량	35.58	44.88	53.83	54.42	21.3	1.1
기말재고율	18.7	21.8	25.2	25.5		

2005/06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390만 톤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4.7% 늘어난 1억 4,356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34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6.0% 증가한 4,84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29.3%, 아르헨티나가 44.7%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511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553만 톤과 비교하여 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3.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H	2002104	2004/05		5(전망)	변동률(%)	
구 분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28.45	137.93	144.49	143.90	4.3	△0.4
공 급 량	133.78	142.67	149.58	149.43	4.7	△0.1
소 비 량	128.33	137.11	143.77	143.56	4.7	△0.1
교 역 량	45.44	45.72	47.89	48.48	6.0	1.2
기말재고량	4.74	5.53	5.17	5.11	△7.6	△1.2
기말재고율	3.7	4.0	3.6	3.6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 11.	백만 존
구 분	2002/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b>十 七</b>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01.67	488.30	481.89	483.49	△1.0	0.3
기초재고량	110.29	86.09	72.90	73.81	△14.3	1.2
생산량	391.38	402.21	408.99	409.68	1.9	0.2
미국	6.42	7.46	7.09	7.09	△5.0	0.0
태국	18.01	17.07	17.90	17.90	4.9	0.0
베트남	22.08	22.72	22.50	22.56	△0.7	0.3
인도네시아	35.02	34.25	34.90	34.50	0.7	△1.1
중국	112.46	125.36	127.40	127.40	1.6	0.0
일본	7.09	7.94	8.00	8.26	4.0	3.3
수입량	24.86	26.08	25.94	25.58	△1.9	△1.4
인도네시아	0.65	0.50	1.00	1.00	100.0	0.0
중국	1.12	0.61	0.60	0.60	△1.6	0.0
일본	0.70	0.78	0.70	0.70	△10.3	0.0
소비량	415.58	414.49	415.24	417.80	0.8	0.6
미국	3.66	3.89	4.04	4.04	3.9	0.0
태국	9.47	9.48	9.49	9.49	0.1	0.0
베트남	17.85	18.25	19.00	18.50	1.4	△2.6
인도네시아	36.00	35.85	35.60	35.60	△0.7	0.0
중국	135.00	135.10	135.20	135.20	0.1	0.0
일본	8.36	8.30	8.25	8.25	△0.6	0.0
수출량	27.41	27.72	26.69	26.79	△3.4	0.4
미국	3.31	3.54	3.84	3.75	5.9	△2.3
태국	10.14	7.27	7.00	7.00	△3.7	0.0
베트남	4.30	5.17	5.00	5.00	△3.3	0.0
기말재고량	86.09	73.81	66.64	65.69	△11.0	△1.4
미국	0.76	1.21	0.84	0.97	△19.8	15.5
태국	1.71	2.02	3.43	3.43	69.8	0.0
인도네시아	4.02	2.87	3.17	2.77	△3.5	△12.6
중국	44.93	35.14	27.24	27.14	△22.8	△0.4
일본	1.70	1.92	2.17	2.43	26.6	12.0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200510	- ( - l - l )		7 1 1
구 분	2003/04	2004/05	2005/00	· ,		률(%)
	,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20.66	758.85	765.77	766.40	1.0	0.1
기초재고량	166.07	132.10	149.60	149.63	13.3	0.0
생산량	554.59	626.75	616.17	616.77	△1.6	0.1
미국	63.81	58.74	57.28	57.28	△2.5	0.0
호주	26.13	22.60	24.00	24.50	8.4	2.1
캐나다	23.55	25.86	26.80	26.80	3.6	0.0
EU25	106.88	136.77	122.95	122.95	△10.1	0.0
중국	86.49	91.95	97.00	97.00	5.5	0.0
러시아	34.10	45.40	47.60	47.60	4.8	0.0
수입량	102.15	109.86	106.60	107.00	△2.6	0.4
EU25	5.91	7.39	7.50	7.50	1.5	0.0
브라질	5.18	5.21	5.70	5.70	9.4	0.0
북아프리카	15.48	18.41	18.60	18.60	1.0	0.0
파키스탄	0.05	1.42	0.80	0.80	△43.7	0.0
인도	0.01	0.01	0.50	0.50	4900.0	0.0
러시아	1.03	1.20	0.80	0.80	△33.3	0.0
소비량	588.56	609.22	623.81	623.77	2.4	0.0
미국	32.51	31.91	32.33	32.33	1.3	0.0
EU25	107.90	115.20	119.50	119.50	3.7	0.0
중국	104.50	102.00	101.00	101.00	△1.0	0.0
파키스탄	18.90	19.50	20.30	20.30	4.1	0.0
러시아	35.50	37.40	38.40	38.40	2.7	0.0
수출량	109.36	110.84	110.36	110.31	△0.5	0.0
미국	31.52	28.92	27.22	27.22	△5.9	0.0
캐나다	15.79	14.97	16.50	16.00	6.9	△3.0
EU25	10.93	14.37	14.50	14.50	0.9	0.0
기말재고량	132.10	149.63	141.96	142.62	△4.7	0.5
미국	14.87	14.70	14.75	14.75	0.3	0.0
EU25	10.60	25.20	21.65	21.65	△14.1	0.0
중국	43.29	38.82	35.32	35.32	△9.0	0.0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는 미.	백만 돈
구 분	2003/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7 七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7.97	812.06	815.19	815.05	0.4	0.0
기초재고량	124.93	102.98	131.43	131.16	27.4	△0.2
생산량	623.04	709.08	683.76	683.89	△3.6	0.0
미국	256.28	299.91	282.26	282.26	△5.9	0.0
아르헨티나	15.00	20.50	15.50	15.50	△24.4	0.0
EU25	39.88	53.48	47.79	48.19	△9.9	0.8
멕시코	21.80	22.63	20.50	20.00	△11.6	△2.4
동남아시아	15.42	15.62	16.42	16.22	3.8	△1.2
중국	115.83	130.29	134.00	134.00	2.8	0.0
수입량	76.55	75.86	73.28	73.05	△3.7	△0.3
EU25	5.75	2.95	3.00	3.00	1.7	0.0
일본	16.78	16.49	16.50	16.50	0.1	0.0
멕시코	5.74	5.92	6.70	6.70	13.2	0.0
동남아시아	3.90	3.13	3.15	3.13	0.0	△0.6
한국	8.78	8.64	8.40	8.40	△2.8	0.0
소비량	644.99	680.90	687.03	684.90	0.6	△0.3
미국	211.64	224.75	228.23	228.23	1.5	0.0
EU25	46.81	52.50	50.60	50.60	△3.6	0.0
일본	16.90	16.70	16.60	16.60	△0.6	0.0
멕시코	26.40	27.90	28.40	28.40	1.8	0.0
동남아시아	17.90	18.40	19.25	19.15	4.1	△0.5
한국	8.72	8.62	8.45	8.45	△2.0	0.0
중국	128.40	131.00	134.00	133.00	1.5	△0.7
수출량	77.34	77.50	72.73	71.58	△7.6	△1.6
미국	48.26	46.08	46.99	48.26	4.7	2.7
아르헨티나	10.94	14.50	10.00	10.00	△31.0	0.0
중국	7.55	7.59	6.00	5.00	△34.1	△16.7
기말재고량	102.98	131.16	128.16	130.15	△0.8	1.6
미국	24.34	53.70	60.99	59.72	11.2	△2.1
아르헨티나	0.22	1.03	0.43	0.93	△9.7	116.3
EU25	3.18	6.95	6.41	7.24	4.2	12.9
중국	44.85	36.56	30.16	32.66	△10.7	8.3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 단키	: 백만 돈
구 분	2003/04	2004/05	2005/00	5(전망)	변동	률(%)
) 让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7.12	250.91	267.63	269.00	7.2	0.5
기초재고량	40.37	35.58	44.87	44.88	26.1	0.0
생산량	186.75	215.33	222.76	224.12	4.1	0.6
미국	66.78	85.01	84.00	84.00	△1.2	0.0
아르헨티나	33.00	39.00	40.50	40.50	3.8	0.0
브라질	51.00	53.00	58.50	58.50	10.4	0.0
중국	15.39	17.40	17.00	18.30	5.2	7.6
수입량	54.25	64.68	66.28	65.30	1.0	△1.5
EU25	14.64	15.50	14.80	14.40	△7.1	△2.7
일본	4.69	4.30	4.30	4.30	0.0	0.0
중국	16.93	25.80	27.50	27.00	4.7	△1.8
소비량	190.17	205.69	213.73	213.81	3.9	0.0
미국	44.60	51.25	51.21	51.21	△0.1	0.0
아르헨티나	26.62	28.93	30.20	30.20	4.4	0.0
브라질	32.15	31.91	32.31	32.31	1.3	0.0
EU25	15.44	15.99	15.61	15.39	△3.8	△1.4
일본	4.93	4.50	4.49	4.49	△0.2	0.0
중국	34.38	40.21	44.73	45.10	12.2	0.8
수출량	55.62	65.03	66.35	66.07	1.6	△0.4
미국	24.13	30.01	24.77	24.49	△18.4	△1.1
아르헨티나	6.71	9.51	10.00	10.00	5.2	0.0
브라질	19.82	20.54	26.07	26.07	26.9	0.0
기말재고량	35.58	44.88	53.83	54.42	21.3	1.1
미국	3.06	6.96	15.09	15.37	120.8	1.9
아르헨티나	12.68	13.92	14.87	14.87	6.8	0.0
브라질	15.39	16.48	17.02	17.02	3.3	0.0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인 기 :	: 백만 돈
구 분	2003/04	2004/05	2005/06	5(전망)	변동	률(%)
7 1	2003/04	(추정)	2006.2	2006.3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3.78	142.67	149.58	149.43	4.7	△0.1
기초재고량	5.33	4.74	5.09	5.53	16.7	8.6
생산량	128.45	137.93	144.49	143.90	4.3	△0.4
미국	32.95	36.94	36.84	36.84	△0.3	0.0
아르헨티나	19.76	21.34	22.33	22.33	4.6	0.0
브라질	22.36	22.42	23.17	23.17	3.3	0.0
EU25	11.10	11.09	11.15	10.63	△4.1	△4.7
중국	20.19	24.03	27.47	27.38	13.9	△0.3
수입량	44.74	45.69	47.25	47.72	4.4	1.0
미국	0.26	0.13	0.15	0.15	15.4	0.0
브라질	0.23	0.19	0.28	0.28	47.4	0.0
EU25	21.91	22.10	22.20	22.50	1.8	1.4
소비량	128.33	137.11	143.77	143.56	4.7	△0.1
미국	28.53	30.45	30.94	30.75	1.0	△0.6
브라질	7.70	8.81	9.04	9.04	2.6	0.0
인도	1.12	1.39	1.57	1.57	12.9	0.0
EU25	32.64	32.68	32.95	32.58	△0.3	△1.1
중국	19.54	23.46	27.00	27.31	16.4	1.1
수출량	45.44	45.72	47.89	48.48	6.0	1.2
미국	4.69	6.66	5.99	6.17	△7.4	3.0
아르헨티나	18.95	19.88	21.65	21.65	8.9	0.0
브라질	14.76	14.24	14.19	14.19	△0.4	0.0
기말재고량	4.74	5.53	5.17	5.11	△7.6	△1.2
미국	0.19	0.16	0.23	0.23	43.8	0.0
아르헨티나	0.54	1.15	0.93	0.93	△19.1	0.0
브라질	1.78	1.33	1.55	1.55	16.5	0.0
EU25	0.85	0.86	0.86	0.86	0.0	0.0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7.65	2,353.60	1,910.40	241.21	443.21	23.2
2003/04	1,858.85	2,303.78	1,946.83	240.27	356.94	18.3
2004/05	2,038.11	2,395.05	1,994.10	239.49	400.95	20.1
2005/06	1,988.26	2,389.22	2,011.55	235.42	377.67	18.8

주: 2004/05년은 추정치, 2005/06년은 전망치임.

자료: http://ers.usda.gov(미국 농업부)

자료: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1/02).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3/04~2005/06).

##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3)

김 혜 영\*

미국 농업부(USDA)가 3월 13일 발표한 쌀 가격전망에 의하면, 3월 현재 세계 쌀 가격은 태국산 장립종이 전년대비 11.2% 상승한 톤당 309달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이 전년대비 17.3% 상승한 톤당 474달러이다.

또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06년 5월물 3월(15일 현재) 소맥가격은 전년대비 23.0% 상승한 톤당 155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06년 5월물 3월(15일 현재) 옥수수 가격은 전년대비 8.2% 상승한 톤당 90달러, 2006년 5월물 3월(15일 현재) 대두 가격은 전년대비 1.8% 하락한 톤당 215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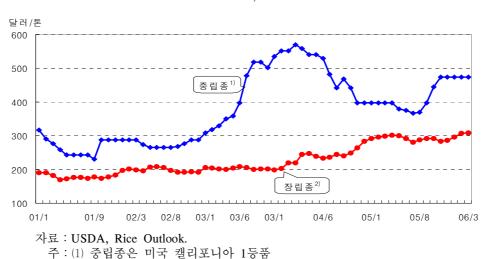
#### 1. 쌀

장립종 쌀 가격은 2006년 3월(14일 현재) 톤당 231 달러로 전년대비 10.3% 상승하였다. 중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20.5% 상승한 톤당 228달러이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전년대비 11.2% 상승한 톤당 309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월보다 0.7% 상승한 수준이며, 1999년 1월 톤당 308달러 이후 가장 높다. 2월 초부터 상승한 가격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태국 정부의 재고보유를 통한 시장 개입 때문이다.

<sup>\*</sup>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ykim@krei.re.kr 02-3299-4269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은 전년대비 17.3%, 전년 동월대비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점차 하락한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하락한 이후 2005년 4월까지 지속되었다. 5월에서 8월까지약 하락하던 가격은 9월부터 상승하여 2005년 11월 톤당 474달러로 상승한 후 2006년 3월에도 유지할 전망이다. 가격 강세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2005/06년 캘리포니아의 쌀 생산량 감소와 국제 쌀 공급 부족이다. 2006년 봄, 오스트레일리아의 수확이 시작되기 전까지 중립종 쌀의 가격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2) 장립종은 태국 100% grade B

그림 1 월별 쌀 가격 동향, 2001년 1월~2006년 3월

#### 2. 소맥

2004/05년 국제 소맥가격은 톤당 126달러로 전년보다 약 7.4%하락하였다. 2004년 상반기 상승하던 가격은 국제 소맥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하반기에는 하락하였다. 2005년 3월까지 약 상승하던 가격은 4월에서 6월까지 톤당 120달러를 유지하였다. 7월부터 서서히 증가하던 소맥 가격은 10월에 톤당 13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06년 3월(15일 현재) 톤당 155달러로 전

년대비 23.0% 상승하고 전년 동월대비 19.7% 상승한 수준이다. 소맥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은 감소하는 반면 소비량이 증가할 전망이어서 소맥가격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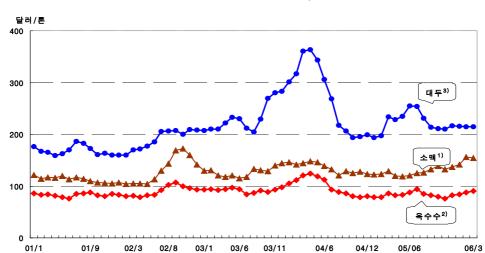


그림 2 월별 소맥·옥수수·대두가격 동향, 2001년 1월~2006년 3월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 주:(1) 소맥은 Kansas Chicago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 (3) 대두는 Chicago 1등급

#### 3. 옥수수

2004/05년 옥수수 가격은 톤당 83달러로 전년보다 약 20.0% 하락하였다. 2004년 4월은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았다. 옥수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상승했다. 2004/05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여 2004년 11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했다. 8월부터 생산량이 다소 증가할 전망을 보여서 11월 톤당 76달러까지 하락했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한 옥수수 가격은 2006년 3월(15일 현재) 톤당 90달러로 전년대비 8.2%, 전월대비 2.8% 상승하였다. USDA의 2005/06년 3

월 옥수수 수급전망에서 생산량과 기말재고량이 감소할 전망을 보이면서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전망된다.

#### 4. 대두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다. 2004/05년 대두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하고,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2004년 4월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 대두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을 보이면서 5월부터 하락하여 11월에는 톤당 196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6년 3월(15일 현재) 대두 가격은 톤당 215달러로 전년대비 1.8% 하락하였다. 대두의 2005/06년도 수급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격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세계 곡물가격 동향, 2006년 3월

단위: 달러/톤, FOB

						2	· 음감률(%)	
품 목	2003/04	2004/05	2005.3	2006.2	2006.3	전년 대비	전년 동월	전월 대비
	116	209	217	229	231	10.3	6.1	0.6
, 중립종 <sup>1</sup>	156	189	196	227	228	20.5	16.3	0.6
쌀 태국 <sup>2</sup>	220	278	292	307	309	11.2	5.8	0.7
캘리포니아 <sup>2</sup>	533	404	444	474	474	17.3	6.8	0.0
소 맥 <sup>3</sup>	136	126	129	156	155	23.0	19.7	$\triangle 0.6$
옥 수 수4	104	83	86	88	90	8.2	5.5	2.8
대 두4	295	219	234	214	215	△1.8	△8.4	0.1

주 : (1) USDA Farm Service Agency, Prevaliling World Market Prices and Loan Deficiency Panyment Rates for Rice. 2006년 3월 가격은 14일 현재가격임. 쌀곡물연도 8~7월.

<sup>(2)</sup> USDA, Rice Outlook. 태국 100% grade B, California Medium Grain 1등품.

<sup>(3)</sup>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006년 3월 가격은 15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sup>(4)</sup>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 물연도 9~8월. 2006년 3월 가격은 15일 현재 가격임. USDA AMS and ERS.

표 2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 달러/톤

		ż	살				
연도 <sup>1)</sup>	ㅁ] -	국 <sup>2)</sup>	태	국	소맥 <sup>3)</sup>	옥수수 <sup>4)</sup>	대두 <sup>4)</sup>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 , ,	" '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4	278	278	126	83	219

자료: USDA ERS

자료: http://www.usda.gov(미국 농업부)

주:(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sup>(2)</sup>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품 4% broken California

<sup>(3)</sup> 소맥(HRW) 2등급(KCBOT)

<sup>(4)</sup>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low soybean) 1등급(CBOT)

# 통계자료

대륙별 닭고기 통계

표 1 세계 닭고기 통계

		<u> </u>	1 (1)		· II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34	1,966	0	2,000	42	1,929	29
1961	29	2,243	0	2,272	68	2,162	42
1962	42	2,267	0	2,309	78	2,196	35
1963	35	2,390	0	2,425	51	2,338	36
1964	66	4,448	180	4,694	185	4,434	74
1965	74	4,952	198	5,224	209	4,955	59
1966	59	5,523	204	5,786	221	5,471	92
1967	92	5,808	205	6,105	242	5,777	86
1968	86	5,995	203	6,304	256	5,979	67
1969	67	6,689	247	7,003	282	6,630	90
1909	90	7,470	259	7,003	340		104
						7,373	
1971	104	7,672	300	8,076	359	7,601	113
1972	113	8,455	328	8,896	375	8,431	90
1973	95	9,161	319	9,575	397	9,020	156
1974	130	9,767	316	10,213	431	9,659	122
1975	122	10,626	398	11,146	514	10,538	94
1976	94	11,850	461	12,405	615	11,652	138
1977	136	12,782	523	13,441	758	12,533	150
1978	155	13,937	566	14,658	769	13,750	139
1979	139	15,134	666	15,939	905	14,886	148
1980	148	16,116	773	17,037	1,157	15,730	150
1981	150	17,199	1,002	18,351	1,564	16,619	168
1982	171	18,343	930	19,444	1,472	17,714	258
1983	263	18,757	944	19,964	1,386	18,318	260
1984	260	19,415	1,037	20,712	1,339	19,097	276
1985	304	20,529	1,049	21,882	1,395	20,179	308
1986	338	21,195	1,206	22,739	1,457	20,910	372
1987	635	24,491	1,345	26,471	1,670	24,071	730
1988	470	23,864	1,216	25,550	1,814	23,352	384
1989	388	26,000	1,698	28,086	2,026	25,734	326
1990	293	27,884	1,912	30,089	2,277	27,459	353
1991	349	30,010	1,999	32,358	2,493	29,469	396
1992	397	31,609	2,347	34,353	2,806	31,108	439
1993	422	32,686	2,603	35,711	3,208	32,051	452
1994	447	35,357	3,290	39,094	3,942	34,654	498
1995	482	39,335	3,919	43,736	4,276	38,936	524
1996	524	42,592	4,390	47,506	4,787	42,228	491
1997	475	43,216	3,597	47,288	4,059	42,785	444
1998	484	44,903	3,442	48,829	4,196	44,122	511
1999	472	47,904	3,844	52,220	4,416	47,305	499
2000	499	50,474	3,823	54,796	4,809	49,453	534
2001	524	52,303	4,149	56,976	5,527	50,854	595
2001	593	54,155	4,431	59,179	5,701	52,835	643
2002	623	54,282	4,601	59,506	6,022	52,880	604
2003	604	55,952	4,367	60,923	6,043	54,175	705
2004	705	58,721	4,894	64,320	6,680	56,906	734
			, ,			· /	
2006(P)	734	60,901	4,960	66,595	7,046	58,912	637

표 2 아시아 닭고기 통계

			_ , , ,	,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_	-	-	_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_	_	_	_	_	_	_
1964	1	128	6	135	0	133	2
1965	2	148	6	156	0	154	1
1966	1	193	8	213	1	195	7
1967	7	249	8	264	1	257	6
1968	6	286	15	307	2	299	6
1969	6	377	33	416	1	397	18
1970	18	462	28	508	1	498	8
1971	8	539	46	593	1	571	21
1972	21	631	49	701	1	686	14
1973	14	701	47	762	1	734	26
1974	26	751	50	827	2	795	30
1975	30	854	57	941	3	907	28
1976	28	1,015	108	1,154	6	1,110	38
1977	38	1,229	108	1,375	13	1,310	52
1978	55	1,454	150	1,659	13	1,612	32
1979	32	1,603	180	1,817	20	1,756	35
1980	35	1,772	218	2,031	25	1,960	46
1981	46	1,800	323	2,169	39	2,091	38
1982	40	2,321	325	2,687	42	2,605	39
1983	39	2,479	293	2,811	30	2,727	53
1984	53	2,769	477	3,299	44	3,187	56
1985	86	2,945	452	3,491	61	3,259	100
1986	97	2,867	519	3,489	92	3,268	129
1987	392	4,420	638	5,450	170	4,858	422
1988	164	5,019	655	5,838	220	5,479	122
1989	122	5,165	733	6,035	264	5,672	97
1990	93	5,801	851	6,745	322	6,339	84
1991	84	6,553	1,035	7,672	378	7,192	102
1992	103	7,209	1,199	8,511	458	7,921	128
1993	120	8,150	1,340	9,610	531	8,945	133
1994	133	9,678	1,601	11,430	688	10,629	112
1995	93	12,363	1,796	14,272	475	13,672	124
1996	124	14,635	1,993	16,752	543	16,071	138
1997	138	13,450	1,653	15,241	590	14,536	114
1998	114	14,036	1,710	15,860	663	15,100	96
1999	96	14,707	2,202	17,005	687	16,227	90
2000	90	16,156	2,199	18,445	818	17,501	126
2001	116	16,325	2,068	18,509	909	17,478	100
2002	100	16,999	2,095	19,194	931	18,143	118
2003	118	17,689	2,164	19,971	953	18,832	186
2004	186	17,414	1,830	19,430	476	18,705	247
2005	247	18,039	2,186	20,472	609	19,638	204
2006(P)	204	18,713	2,298	21,215	741	20,318	156

표 3 북미 닭고기 통계

		<u> </u>	0 1 1		<b>/</b> II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34	1,966	0	2,000	42	1,929	29
1961	29	2,243	0	2,272	68	2,162	42
1962	42	2,267	0	2,309	78	2,196	35
1963	35	2,390	0	2,309	51	2,338	36
1964	42		ŀ		50		39
	39	2,654	1	2,697	40	2,608	38
1965		2,859	2 2	2,900		2,822	
1966	38	3,140		3,180	41	3,079	60
1967	60	3,207	2	3,269	36	3,180	53
1968	53	3,258	2	3,313	39	3,236	38
1969	38	3,536	2	3,576	38	3,491	47
1970	47	3,795	1	3,843	44	3,732	67 <b>5</b> 0
1971	67	3,794	1	3,862	50	3,753	59
1972	59	4,008	2	4,069	44	3,976	49
1973	49	4,196	5	4,250	45	4,142	63
1974	33	4,291	8	4,332	61	4,235	36
1975	36	4,217	13	4,266	64	4,182	10
1976	10	4,708	29	4,757	131	4,592	34
1977	34	4,877	27	4,938	142	4,769	27
1978	27	5,239	33	5,299	150	5,124	25
1979	25	5,808	35	5,868	183	5,651	34
1980	34	5,939	32	6,005	260	5,722	23
1981	23	6,261	43	6,327	329	5,965	33
1982	33	6,371	38	6,442	228	6,190	24
1983	24	6,450	35	6,509	196	6,293	10
1984	10	6,796	45	6,861	185	6,652	24
1985	24	7,204	40	7,268	191	7,051	26
1986	26	7,440	44	7,510	257	7,231	11
1987	11	8,405	50	8,477	343	8,101	33
1988	31	8,606	91	8,728	348	8,353	27
1989	27	9,226	84	9,337	372	8,939	26
1990	26	9,877	88	9,991	524	9,341	126
1991	126	10,641	111	10,878	577	10,146	150
1992	150	11,402	131	11,683	681	10,824	178
1993	178	11,963	144	12,285	893	11,219	173
1994	173	12,814	164	13,151	1,319	11,603	229
1995	229	13,391	154	13,774	1,805	11,701	268
1996	268	14,049	195	14,512	2,052	12,150	310
1997	310	14,509	223	15,042	2,037	12,710	295
1998	295	14,910	245	15,450	2,030	13,071	349
1999	349	15,998	260	16,607	2,126	14,098	383
2000	383	16,516	300	17,199	2,286	14,529	384
2001	384	17,027	324	17,735	2,590	14,793	352
2002	352	17,556	350	18,258	2,264	15,619	375
2003	375	17,915	419	18,709	2,309	16,100	300
2004	300	18,621	438	19,359	2,246	16,765	348
2005	348	19,380	469	20,197	2,436	17,322	439
2006(P)	439	19,888	491	20,818	2,510	17,902	406

표 4 남미 닭고기 통계

			т ⊔ -1		<b>/</b> II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_	-	-	_	-	_	_
1962	_	_	-	-	-	_	_
1963	_	_	_	_	_	_	_
1964	1	209	2	213	0	211	1
1965	1	281	2	285	0	283	1
1966	1	271	1	274	0	272	1
1967	1	307	0	309	ő	307	1
1968	1	329	0	331	ő	328	3
1969	3	392	0	395	0	392	3
1970	3	519	0	522	0	519	3
1971	3	546	2	551	0	547	2
1972	2	694	0	698	0	695	3
1973	3	787	0	790	0	786	4
1973	1	827	0	828	0	827	1
1975	1	903	0	904	10	891	3
1975	3	975	3	981	20	955	6
1970	6	1,107	6	1,119	43	1,072	2
1977	2	1,107	22	1,119	52	1,072	1
1978	1		31		81		
1979	3	1,464	30	1,497		1,413	3 2
	2	1,796		1,829	169	1,656	2
1981		2,040	36	2,080	294	1,782	5
1982	2	2,184	6	2,194	302	1,887	9
1983	10	2,296	5	2,311	290	2,012	7
1984	9	2,101	3	2,255	281	1,822	
1985	7	2,426	1	2,437	286	2,143	8
1986	8	2,663	36	2,707	245	2,437	25
1987	25	3,023	28	3,076	218	2,799	59
1988	59	3,180	3	3,242	236	2,950	30
1989	26	2,906	1	2,960	244	2,678	38
1990	41	3,341	4	3,386	327	3,028	31
1991	31	3,556	6	3,906	345	3,524	36
1992	36	3,985	54	4,412	399	3,986	27
1993	23	4,582	61	4,666	442	4,189	35
1994	35	4,920	62	5,017	491	4,497	29
1995	29	5,626	31	5,686	434	5,234	18
1996	18	5,687	42	5,747	571	5,154	22
1997	22	6,220	70	6,312	635	5,647	30
1998	30	6,317	78	6,425	591	5,812	22
1999	22	7,363	66	7,451	741	6,689	21
2000	21	7,835	53	7,909	881	7,007	21
2001	21	8,403	35	8,459	1,239	7,199	21
2002	21	9,056	13	9,091	1,600	7,471	20
2003	0	8,695	14	8,709	1,942	6,767	0
2004	0	9,633	26	9,659	2,482	7,177	0
2005	0	10,770	79	10,849	2,849	8,000	0
2006(P)	0	11,560	99	11,659	3,050	8,609	0

표 5 유럽 닭고기 통계

연도 이월량 생산량 수입량 공급량 수출량 소비량 재고량 (천톤, 도체중) (천투, 도체주) (천투,
19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64         15         1,443         171         1,635         135         1,460         31           1965         31         1,596         188         1,815         169         1,616         13           1966         13         1,820         188         2,031         178         1,827         19           1967         19         1,930         186         2,148         203         1,919         25           1968         25         1,979         206         2,158         213         1,974         15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1965         31         1,596         188         1,815         169         1,616         13           1966         13         1,820         188         2,031         178         1,827         19           1967         19         1,930         186         2,148         203         1,919         25           1968         25         1,979         206         2,158         213         1,974         15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1966         13         1,820         188         2,031         178         1,827         19           1967         19         1,930         186         2,148         203         1,919         25           1968         25         1,979         206         2,158         213         1,974         15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1967         19         1,930         186         2,148         203         1,919         25           1968         25         1,979         206         2,158         213         1,974         15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1968         25         1,979         206         2,158         213         1,974         15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1969         15         1,830         208         2,401         239         2,136         19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1970         19         2,515         229         2,767         293         2,446         26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1971         26         2,585         238         2,862         306         2,501         27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1972         27         2,884         265         3,162         326         2,763         16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1973         16         3,143         255         3,483         345         3,022         55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4         62         3,325         243         3,246         310         3,151         40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5         40         3,925         236         4,238         430         3,681         24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6         24         4,299         228         4,581         452         3,796         45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7         43         4,397         230         4,701         534         4,072         65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8     67     4,598     273     4,956     527     4,321     74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79     74     4,685     262     4,927     580     4,357     53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80     53     4,720     273     5,062     665     4,325     69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81     69     5,185     254     5,522     864     4,574     5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82   58   5,309   282   5,679   872   4,461   168
1983     168     5,106     305     5,589     851     4,570     161
1984   161   5,169   258   5,634   795   4,619   162
1985     162     5,122     325     5,751     844     4,613     153
1986   153   5,390   368   5,916   836   4,924   133
1987   133   5,661   359   6,186   915   5,102   156
1988   156   5,763   431   6,357   995   5,208   134
1989   134   5,865   504   6,539   1,019   5,350   149
1990   117   6,005   630   6,764   982   5,662   92
1991 94 6,064 675 6,854 1,053 5,509 100
1992   100   6,065   827   6,998   1,104   5,702   101
1993   96   5,509   843   6,592   1,179   5,221   98
1994   98   5,907   932   5,738   1,364   5,447   128
1995   131   6,163   905   7,264   1,552   4,950   112
1996   112   6,377   940   7,497   1,602   5,874   21
1997   5   7,268   245   7,518   783   6,730   5
1998   4   7,477   266   7,747   883   6,859   5
1999   5   7,743   217   7,965   834   7,126   5
2000   5   7,827   229   8,061   800   7,258   3
2001   3   8,177   274   8,454   737   7,715   2
2002 0 7,938 580 8,518 875 7,643 0
2003 0 7,697 671 8,368 793 7,575 0
2004   0   7,832   584   8,416   820   7,596   0
2005   0   7,837   636   8,473   747   7,726   0
2006(P) 0 7,770 575 8,345 726 7,619 0

표 6 CIS 닭고기 통계

표 6 CIS 닭고기 동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	-	-	-	-	-	-
1964	-	-	-	-	-	-	-
1965	-	-	-	-	-	-	-
1966	-	-	-	-	-	-	-
1967	-	-	-	-	-	-	-
1968	-	-	-	-	-	-	-
1969	-	-	-	-	-	-	-
1970	-	-	-	-	-	-	-
1971	-	-	-	-	-	-	-
1972	-	-	-	-	-	-	-
1973	-	-	-	-	-	-	-
1974	0	166	0	166	0	166	0
1975	0	190	30	220	0	220	0
1976	0	290	39	329	0	329	0
1977	0	550	92	642	0	642	0
1978	0	750	32	782	0	782	0
1979	0	850	103	953	0	953	0
1980	0	950	110	1,060	0	1,060	0
1981	0	1,050	169	1,219	0	1,219	0
1982	0	1,225	175	1,400	0	1,400	0
1983	0	1,375	200	1,575	0	1,575	0
1984	0	1,475	112	1,587	0	1,587	0
1985	0	1,510	139	1,649	0	1,649	0
1986	0	1,620	173	1,793	0	1,793	0
1987	0	1,720	167	1,887	1	1,886	0
1988	_	_	-	, -	-	, -	-
1989	0	1,516	329	1,879	113	1,766	0
1990	0	1,524	318	1,852	100	1,752	0
1991	0	1,441	145	1,568	106	1,480	0
1992	0	1,148	92	1,201	62	1,127	0
1993	0	815	182	1,011	62	933	0
1994	0	697	512	1,179	58	1,117	0
1995	0	367	914	1,281	2	1,279	0
1996	0	310	1,183	1,493	13	1,480	0
1997	0	209	1,323	1,532	5	1,527	0
1998	0	299	1,070	1,369	3	1,366	0
1999	0	362	1,017	1,379	1	1,378	0
2000	0	400	968	1,368	3	1,365	0
2001	0	479	1,345	1,824	3	1,701	120
2002	120	602	1,269	1,991	4	1,857	130
2003	130	690	1,169	1,989	5	1,894	90
2004	90	858	1,293	2,241	1	2,160	80
2005	80	1,020	1,305	2,405	1	2,344	60
2006(P)	60	1,210	1,285	2,555	1	2,510	44
			-,200	_,555	-	_,510	···

표 7 아프리카 닭고기 통계

		丑 /	아프리키		농계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	-	-	-
1963	-	-	-	-	-	-	-
1964	0	14	0	14	0	14	0
1965	0	23	0	23	0	23	0
1966	0	32	0	32	0	32	0
1967	0	39	0	39	0	39	0
1968	0	54	0	54	0	54	0
1969	0	64	0	64	0	64	0
1970	0	74	0	74	0	74	0
1971	0	77	0	77	0	77	0
1972	0	96	0	96	1	95	0
1973	0	121	0	121	1	120	0
1974	0	154	0	154	1	153	0
1975	0	257	6	263	1	260	2
1976	2	256	5	263	2	259	2
1977	2	291	6	299	22	275	2
1978	2	294	5	301	21	276	4
1979	4	314	0	318	32	281	5
1980	5	326	53	384	29	347	8
1981	8	392	111	511	22	474	15
1982	15	479	41	535	19	506	10
1983	10	564	51	625	14	601	10
1984	10	618	101	729	16	703	10
1985	10	874	87	971	11	950	10
1986	43	881	66	990	4	925	61
1987	61	913	72	1,046	7	979	50
1988	50	936	29	1,025	11	1,004	10
1989	10	940	21	971	11	950	10
1990	10	959	5	974	1	962	11
1991	5	1,010	8	1,023	1	1,017	5
1992	5	1,053	34	1,092	3	1,084	5
1993	5	1,079	29	1,113	7	1,101	5
1994	0	872	16	888	3	885	0
1995	0	891	118	1,009	1	1,008	0
1996	0	1,017	35	1,052	1	1,051	0
1997	0	1,080	83	1,163	4	1,159	0
1998	41	1,337	73	1,451	14	1,398	39
1999	0	1,181	82	1,263	15	1,248	0
2000	0	1,167	74	1,241	8	1,233	ő
2001	0	1,180	68	1,248	8	1,240	ő
2002	0	1,220	85	1,305	10	1,295	0
2003	0	808	125	933	5	928	0
2004	0	808	154	962	3	959	0
2005	0	825	175	1,000	3	997	0
2006(P)	0	840	190	1,030	4	1,026	0
2000(1)		1 0-10	170	1,050		1,020	<u> </u>

표 8 오세아니아 닭고기 통계

		丑 8	오세아니				
<del></del> 연도	이월량 (천톤, 도체중)	생산량 (천톤, 도체중)	수입량 (천톤, 도체중)	공급량 (천톤, 도체중)	수출량 (천톤, 도체중)	소비량 (천톤, 도체중)	재고량 (천톤, 도체중)
1960	-	-	-	-	-	-	-
1961	-	-	-	-	-	-	-
1962	-	-	-	_	-	-	_
1963	-	_	_	-	-	-	-
1964	_	-	-	_	-	-	-
1965	0	45	0	45	0	45	0
1966	0	56	0	56	0	56	0
1967	0	76	0	76	1	75	0
1968	0	89	0	89	1	88	0
1969	0	94	0	94	1	93	0
1970	0	105	0	105	1	104	0
1971	0	131	0	131	2	129	0
1972	0	142	0	142	3	139	0
1973	0	138	ő	138	3	135	ő
1974	o o	171	ő	171	3	168	ő
1975	o o	166	ő	166	4	162	ő
1976	o o	184	ő	184	4	180	ő
1977	0	196	0	196	4	192	0
1978	o o	220	ő	220	5	215	ő
1979	o o	244	ő	244	6	238	ő
1980	0	282	0	282	6	276	0
1981	0	276	0	276	7	269	0
1982	0	259	0	259	4	255	ő
1983	0	283	0	283	2	281	0
1984	0	272	0	272	1	271	0
1985	0	315	0	315	1	314	0
1986	0	334	0	334	2	332	0
1987	0	349	0	349	3	346	0
1988	0	360	0	360	2	358	0
1989	0	365	0	365	1	364	0
1990	0	377	0	377	2	375	0
1991	0	383	0	383	2	381	0
1992	0	410	0	410	4	406	0
1993	0	420	0	420	7	413	0
1994	0	448	0	448	8	440	0
1995	0	450	0	450	6	444	0
1996	0	453	0	453	5	448	0
1997	0	480	0	480	4	476	0
1998	0	527	0	527	11	516	0
1999	0	550	0	550	11	539	0
2000	0	573	0	573	13	560	0
2001	0	568	0	568	19	549	0
2001	0	629	1	630	15	615	0
2002	0	646	0	646	15	603	28
2003	28	651	0	679	13	636	30
2004	30	705	0	735	13	690	31
2005 2006(P)	31	739	0	770	14	725	31
	<u> </u>	139	U	//0	14	143	31

자료: http://www.fas.usda.gov/psd에서

#### M45-67 세계농업뉴스 제67호 (2006. 3)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6년 3월

발 행 2006년 3월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p@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